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산림청

2020년도
산림휴양등산
사업계획

2020년도 산림휴양등산 사업계획

2020.1

www.forest.go.kr

2020.1

산림청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산림청

2020년도

산림휴양등산 사업 계획

2020 · 1

www.forest.go.kr



산림청

1	산림문화자산 발굴·지정	1
	<붙임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자료 활용	5
	<붙임 2> 국가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자료 현황	7
	[참고자료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현황	9
	[참고자료 2] 국가 산림문화자산 목록	11
	[참고자료 3] 국가 산림문화자산 분포도	15
	[참고자료 4] 국가 산림문화자산 유형	16
2	국민의 숲 운영 및 산림문화 확산	19
	<붙임 1> 2020년 주요 산림문화행사	24
	<붙임 2> 2020년 제13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25
	<붙임 3> 제19회 산의 날 행사	26
	<붙임 4> 산림문화전집 발간	27
	<붙임 5> 국민의 숲 지정·운영 지침	28
3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혁신	49
	<별표 1> 2020년도 산림휴양시설 사업량 및 예산현황	59
	<참고 1>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60
	<별표 2>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추진절차	67
	<참고 2> 산림욕장 조성·운영	68

목차 Contents

〈참고 3〉 숲속야영장 조성·운영	70
〈참고 4〉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사업 시행지침	73
〈참고 5〉 산림사업종합자금(산림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83
〈참고 6〉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85
〈참고 7〉 행정사항 및 보고서식	87

4 숲길 조성

〈붙임〉 2020년도 트레킹길 등 숲길 조성사업 내역	103
〈서식 1〉 숲길등산정책사업 월별 추진실적 보고	104
〈서식 2〉 숲길 조성사업 완료 보고	105

5 숲길 운영·관리

〈붙임〉 숲길 운영·관리 정기적 점검사항	119
〈서식 1〉 숲길 유지·보수 모니터링 야장	120
〈서식 2〉 숲길 유지·보수 현장 작업 보고서	121
〈서식 3〉 민원 접수·완료 보고서	122
〈서식 4〉 숲길 실태조사 관리대장	123
〈서식 5〉 OOOO년 산악구조 실적	124
[참고자료 1] 산행 안전수칙(예시)	125
[참고자료 2] 산림항공구조대 배치 및 구조현황	126



[참고자료 3] 국가지점번호	127
[참고자료 4] 2019년 숲길안내센터 운영 현황	129
[참고자료 5] 2019년 CCTV 설치·운영 현황	134
6 숲길등산지도사 운영	151
〈붙임〉 숲길등산지도사 배정인원 및 예산내역	156
〈서식 1〉 숲길등산지도사 선발내역	157
〈서식 2〉 숲길등산지도사 근무일지	158
7 등산로 정비	159
〈붙임〉 2020년도 국가등산로 정비사업 내역	168
〈서식 1〉 등산로 정비사업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169
〈서식 2〉 등산로 정비사업 완료 보고	170
[참고자료 1] 전국 등산로 및 훼손 등산로 정비현황	172
[참고자료 2] 권역별 등산로 관리체계	173
8 산림레포츠 활성화	175
9 국립산악박물관 및 등산학교 운영	181
▶ 부록	187



산림문화자산 발굴·지정

목 표

- ▶ 산림문화자산 발굴·지정으로 산림문화 보전 확산
- ▶ 산림문화자산의 보전·활용 확대를 위한 지침 마련

가. 정책여건

-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부터 지정하여 2019년 말 60개소 지정·운영 중에 있음
-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관심은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숲, 유산기, 노거수, 봉수대, 봉산표석, 산림전통지식 등의 연구자료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로 산림교육, 산림레포츠, 산촌관광, 산림치유 분야에 산림문화자산을 콘텐츠로 활용할 기회가 증대

나. 기본방향

- 기지정 산림문화자산 복원·보수·관리 일제조사를 통하여 복원·보수·관리 방안 마련
 - 복원·보수·관리 방안은 사업비 확보 근거자료로 활용
- 지정 산림문화자산은 지자체, 정부, 대학이 교육, 치유, 복지서비스에 활용
 - 산림관광자원 활용을 위하여 스토리를 구성한 자료를 작성·활용
 - * SNS를 통한 홍보 강화 및 지정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관리·지원방안 강화
- 산림문화자산의 품격 강화 및 발굴 지정 확대
 - 가치 있는 산림문화자산 발굴을 위해 퇴직 산림공무원 적극 활용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문화자산 복원·보수·관리 일제조사 및 활용성 증대

- 기 지정 산림문화자산의 관리실태 조사 및 복원·보수 등 관리사업 추진
 - * 「산림문화자산 복원·보수·관리 매뉴얼」에 의거 시범사업(2개소)
- 복원·보수·관리 사업비 확보로 산림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성 증대
 - * 주변 문화재·산림복지시설을 포함한 산림문화자산 관광안내책자 발간
- 주변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산림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 * 산림문화자산 발굴 및 산림관광 활용을 위한 담당자 회의(2월)
 - ** 국가산림문화자산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한 스토리 자원 조사표 활용

2) 산림문화자산 신규 발굴 및 체계적 유지관리 추진

-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가치있는 유형·무형 자산 지정 확대
 - * (14) 9 → ('15) 18 → ('16) 30 → ('17) 36 → ('18) 41 → ('19) 60개소
- 산림문화자산 신규 발굴시 자산가치를 잘 알고 있는 전직 산림공무원 적극 활용
- 지정요건 소멸시 산림문화자산 지정 해제 등 최상의 유지 관리체계 구축
 - * 유지관리 의무 강화 법률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
 -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기준 항목 활용

라.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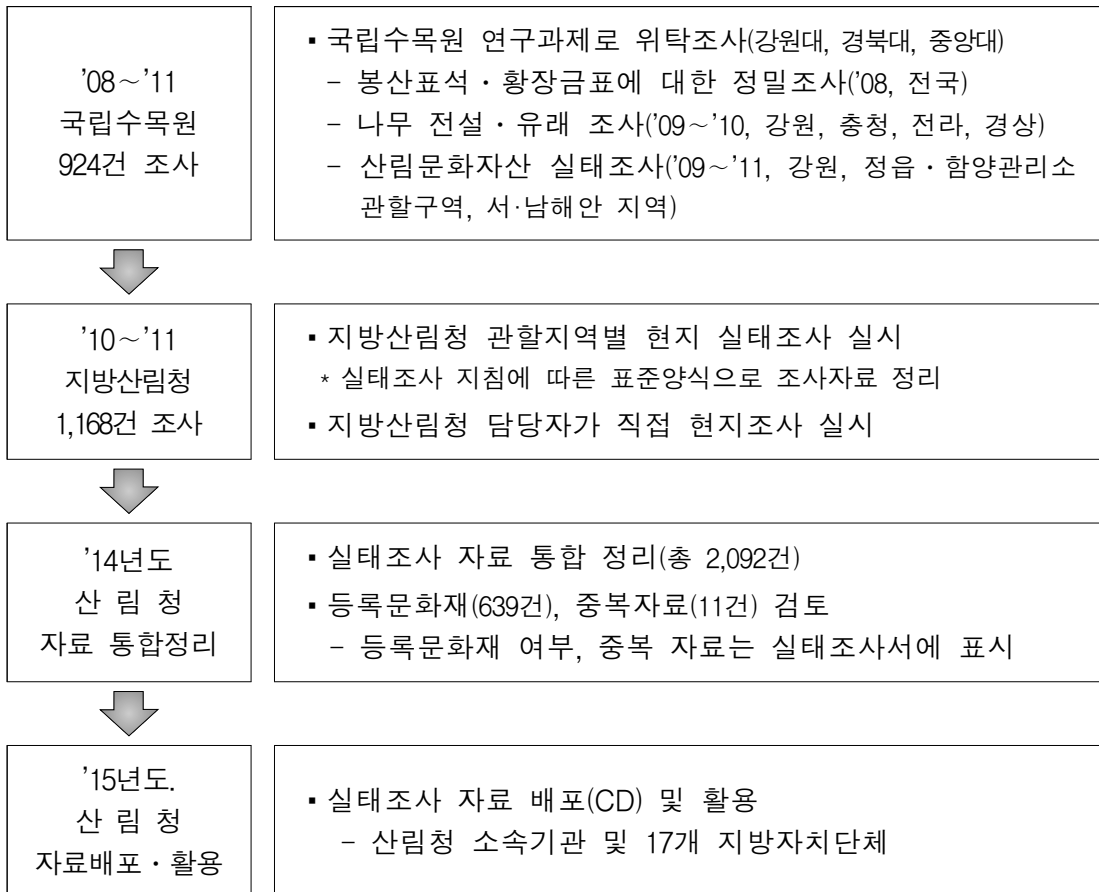
- 산림문화자산 담당자 회의 : 2020. 2월
- 국가산림문화자산 관리실태 조사 : 2020. 5월
- 국가산림문화자산 신청·접수 : 2020. 5월
-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 타당성 조사 : 2020. 7~8월
- 국가산림문화자산 심사위원회 개최 : 2020. 9월
- 국가 산림문화자산 관광안내책자 발간 : 2020. 11월
- 국가 산림문화자산 데이터베이스 관리 : 연중

국가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자료 활용

- ◆ '08~'11(4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산림문화자산 자료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 자료를 통합·정리
- ◆ 정리된 자료를 참고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함으로써 지역관광자원 등으로 활용

□ 실태조사 자료의 통합·정리 (총 2,092건)

-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의 조사 자료를 통합·정리
- 문화재 여부(산림문화자산 지정시 문화재는 제외), 중복 여부를 표기



□ **실태조사서의 활용** (산림문화자산 지정 등)



<붙임 2>

국가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 자료 현황

□ 산림문화자산 자료 현황(전통마을숲, 봉수대 별도)

○ 시도별 산림문화자산

(단위 : 건)

구분	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2,092	26	15	2	1	121	824	54	41	223	147	338	300
유형	1,897	26	15	2	1	113	745	48	30	211	136	300	270
무형	195					8	79	6	11	12	11	38	30

○ 유형별 산림문화자산 자료

- 유형 산림문화자산 자료

(단위 : 건)

계	숲	나무	자연물	사적 및 근대유산	기록물	목재제품
1,897	330	646	309	562	38	12

- 무형 산림문화자산 자료

(단위 : 건)

계	구전	민간신앙 및 민속	전통기술 및 지식	전통의식
195	124	42	8	21

○ 시도·유형별 산림문화자산 자료

(단위 : 건)

구분	계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2,092	26	15	2	1	121	824	54	41	223	147	338	300	
유형	소 계	1,897	26	15	2	1	113	745	48	30	211	136	300	270
	숲	330	8	2		1	22	87	13	6	47	41	48	55
	나무	646	8	5			14	286	17	13	51	53	130	69
	자연물	309	3	1			24	150	10	5	31	15	27	43
	사적 및 근대유산	562	7	6			51	191	7	6	82	25	88	99
	기록물	38		1	2		2	22	1			2	7	1
	목재제품	12						9						3
무형	소 계	195					8	79	6	11	12	11	38	30
	구전	124					8	47	5	5	6	2	36	15
	민간신앙 및 민속	42						14		6		9	1	12
	전통기술 및 지식	8						2			3			3
	전통의식	21						16	1		3		1	

□ 우리나라 전통마을숲 현황

○ 시도별 전통마을숲 현황

(단위 : 건)

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35	3	5	5	2	31	126	54	75	299	252	302	176	5

□ 우리나라 봉수대 현황(산림문화자산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2012)

○ 시도별 봉수대 현황

(단위 : 건)

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4	3	7	10	7	1	15	9	16	17	3	31	20	30	25

○ 봉수유형별 분포

(단위 : 건)

계	경봉수	권설봉수	내지봉수	연변봉수
194	1	22	51	120

○ 봉수 관리유형별 분포

(단위 : 건)

계	향토유적	문화재자료	시도지정기념물	비지정
194	6	2	58	128

○ 봉수 관리상태

(단위 : 건)

계	멸실	원형	미복원	복원(보수포함)
194	4	98	7	85

○ 봉수 설치시대별 분류

(단위 : 건)

계	삼국,신라	고려시대(추정포함)	조선시대	시대미상
194	8	63	112	11

[참고자료 1]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현황

○ 지역별 지정 현황

구 분	소분류	명 칭	수 량	
합 계	60건			
산림청	소계	23건		
	북부 (3)	금석각류 보호수 금석각류	화천 동촌 황장금표(2014) 방동약수 및 음나무(2014) 인제한계 황장금표 및 황장목림(2014)	1개소 1개소 1개소, 245ha
	동부 (4)	산림사업지 사적-기타 마을숲 근대유산기타	대관령 특수조림지(2014) 강릉 노추산 삼천 모정탑(2015) 평창 봉산 당숲(2017) 양양 상월천리 한독산림경영 실습림(2019)	311ha 3,000여개 142.4ha
	남부 (4)	금석각류 특이나무 동굴 군락지	울진소광 황장봉산동계표석(2015) 울릉 도동 향나무(2016) 울릉도 황토구미(2019) 봉화 우구치 철쭉(2019)	1개소 1본 1개소 1개소
	서부 (4)	샘 계곡·폭포 유적지 자생지	금강발원지 뜬봉샘(2015) 위봉폭포(2015) 천관산 동백나무 숲가마터(2016) 순천 고동산 산철쭉 자생지(2016)	1개소 1개소 7개소 6,600본
	과학원 (2)	도시숲 산림사업지	홍릉숲(2014) 서귀포 한남 삼나무숲(2017)	35ha 7ha
	휴양림 (6)	건축물 숲-기타 건축물 자연물-기타 자연물-기타 근대유산-기타	가평 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2018)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숲해설 코스(2018) 봉화 청옥산자연휴양림 무림당(2018) 인제 방태산자연휴양림 이단폭포(2019) 울주 신불산자연휴양림 파래소폭포(2019) 가평 유명산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2019)	2개소 1식 1동 1식 1식 1개소

구 분	소분류	명 칭	수 량	
지 자 체	소계	37건		
	강원 (5)	금석각류 금석각류 금석각류 금석각류 시설물	영월 법흥 황장금표(2014) 평창 평안 봉산동계표석(2014) 인제 미산 산삼가현산서표 1(2014) 인제 미산 산삼가현산서표 2(2014) 횡성 오원이 사방시설 유적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0개소
	전남 (11)	도시숲 유적지 동굴 사찰림 시설물 산림사업지 마을숲 계곡·폭포 마을숲 도시숲 마을숲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2015) 완도수목원 가시나무 솟가마터(2015) 해남 관두산 풍혈 및 샘(2015) 나주 불회사 비자나무와 차나무숲(2015) 유달산 저수·저사댐과 사방시설(2016) 고흥나로도 편백 숲(2016) 신안 반월 당숲(2016) 담양 용소(2017) 신안 대리당 당숲(2017)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2018) 함평 모평마을숲(2019)	408주 1식 5기 11곳 16,000본 33ha 1개소 9,000여본 2,377m ² 0.06ha 31,297m ² 182,433m ² 1개소
	전북 (12)	샘 정원 계곡·폭포 마을숲 계곡·폭포 마을숲 마을숲 바위 시설물 자연물 군락지 마을숲	섬진강발원지 데미샘(2015) 부안 서림공원과 임정유애비(2016) 남원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2016) 남원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2016)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2016) 남원 남계 닭뎬 비보림(2016) 하초 마을숲(2017) 대포 바위(2017) 남원 향교동 산림녹화탑(2019) 진안 운일암반일암 대불바위와 열두굴(2019) 장수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2019) 남원 행정마을 숲(2019)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ha 1개소 1개소 2식 1개소 1개소
	경남 (6)	마을숲 마을숲 특이나무 마을숲 근대유산-기타 근대유산-기타	밀양 안촌마을 당산숲(2016) 거창 갈계숲(2018) 하동 악양 십일천송(2019) 의령 신포숲(2019) 하동 화개 벚꽃길(2019) 하동 악양 취간림(2019)	5종 29본 1개소 1개소(11본) 316주 5km 1개소
	충남 (2)	숲-기타 숲-기타	안면도 소나무숲(2019) 서천 송림마을 솔바람숲(2019)	115ha 27.7ha
	대전 광역시 (1)	숲-기타	장태산자연휴양림 메타세쿼이아 숲(2019)	6,300주

국가 산림문화자산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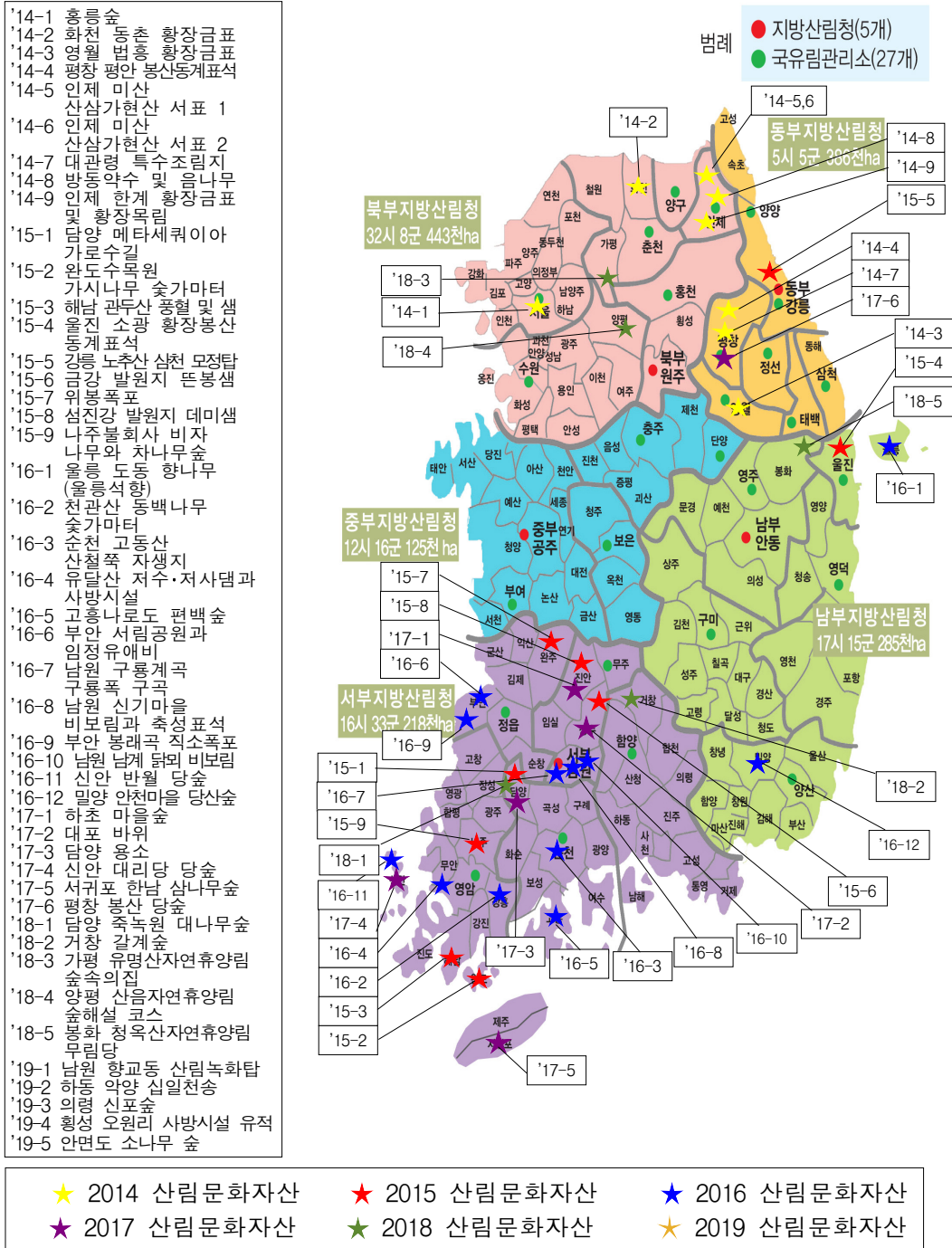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토지 소유자
2014-0001	홍릉숲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 외 7	35ha	국 (산림청)
2014-0002	화천 동촌 황장금표	강원 화천 화천읍 동촌리 산11	1	국 (산림청)
2014-0003	영월 범홍 황장금표	강원 영월 수주면 범홍리 590-3	1	영월군
2014-0004	평창 평안 봉산동계표석	강원 평창 미탄면 평안리 산102	1	평창군
2014-0004	인제 미산 산삼가현산 서표 1	강원 인제 상남면 미산리 100-1	1	국 (국토교통부)
2014-0006	인제 미산 산삼가현산 서표 2	강원 인제 상남면 미산리 351-1	1	국 (국토교통부)
2014-0007	대관령 특수조림지	강원 평창 대관령면 황계리 산1-1	311ha	국 (산림청)
2014-0008	방동약수 및 음나무	강원 인제 기린면 방동리 34-5	1	국 (산림청)
2014-0009	인제 한계 황장금표 및 황장목립	강원 인제 북면 한계리 373, 산1-1	1,245ha	개인 국(산림청)
2015-0001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남 담양 담양읍 학동리 577-9	408주	국 (국토교통부)
2015-0002	완도수목원 가시나무 숲가마터	전남 완도 군외면 대문리 산109-1	1식 (5기)	전라남도
2015-0003	해남 관두산 풍혈 및 샘	전남 해남 화산면 관동리 산70-2	11곳	개인 (문중)
2015-0004	울진 소광 황장봉산 동계표석	경북 울진 서면 소광리 산1	1	국 (산림청)
2015-0005	강릉 노추산 삼천 모정탑	강원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산3	3000여기	국 (산림청)
2015-0006	금강 발원지 뜬봉샘	전북 장수군 장수읍 수분리 산109일원	1개소	국 (산림청)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토지 소유자
2015-0007	위봉폭포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4, 35-1	높이60m 2단폭포	국 (산림청)
2015-0008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전북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산1	1개소	공(전라북도)
2015-0009	나주불회사 비자나무와 차나무숲	전남 나주 다도면 마산리 산212-13	비자나무 16,000본 차나무33ha	대한불교 조계종 불회사
2016-0001	울릉 도동 향나무(울릉석향)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4	1본	국 (산림청)
2016-0002	천관산 동백나무 숯가마터	전남 장흥군 관산읍 부평리 산 109-1외 1필	7개소	국 (산림청)
2016-0003	순천 고동산 산철쭉 자생지	전남 순천시 송광면 장안리 산270 외 1필	6,600본	국 (산림청)
2016-0004	유달산 저수·저사댐과 사방시설	전남 목포시 온금동 6-2	1개소	공 (목포시)
2016-0005	고흥나로도 편백 숲	전남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87-141	9,000여본	공 (전라남도)
2016-0006	부안 서림공원과 임정유애비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산1-1	1개소	공 (부안군)
2016-0007	남원 구룡계곡 구룡폭 구곡	전북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470-19 외 4필	1개소	국 (국토교통부)
2016-0008	남원 신기마을 비보림과 축성표석	전북 남원시 운봉읍 신기리 408-7번지 외 2필	1개소	개인 (남원시 신기리)
2016-0009	부안 봉래곡 직소폭포	전북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산95-10 외 2필	1개소	국 (교육부, 국토교통부)
2016-0010	남원 남계 닭피 비보림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1136-1 외 1필	1개소	국 (농림축산식품부)
2016-0011	신안 반월 당숲	전남 신안군 안좌면 반월리 237임	2,377㎡	공 (신안군)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토지 소유자
2016-0012	밀양 안촌마을 당산숲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266-1	소나무외 5종 29본	개인 (밀양시 안촌마을회)
2017-0001	진안 하초 마을숲	전북 진안군 정천면 월평리 396외 4필(임야)	1ha	개인 (하초새마을회)
2017-0002	장수 할미봉 대포바위	전북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54-1	1개소	공 (전라북도)
2017-0003	담양 용소	전남 담양군 용면 용연리 산10-32	0.31ha	개인 (용추사)
2017-0004	신안 대리 당숲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 산26임(임야)	31,297㎡	공 (신안군수)
2017-0005	서귀포 한남 삼나무숲	제주 서귀포 남원읍 한남리 산2-1번지	7ha	국 (산림청)
2017-0006	평창 봉산 당숲	강원 평창군 진부면 봉산리 산1(159임반 1소반)	0.5ha	국 (산림청)
2018-0001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번지의외 121	182,433㎡	공 (담양군청)
2018-0002	거창 갈계숲	경남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 361-1번지의외 1	1개소	개인 (은진임씨대종회)
2018-0003	가평 유명산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경기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58-1	2개소	국 (산림청)
2018-0004	양평 산음자연휴양림 숲해설 코스	경기 양평군 단월면 산음리 산84	1식	국 (산림청)
2018-0005	봉화 청옥산자연휴양림 무림당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산13-64	1동	국 (산림청)
2019-0001	남원 향교동 산림녹화탑	전북 남원시 향교동 457-24	1개소	개인 (남원산림조합)
2019-0002	하동 악양 십일천송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276	1개소(11본)	공 (하동군청)
2019-0003	의령 신포숲	경남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340-1외 1, 340-8	소나무 등 316주	공 (의령군)
2019-0004	횡성 오원리 사방시설 유적	강원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351-1외 2필지	10개소	국(국토교통부, 산림청), 공(횡성군청)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수량 (면적)	토지 소유자
2019-0005	안면도 소나무숲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1-1외 3필지	115ha	공 (충청남도)
2019-0006	울릉도 황토구미	경북 울릉군 서면 태하리 산99-1	1개소	국 (산림청)
2019-0007	봉화 우구치 철쭉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산1-1	1개소	국 (산림청)
2019-0008	양양 상월천리 한독산림경영 실습림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산1-1	142.4ha	국 (산림청)
2019-0009	인제 방태산자연휴양림 이단폭포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282-1	1식	국 (산림청)
2019-0010	울주 신불산자연휴양림 파래소폭포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2	1식	국 (산림청)
2019-0011	가평 유명산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산35	1개소	국 (산림청)
2019-0012	진안 운일암반일암 대불바위와 열두굴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산195-1, 산196-4	2식	국 (산림청)
2019-0013	장수 봉화산 산철쭉 군락지	전북 장수군 변암면 노단리 산37-6	1개소	공 (장수군)
2019-0014	남원 행정마을숲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285	1개소	공 (남원시)
2019-0015	장태산자연휴양림 메타세쿼이아 숲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 461	6,300주	공 (대전광역시)
2019-0016	함평 모평마을숲	전남 함평군 해보면 상곡리 635	1개소 느티 나무 등 42여 그루	개인 (파평윤씨한림공파 중중)
2019-0017	하동 화개 벚꽃길	경남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667-6도외 165필지	5km	공 (하동군)
2019-0018	하동 악양 취간림	경남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651-1	1개소	하동군, 악양경로회, 기재부
2019-0019	서천 송림마을 솔바람숲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산65외6, 523-67외1	27.7ha	산림청, 서천군

국가 산림문화자산 분포도



* 대한민국 관보(제19658호) 산림청고시 제2019-397(2019.12.30.)호 '19년 지정대상지(14개소) 분포도 미반영

국가 산림문화자산 유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기준
유형 산림 문화 자산	숲	마을숲	방풍림, 어부림, 호안림, 성황림 등 전통마을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도시숲	가로수나 도심 내 숲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재생산숲	봉표, 금표가 있었거나 있는 목재생산숲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찰림	사찰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서원림	서원을 둘러싸고 있고 보존가치가 높은 숲
		종중림	종중림 중 보존가치가 높은 숲
		서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서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군락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군락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자생지	희귀, 특산식물 등의 자생지로 보존가치가 높은 숲
		문화림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숲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산림사업지	조림성공지, 사방사업지, 시험림 등 역사적 의미가 큰 산림사업지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숲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나무	보호수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특이나무	노목, 거목, 희귀목, 기형목, 당산목 등 특이성이 큰 나무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념식수목	국가수반급 기념식수목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특정목적수	나무기준 표본목, 송진이나 옷 채취목 등 특정 목적을 위한 나무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문화나무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거나 문화·예술작품에 등장하는 나무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나무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기준
유형 산림 문화 자산	자연물	옛길	민간에 전승되는 유래·전설이 있는 산 속 고개나 길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바위	특이한 형상을 가졌거나 유래가 있는 바위, 명문이 새겨진 바위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샘	산림 혹은 임업과 관련이 높은 샘, 주요 강의 발원지(소), 지역적으로 특수성분을 포함한 유명 약수터, 우물 등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계곡·폭포	계곡·폭포 중에서 산림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동굴	동굴 중에서 산림관련 유래가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화석지	동식물 화석지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물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적 및 근대 유산	제단	산제단, 사직단, 여단, 천제단, 성황당 등 제단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정원	정원(원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건축물	민가, 고택, 향교, 서원, 누각, 정자, 근대 건축물 등 중에서 목재를 소재로 하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것
		시설물	조림공로비, 기념비, 사방시설물, 표석, 임도 등 시설물 중에서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유적지	산성, 사찰터, 봉수터, 화전마을, 숯가마터, 화랑도량터, 돌탑 등 유적지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및 근대유산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록물	금석각류	봉표, 금표 등 금석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판각류	목판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적류	전적류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사진 및 영상물	사진자료, 영상물, 음향물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록물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목재 제품	생활용품	농기구, 산림작업도구, 어령구, 방직용구, 음식용구, 공장용구, 공예품, 가구 등 목재로 만든 생활용품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선박	연대가 오래된 목조 선박이나 관련 부속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악기류	고유악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정기준
유형 산림 문화 자산	목재 제품	무기류	죽시, 궁시 등 무기로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장승	장승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품이나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화석	동물	동물 화석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식물	식물 화석으로 생태적, 역사적, 학술적 보존가치가 높은 것
	조합형	조합형	2개 이상의 소분류의 산림문화자산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생태적·경관적·예술적·역사적·정서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무형 산림 문화 자산	구전	전설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한 전설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민요·소리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한 민요·소리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전이나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민간 신앙 및 민속	마을신앙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당제, 산신제 등 마을신앙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가옥신앙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가옥관련 신앙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민속	산림이나 임업과 관련된 고유 민속이나 놀이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신앙 및 민속이나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 기술 및 지식	전통기술	산림사업, 임산물, 목재 가공 관련 전통기술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지식	수목 등을 활용한 전통 의학지식 등 산림관련 지식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통기술 및 지식이나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 의식	의식·의례	산판굿, 입산제, 벌목의식 등 산림 및 임업과 관련된 전통의식·의례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전통축제	지역 고유의 전통 축제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것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통기술 및 지식이나 예술적·역사적·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



국민의 숲 운영 및 산림문화 확산

목 표

- ▶ 국민의 숲 등에서 산림문화서비스 체험기회 확대
- ▶ 산림 가치와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는 교육·홍보강화

가. 정책여건

- 국민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제한적
-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생태적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산림문화 활동의 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증가 추세
- 산림복지서비스의 확대에 따라 산림문화 콘텐츠 발굴·활용 필요성 증가

나. 기본 방향

- 산림복지서비스(치유, 교육, 휴양, 레포츠 등)에 산림문화콘텐츠 발굴·제공
- 국민의 숲 운영 활성화로 국민의 산림경영 참여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
- 다양한 산림문화 행사로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산림문화박람회, 산의 날 기념식 등 산림문화행사 국민인식, 참여 기회 확대

다. 세부 추진계획

1) 「국민의 숲」 운영

- 「국민의 숲」 지정 확대 및 기존 운영 개소 일제 정비
 - 녹색체험, 산림관광 등 지역경제와 연계한 숲 지정 확대
 - 운영실적, 협약단체 참여 의지 등을 평가하여 지정 폐지 추진
 - *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폐지조항 추가)로 폐지절차 간소화

- 국민의 숲 조성 지침서 및 입간판 규격(안) 마련
 - 전문가, 현장 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방안 마련
- 국민의 숲 자체 평가대회 및 운영·관리 실태 조사
 -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관별 예산 차등 지원으로 활성화 도모
 - 운영·관리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현장의견 수렴

2) 다양한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문화행사 개최

-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림정책 홍보를 위한 산림박람회 개최
 - * 장소 : 강원도 고성(2020년 10월)
 - '21년 산림문화박람회 기본방향을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
- 산의 날 기념식(10월)
 - 산림의 가치·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의 날 기념식 개최
 - * 중앙수목원 개원식(세종시) 연계 또는 대도시 컨벤션 센터 개최 검토
 - 고품격 축하 퍼포먼스, 산림정책 홍보 공간 및 산림문화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녹색문학상, 협회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저변 확대
 - 산림문화박람회, 산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3) 산림문화 전집 발간

- 산림이 우리 민족의 삶과 인연을 맺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산을 총 25권으로 집대성한 총서(叢書) 발간
- 2020년은 7년차 사업으로 제13~14권 발간(80백만원)
 - 주제 : 아름다운 우리 숲, 정치사회와 산림문화

4) 숲사랑체험관 운영 활성화

- 숲사랑 체험관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확대
 - 지역 유치원 및 학교 등에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유아·청소년 대상 숲 교육·체험, 직원 틈새 숲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숲사랑체험관 전시·홍보 장비 교체(22백만원)
 - 노후 영상 홍보·전시물 교체 및 관람객 편의시설 보완
 - 관람객 동선 조정 및 조형물 배치 재편성

라. 추진일정

- 산림문화박람회 개선안 마련 : 2020. 2월
- 국민의 숲 자체 평가회 개최 : 2020. 2월
- 산림문화 달력 제작 개선안 마련 : 2020. 3월
- 국민의 숲 운영·관리 실태 조사 : 2020. 6월~8월
-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 2020. 6월~10월
- 제13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및 제19회 산의 날 기념식 : 2020. 10월
- 녹색문학상 시상, 산림문화작품전시, 산림문화달력 제작 : 2020. 10~11월
- 산림문화전집 발간 심포지엄 : 2020. 12월

2020년 주요 산림문화행사

시기	행사명	주요내용	장소	소요 예산 (천원)	비고
6월 ~ 10월	제20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산림문화 작품 활동 촉진 대상 : 일반인 및 학생 주관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100,000	민간 보조
	제9회 녹색문학상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숲과 관련된 문학작품 선정 및 시상 대상 : 문학인 등 주관 : (사)한국산림문학회 	한국산림 문학회	60,000	민간 보조
10월	제16회 한국꽃누르미협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꽃누르미 작품전시 대상 : 숲해설가, 일반인 주관 : (사)한국꽃누르미협회 	미정	7,500	
10월	제19회 산의 날 기념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대상 : 임업인 등 주관 : 산림청 	미정	20,000	
	2020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임산업 분야 전시, 박람회 대상 : 임업인 등 주관 : 산림조합중앙회 	강원 고성	377,000	민간 보조
	지역 산림문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지역의 산림문화 축제 대상 : 일반시민 주관 : 지방자치단체(시도) 			
11월	산림문화작품 사진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산림문화 작품 활동 촉진 대상 : 일반인 및 학생 주관 : 산림조합중앙회 	정부대전청사 중앙홀	-	
	2021년 산림문화 달력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산림문화 작품을 활용한 산림문화달력 제작 배포 배부 : 산림공무원, 지자체, 단체 등 	-	55,000	
12월	산림문학전집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 : 산림문학전집 발간 대상 : 일반인 주관 : 숲과문화연구원 	-	80,000	민간 보조

2020년 제13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 목 적

- 산림박람회 개최를 통한 침체된 임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 정책의 성과와 사례 및 미래지향적 정책 비전을 국민에게 홍보

□ 사업내용

- 산림산업 홍보, 신기술정보 공유, 임업 기계장비 · 임산물전시, 산림전문가 컨퍼런스, 산림작품 전시, 산림문화 공연, 목공예 체험, 전문 임업경영컨설팅 등이 어우러진 산림분야의 종합전시 박람회
 - 사업 방식 : 민간경상보조 100%
 - * '08년부터 ~ '14년까지 산림청 · 지자체 공동 개최(국고 50%)

□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10월중 / 강원도 고성군
- 주관 : 산림조합중앙회(국비 377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역점사항 : 국가적 산림박람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박람회의 전문성과 민간 역량 향상에 중점

□ 연도별 산림박람회 개최 현황

연도(개최지)	주요성과
2008(경남 진주)	○ 참여업체수 : 129업체, 임산물 판매액 : 3억, 관람객 수 : 87천명
2009(경기 안산)	○ 참여업체수 : 186업체, 임산물 판매액 : 25억, 관람객 수 : 270천명
2010(강원 동해)	○ 참여업체수 : 146업체, 임산물 판매액 : 15억, 관람객 수 : 361천명
2011(경남 창원)	○ 참여업체수 : 155업체, 임산물 판매액 : 6억, 관람객 수 : 236천명
2012(전남 나주)	○ 참여업체수 : 165업체, 임산물 판매액 : 68억, 관람객 수 : 110천명
2013(대전광역시)	○ 참여업체수 : 171업체, 임산물 판매액 : 60억, 고용상담 : 409건, 관람객 수 : 245천명
2014(강원 화천)	○ 참여업체수 : 174업체, 임산물 판매액 : 18억, 관람객 수 : 157천명
2015(경남 산청)	○ 참여업체수 : 235업체, 임산물 판매액 : 6억, 관람객 수 : 520천명
2016(충남 예산)	○ 참여업체수 : 262업체, 임산물 판매액 : 12억, 관람객 수 : 624천명
2017(경북 영주)	○ 참여업체수 : 281업체, 임산물 판매액 : 16억, 관람객 수 : 480천명
2018(강원 인제)	○ 참여업체수 : 315업체, 임산물 판매액 : 19억, 관람객 수 : 302천명
2019(전남 장흥)	○ 참여업체수 : 350업체, 임산물 판매액 : 13억, 관람객 수 : 343천명

제19회 산의 날 행사

□ 지정배경

- '02년 『세계 산의 해』를 계기로 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18일을 「산(山)의 날」로 지정

□ 추진현황

- 『제13회 산의 날』 행사부터 산림청 자체행사로 추진
 - * 7회~12회 행사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최
 - ** 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생태공예 체험, 산림복지체계 학술대회, 전국 등산인 대회 등 산림문화축제 개최(7회~11회)

□ 산의 날 기념식 행사

- 일시 및 장소 : 2019. 10. 18 / 미정
- 주요 내용 : 기념식, 유공자 포상
 - 포상규모(30점) : 훈장 1, 포장 1, 대통령 4, 국무총리 4, 장관 7, 청장 13

□ 연도별 산의 날 개최 현황

구 분	예산 (백만원)	자치단체	장 소	선정 방법	비 고
7회(2008년)	70	강 원 도	춘 천 시	사전 협의	
8회(2009년)	150	경상북도	안 동 시	공 모	취소
9회(2010년)	150	대 전 시	한밭수목원	사전 협의	
10회(2011년)	150	서 울 시	서 울 숲	사전 협의	
11회(2012년)	150	경기도	킨텍스	사전 협의	
12회(2013년)	100	충청북도	청남대	사전 협의	
13회(2014년)	50	-	국립산림과학원	직접 추진	기념식
14회(2015년)	35	-	동의보감촌	직접 추진	산림박람회
15회(2016년)	30	-	국립산림치유원	직접 추진	치유원 개원식, 총리 참석
16회(2017년)	100	-	국립수목원	직접 추진	기념식, 장관 참석
17회(2018년)	100	-	국립수목원 DMZ자생식물원	직접 추진	기념식
18회(2019년)	100	-	국립대전숲체원	직접 추진	국립대전숲체원 개원식

산림문화전집 발간

□ 목 적

- 산림이 우리 민족의 삶(문화)에 끼친 영향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산림문화를 후손에게 온전히 전수하며 산림문화 정책·산림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사업내용

- (내용) 유형·무형 산림문화자산을 총 25권으로 집대성한 총서(叢書) 발간
- (추진) 숲과문화연구회 / 민간경상보조 80백만원

권별 제목	주요 내용
① 우리 숲의 역사	우리 숲이 변화되어 온 과정 추적(고식물연구 등)
② 국가의 건립과 산림문화	건국신화, 고대~근대에 걸친 국가건설과 숲의 관계
③ 한국의 종교와 산림문화	민족신앙과 나무/ 숲의 관계, 나무송배사상 등
④ 우리 문학과 산림문화	한국 문학과 산림의 관계, 한국의 산림문학 소개
⑤ 한국의 미술과 산림문화	고미술, 산수화와 산림의 관계
⑥ 마을숲과 산림문화	마을숲 현황(목록), 역사, 의미, 기능과 가치, 활용
⑦ 산업과 산림문화	농업/임업용 도구, 산림작업(벌목용)에 쓰인 도구
⑧ 원림과 산림문화	전통원림의 양식과 식물 경관 등의 구성 및 현황
⑨ 음악과 산림문화	민족음악의 형성과 전개에 미친 숲의 역할, 나무와 음악 등
⑩ 세시·풍속과 산림문화	절기와 세시·풍속에 등장하는 식물, 산림축제, 숲관련 민속
⑪ 의·식·주 생활과 산림문화	의류, 식품, 주거생활공간과 산림의 관계
⑫ 생활가구와 산림문화	생활가구에 쓰인 나무, 여러 가지 목제가구
⑬ 천연기념물/보호수/노거수	천연기념물/보호수/노거수 목록 및 역사문화
⑭ 아름다운 우리 숲	일정규모와 수형을 가진 아름다운 숲 발굴
⑮ 정치 사회와 산림문화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산림 등
⑯ 관혼상제와 산림문화	관혼상제에 쓰이는 여러 가지 식물, 종실 등
⑰ 건축과 산림문화	한국건축과 산림, 산림지형과 주거문화와의 관계
⑱ 한국의 산림휴양문화	선조들의 산림휴양문화(풍습, 그림 등)
⑲ 한국의 자연색	식물에서 얻는 천연염료 총람(식물과 색)
⑳ 한국의 종이문화	기록문화와 종이의 관계, 종이의 쓰임새(다종이 등)
㉑ 산림 문헌 및 기록물	산림관련 고문헌(원예서, 농서 포함)
㉒ 임업 및 산림교육 변천사	고대국가, 고려/조선시대, 근대 및 현대의 산림교육
㉓ 산림문화 장인(匠人大系)	산림관련 장인의 구분과 역할
㉔ 세계의 산림문화	세계 각국의 산림문화 소개
㉕ 색인	1~24권에 등장하는 주요 핵심어 색인

국민의 숲 지정·운영 지침

I. 작성 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국민의 숲 지정·운영)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 국민의 숲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

II. 세부 추진지침

1. 지정 등 관련 사항

가. 지정·운영과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권자 : 지방산림청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위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권한의 위임)에 의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2차 소속기관에 재위임 할 수 있음
- 각 지방산림청장은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지정 대상 산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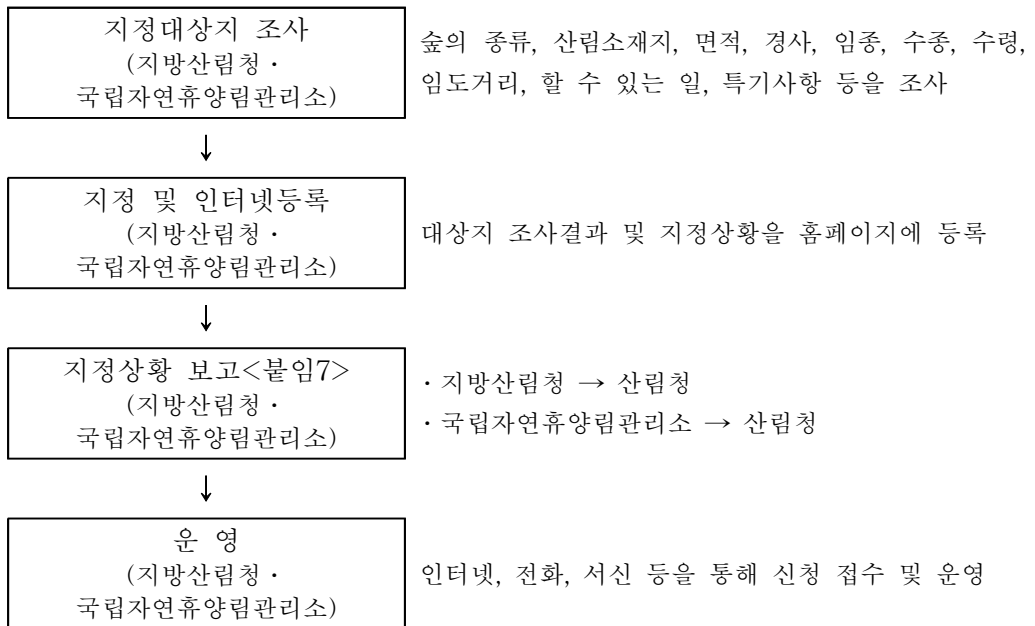
- 체험의 숲·단체의 숲은 나무 심기, 가지치기 등 산림사업이 가능하고 산림교육·산림휴양·산림문화 활동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산림
- 산림레포츠의 숲은 산악자전거, 산악승마,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오리엔티어링, 산악마라톤, 서바이벌 게임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한 기반시설 등의 조건을 갖춘 산림
- 사회환원의 숲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등을 조성하는데 적합한 산림
- 공통
 -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 경사가 완만하고 산림생태가 양호한 산림
- 접근성이 좋은 도시림 또는 녹색·농촌체험 등과 연계가 가능한 농산촌의 산림으로 유형별 운영에 적합한 산림

다. 지정시 고려사항

- o 쉽게 접근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산림인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
- o 체험의 숲·단체의 숲은 1개시 또는 1개 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고르게 분산하여 배치
- o 산림레포츠의 숲은 임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상태와 활동 가능한 산림레포츠의 종류를 감안하여 지정
- o 지정구역은 가급적 자연경계로 구획하되 국유림 경영을 고려하여 1개소가 너무 크지 않도록 이용활동에 꼭 필요한 면적만 지정

라. 지정절차



- o 권한의 일부를 2차 기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2차 기관이 실행한다.
- o 사회공헌의 숲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대상지를 조사하고 지정한 후에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붙임5>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2. 유형별 운영

가. 체험의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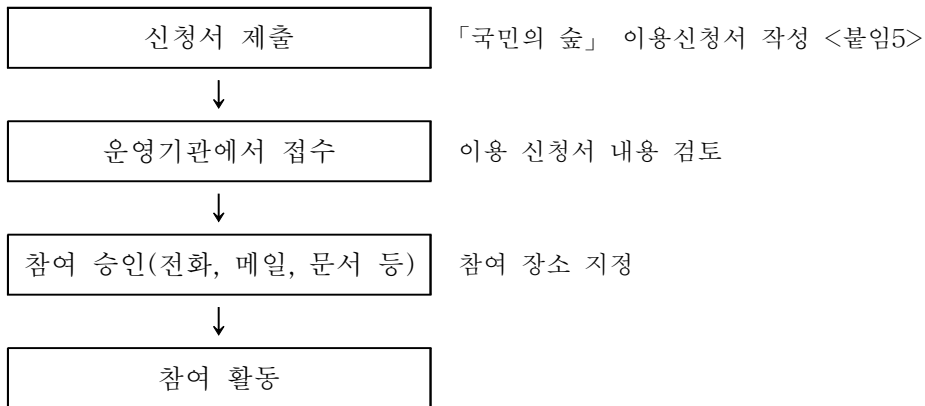
□ 참여대상 및 자격요건

- 산림과 숲, 나무 등에 관심이 있는 개인 또는 가족 등 모든 국민
- 숲해설 및 숲체험 학습 프로그램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에서 지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

□ 체험 유형

- 숲가꾸기형 : 나무심기,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간벌 등 산림작업
 - 산림보호형 : 산지정화,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
 - 학습지도형 : 숲해설, 산림체험지도 등 자연학습 프로그램 지도
 - 산림문화형 : 숲 체험, 숲 견학 등 산림문화 활동
- ※ 여러 유형을 복합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

□ 신청 절차



□ 추진 방법

- 인터넷·서신·방문 등을 통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붙임5>의 「국민의 숲」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신청·접수
 - 인터넷 접수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휴양·문화 - 산림휴양 - 국민의숲-대상지보기/신청)
 - 운영기관에서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협약체결 없이 이용신청 사항을 전화, 메일, 문서 등을 통해 승인

- 숲을 누리고 느끼는 체험 위주로 운영
 - 식목기간 및 육림기간에는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산림작업 체험 위주로 운영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학습 및 산림문화형으로 운영
 -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체험행사를 실시
 - 산림작업체험은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문화행사는 이용자 자체적으로 진행요원을 활용하도록 지도
- 운영기관별로 연2회 이상 ‘체험의 날’ 운영 정례화
 - 산불예방 캠페인, 식목행사, 산의 날 및 육림행사 등과 연계
 - 행사의 의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숲해설, 게임, 산림레포츠 등 이벤트 행사를 병행 실시
 -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내용 등 계획을 미리 안내
- 국민들이 참여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산림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산림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산림교육
 - 솔잎채취, 산나물채취, 잣 까먹기, 머루·다래 따기 등 체험행사
 - 참여자들에게는 숲해설가 등을 활용한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숲가꾸기형은 사업실적보다는 체험위주로 실시
 - 솎아베기 보다는 작업이 쉬운 가지치기 등으로 운영
 - 숲가꾸기는 비전문가들이므로 가능한 약도(弱度)로 할 수 있는 사업량으로 계획하고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에 각별히 유념
 -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
 - 숲가꾸기의 필요성, 효과 등을 함께 설명하여 산림에 대한 이해 증진

□ 지원 및 기타사항

- 체험의 숲 안내판<붙임2>, 수목표찰·숲해설판·숲체험코스 등 산림교육 시설, 산책로 등 편의시설,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 숲가꾸기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장비대여 등 편의 제공
 - 숲가꾸기에 필요한 사전 지식, 작업방법 등 기술지도 실시

- 작업에 필요한 장비중에서 위험성이 적은 장비 위주로 대여
-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시 사용한 장비 활용
- o 산림사업시 안전사고를 대비한 배상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
- o 우수 참가자에 대하여는 숲사랑지도원 위촉 등 인센티브 부여
- o 체험의 숲 대상지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내에 있는 국유림에서 실시되는 나무심기, 숲가꾸기 또는 캠페인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기회 확대
- o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체험의 숲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 무상양여
 - 산나물 채취, 머루·다래 따기, 도토리 줍기 등 이벤트 행사시 참가자(대표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유임산물 양여 절차에 따라 처리

나. 단체의 숲

□ 이용 대상

- o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 정규 및 비정규 과정의 각종 교육기관
- o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언론기관, 공·사기업체 등 각종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및 단체
- o 산림과 숲, 나무 등에 관심이 있는 각종 임의단체 및 동호회

□ 자격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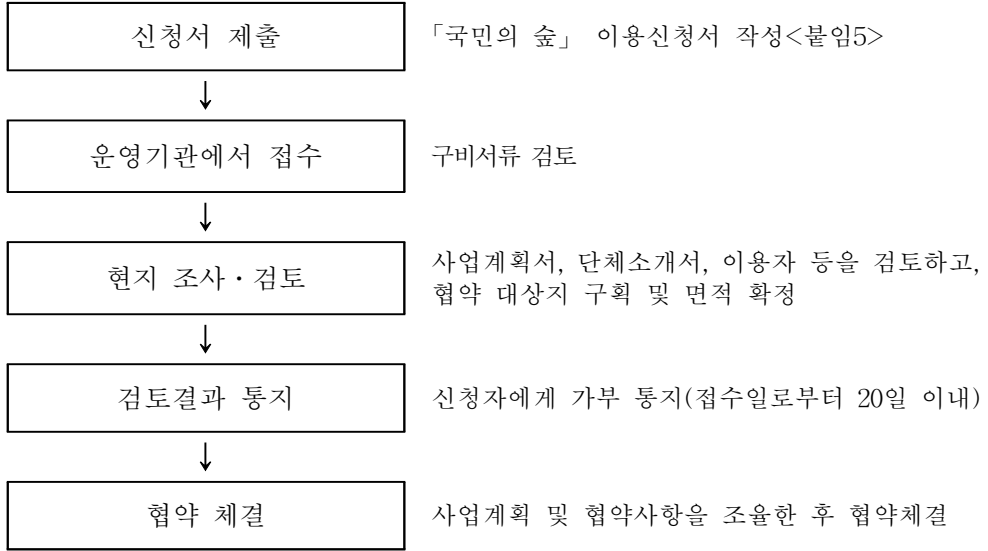
- o 정기적 참여 및 필요 소요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
- o 임의단체는 산림과 숲, 나무에 관심이 있는 단체로서 상시구성원 수가 20인 이상인 단체
- o 동호회는 산림과 숲, 나무에 관심이 있는 동호회로서 상시구성원 수가 20인 이상인 동호회

□ 활동 내용

- o 나무 심기 : 식목일 기념 식수 등 식목 행사
- o 숲가꾸기 : 어린나무가꾸기, 가지치기, 간벌(무육간벌), 비료주기 등
- o 산림 보호 : 산지정화 및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
- o 산림 교육·휴양·문화행사 : 숲체험, 산림욕, 휴양 등 산림문화 행사

- 교육·홍보 : 비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림 교육·홍보 활동
- 기타 협약에서 정한 사업내용

□ 신청 절차



□ 추진 방법

- 인터넷·서신·방문 등을 통해 이용을 원하는 단체가 <붙임5>의 「국민의 숲」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접수
 - 인터넷 접수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휴양·문화 - 산림휴양 - 국민의숲 - 대상지보기/신청)
 - 서신·방문 등 접수 : 운영기관
- 사업계획서 및 단체 현황 등의 내용이 단체가 원하는 활동의 추진에 적정한가 여부 검토
 - 자격요건 부합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영리목적 여부 등
 - ※ 적정한 단체가 아닐 경우 국유림 관리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요건 부합여부 등 철저 검토
 - 교육용, 학술용, 자원봉사 형태의 사업계획은 적극적으로 수용
 - 무육간벌, 천연림보육 작업이 필요한 대상지는 전문기술이 있는 임업관련 단체를 우선 선정

○ 협약서 체결

- 협약은 <붙임1>의 「국민의 숲」 표준 협약서에 의하여 체결하되 현지실정에 맞게 조항을 가감하여 사용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계획은 상호 협의하여 수립하되 국유림 경영 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
- 여러 단체가 동일 장소에 신청한 경우 대상지를 소면적으로 세분하여 단체별로 제공
- 사업물량은 형식에서 벗어나 체험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로 계획
 - ※ 신청면적이 큰 경우 신청한 단체가 무리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소면적으로 구획하여 체결
- 협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협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매 5년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 ※ 1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 해지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자동 연장(1년)되도록 운영

○ 사업계획에 의한 추진사항 확인

-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였는지 여부
- 숲가꾸기는 기술이 있는 퇴직산림공무원, 숲해설가, 생태전문가 등의 기술 지도를 받아 실행토록 지도
- 적정한 숲가꾸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목생육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운영기관 등에서 보완사업 실행

○ 수시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산림사업의 내실화 도모

- 활동이 미진할 경우 시정 권고 등 활성화 유도
- 협약에서 정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협약 해지 등 조치

□ 지원 및 기타사항

- ‘○○단체의 숲’, ‘○○학교의 숲’, ‘○○기업의 숲’ 등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붙임3>
- 수목표찰·숲해설판·숲체험코스 등 산림교육시설, 산책로·쉼터 등 편의 시설, 난간·로프 등 안전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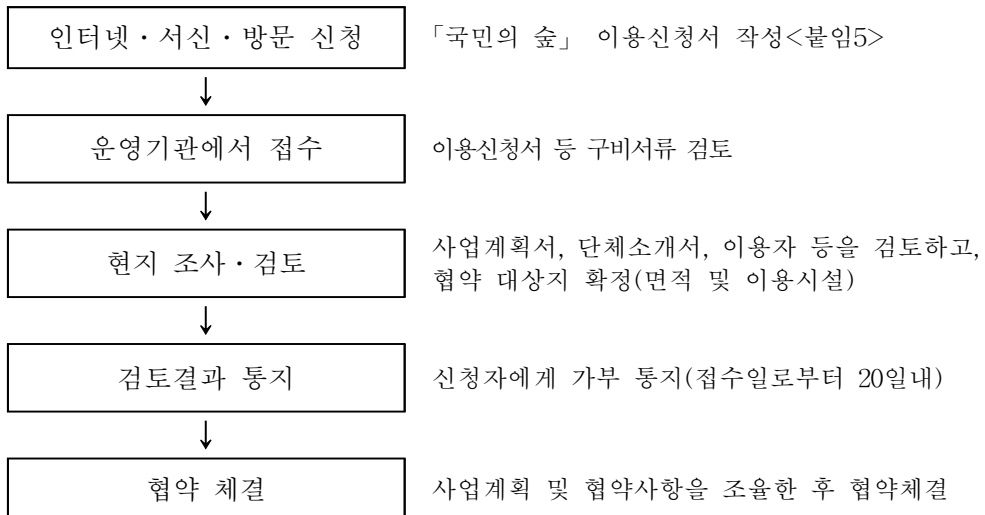
- 숲해설가, 퇴직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활동 안내인 배치
- 숲가꾸기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육림 장비 등 제공
 - 숲가꾸기에 필요한 장비(동력 장비 제외), 안전장비 지원 및 기술지도 실시
 - 장비 제공시에는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
- 참여 단체와 운영 기관간 자매결연 등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 산지정화 캠페인, 산불조심 캠페인 공동 추진 등
- 산나물 채취 체험행사 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약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 등은 무상양여
 - 협약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유임산물 양여 절차에 따라 처리

다. 산림레포츠의 숲

□ 이용대상 및 자격요건

- 숲을 사랑하고 산림레포츠를 즐기려는 상시 구성원수 20인 이상인 단체 및 동호회

□ 신청 절차



□ 추진방법

- 인터넷·서신·방문 등을 통해 이용을 원하는 단체가 <붙임5>의 「국민의 숲」 이용신청서 작성하여 신청·접수

- 인터넷 접수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 휴양·문화 - 산림휴양 - 국민의숲 - 대상지보기/신청)
- 서신·방문 등 접수 : 운영기관
- 개방되는 국유림 관리에 적정한 단체인지 여부 검토
 - 각종 대회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림레포츠를 위해 지원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세부계획 확인
 - 현재 장소에 산림레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를 중심으로 선정
 - 복수의 단체가 각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잦은 사용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중복 선정 가능
 - 관리자적인 입장에서 개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지장 여부, 훼손 여부 등을 판단하여 협약 대상자를 선정
- 이용 편의를 위해 협약체결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
 - 지역특성 및 산림레포츠 특성에 맞는 특약사항 반영
 - 기 조성된 여건(시설)을 활용하여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영구시설물의 설치 또는 추가적인 산림훼손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로 체결
 - 산림훼손을 동반한 추가 시설은 산림경영 및 보호 등 국유림 경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시설을 제공
 - 최소한의 산림작업으로 산림레포츠에 주요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운영자가 협의하여 조치
 - 협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협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매 5년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 ※ 1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 해지가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자동 연장(1년)되도록 운영
- 국유림 개방에 따른 국유림 관리에 대한 의무 부여
 - 사용하는 시설물(임도, 활공장 등)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
 - 협약에서 저안 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산림훼손 행위 금지
 - 협약지내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지정화, 산불예방 활동 등에 참여
- 협약한 국유림에 대하여 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는 즉시 협약을 해지하고 국유림 개방을 폐쇄

□ 지원 사항

- 협약한 국유림내에 ○○산림레포츠의 숲 안내판<붙임4> 설치
- 수목표찰·숲해설판 등 산림교육시설, 산책로 등 편의시설, 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

라. 사회환원의 숲

□ 참여대상 및 자격요건

-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청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 사업 내용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
- 「수목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등

□ 추진방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
 - 산림청장은 시설 조성에 필요한 산림을 제공하고 참여자는 사업비용을 부담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과 협의
 -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사업기간 및 방법, 사업개요,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 계획 협의
 - 운영방법, 시설물 기부채납, 사업비 조달, 사업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
-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은 공동사업자 90%, 국가 10% 비율로 분배

Ⅲ. 행정사항

□ 홍보 및 참여자 관리 강화

- 「국민의 숲」 제도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홍보
 - 국민의 숲 유형별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프렛 등 홍보물 제작
 - TV, 신문 등 언론기관과 협조하여 참여활동 등 기획보도
 - 이용자의 체험수기 및 산림문화 작품전과 연계한 사진공모
-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적극 홍보하고 우수사례집 발간
- 산림관련 단체, 시민단체 및 소관 비영리법인 등과 연계추진
-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 산주와의 만남 행사 등 산림관련 행사 적극 활용
 -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의 숲 설명회」 등 개최
- 우수 이용자에 대한 휴양림 이용권(비수기)제공, 명예산림보호지도요원 위촉 등 인센티브 제공
- 운영기관별로 퇴직공무원 등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여 숲가꾸기사업계획 수립 및 작업지도 요원으로 활용
- 이용자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산림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체계 유지

□ 운영자 인식 제고 및 업무부담 경감

- 운영기관 담당자 등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운영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최
 - 운영실적이 우수한 담당공무원에게는 포상,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 부여
 - 기관평가시 「국민의 숲」 운영실적을 반영하여 평가
- 이용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자 업무 경감 도모
 - 산림복지전문업자를 적극 활용
 - 「국민의 숲」 지정지 주변의 농산촌 주민 및 퇴직공무원 등을 「국민의 숲」 운영 안내인으로 활용

□ 신청절차 간소화 등 탄력적 운영

- 신청절차 중에 국민의 숲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후 운영기관장의 결재 후 신청절차와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운영

□ 산림보호 활동 강화

- 국민의 숲 내 오물 및 쓰레기 투기, 흡연, 취사행위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3항~제6항의 조항에 따름

□ 지정지 정비 등

- 대상지 지정·변경은 필요시 수시로 실시
 - 지정 변경 사항은 즉시 인터넷의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 게재

□ 보고사항

- 「국민의 숲」 지정 및 운영상황 보고(분기)
 - 상·하반기말 실적(누계)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 보고서식 : <붙임6>
- 국민의 숲 지정 변경 내역 보고(수시) : <붙임7>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종전 지침의 폐지) 종전의 「국민의 숲 지정·운영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국민의 숲 표준 협약서

국유림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국유림 관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산림에 대해 그 참여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국민의 숲 협약(이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대상산림: 도 군 면 리 번지(면적 ha)
- 참여유형 : 단체의 숲(활동내용), 산림레포츠의 숲(활동종류)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국민의 숲 이용자(이하“을”이라 한다)가 보유한 자원, 기술, 인력 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하여 상기 산림(이하“국유림”이라 한다)을 국민의 숲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갑은 을이 국민의 숲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시설 및 편의를 제공하며 산림의 건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을을 지도·감독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국민의 숲에 대한 자발적인 보호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국유림내의 입목 등에 중대한 손상을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협약서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년 월간)까지로 하며,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하에 재계약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무) ① 단체의 숲 이용자는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나무심기, 숲가꾸기 등 최소한의 산림작업과 산지정화, 산불예방 등 기본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레포츠의 숲 이용자는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유출 등의 산림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에 신중을 기하고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여 시설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산림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유림의 이용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용 활동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영리활동 금지 및 권리의 제한) 을은 국유림을 영리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산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의 신청에 의해 국유림내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을 무상양여할 수 있다.

제6조(단체의 숲 산림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갑과 을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대상 산림을 현지조사 할 수 있다.

② 협약기간 동안 추진할 세부 산림사업계획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수립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세부 산림사업계획의 사업물량은 을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로 계획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대상지의 여건 및 추진방향
3. 협약기간 내에 실행해야 할 연도별 산림작업계획
4. 기타 국민의 숲 이용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

③ 갑은 을이 수립한 사업계획 이외에 산림의 건강성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사업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의 동의 없이 국유림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산림레포츠의 숲 이용계획의 수립 등) ① 을은 매년 연간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간 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기간, 장소, 인원, 책임자, 활동내역,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산지정화, 산림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연간 이용계획서에 의한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활동 2주일 전까지 세부 활동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갑은 국유림의 건강성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간 이용계획서 및 제3항의 세부 활동계획서에도 불구하고 국유림 내에서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산림 레포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읍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숲가꾸기 활동의 지원) ① 읍이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갑에게 작업도구의 임대를 요청할 경우 갑은 무상으로 작업도구를 임대해 줄 수 있다. 단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동력이 있는 작업도구는 제외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도구 임대시 안전교육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의 설치) 읍은 당해 국유림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 숲 참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국유림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협약해지 등) ①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의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2.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사업계획 및 이용계획을 실행하지 않을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무상양여한 부산물 이외의 산물을 굴·채취한 때
6. 기타 산림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② 협약체결 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및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인, 허가, 협의, 신고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된 지역에 대하여는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읍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지방산림청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인)

(을)

주 소 :

성 명(법인인 경우는 그 대표자 성명) : (인)

※ 현지 여건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체험의 숲 안내판〉

『체험의 숲』 안내

이곳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숲의 여러 가지 혜택을 직접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개방한 「국민의 숲」입니다.

이 숲은 개인·가족 등 산림과 숲·나무 등을 사랑하고 가꾸기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숲을 좀 더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의 숲”입니다.

- ◇ 숲가꾸기 체험: 나무심기,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 ◇ 자연학습 체험 : 숲해설, 산림체험, 자연학습 등
- ◇ 산림문화 체험 : 숲체험, 숲건강, 산림휴양 등
- ◇ 산림보호 체험 : 산불예방, 산지정화, 산림피해감시 등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숲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산불조심은 물론,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의 숲 개요>

- 위 치 :
- 면 적 :
- 운영자 :

○○지방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화 000-000-0000)

【제작방법】

- 규 격 : 안내판 → 가로 130cm × 세로 110cm
지시대 → 길이 70cm (매몰된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 재 질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하되, 목재부분은 가급적 국산목재 사용
 - 설치장소 : 국민의 숲 주 출입구 또는 주 활동장소
- ※ 본 안내판은 현지 여건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단체의 숲 안내판〉

『단체의 숲』 안내

이곳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숲의 여러 가지 혜택을 직접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개방한 「국민의 숲」입니다.

이 숲은 ○○○○이 ○○지방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체의 숲”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숲을 좀 더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 ◇ 숲가꾸기 체험 : 나무심기,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등
- ◇ 휴양·문화체험: 숲탐방, 산림욕, 자연학습, 산림휴양 등
- ◇ 산림보호활동 : 산불예방, 산지정화, 산림피해감시 등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숲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산불조심은 물론,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숲 개요〉

- 명 칭 : ○○회사 단체의 숲
- 위 치 :
- 면 적 :
- 협약기간 :
- 협약자 :

○○지방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화 000-000-0000)

	<p>【제작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안내판 → 가로 130cm × 세로 110cm 지시대 → 길이 70cm (매몰된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 재 질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하되, 목재부분은 가급적 국산목재 사용 • 설치장소 : 국민의 숲 주 출입구 또는 주 활동장소 <p>※ 본 안내판은 현지 여건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p>	
--	---	--

〈산림레포츠의 숲 안내판〉

『산림레포츠의 숲』 안내

이곳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숲의 여러 가지 혜택을 직접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개방한 「국민의 숲」입니다.

이 숲은 ○○○○이 ○○지방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레포츠의 숲”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단체의 구성원들이 ○○○레포츠를 즐기면서 숲을 좀 더 이해하고 가까이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숲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산불조심은 물론, 쓰레기를 버리거나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레포츠의 숲 개요>

- 명 칭 : ○○회 산림레포츠의 숲
- 위 치 :
- 면적(임도) :
- 협약기간 :
- 협약자 :

○○지방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전화 000-000-0000)

【제작방법】

- 규 격 : 안내판 → 가로 130cm × 세로 110cm
지시대 → 길이 70cm (매몰된 부분을 제외한 지상부분)
 - 재 질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재질로 하되, 목재부분은 가급적 국산목재 사용
 - 설치장소 : 국민의 숲 주 출입구 또는 주 활동장소
- ※ 본 안내판은 현지 여건에 맞게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국민의 숲」 이용신청서

국민의 숲 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개인	성명				
		주소 (e-mail)	(전화 :)			
	단체	단체명				
		주소 (e-mail)	(전화 :)			
		대표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신청면적(㎡)
숲의종류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
이용목적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p>위와 같이 국민의 숲 이용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산림청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이용자 명부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해당없을 경우 생략) 5. 이용신청지 위치도(1/25,000) 1부 						

[별지 6]

「국민의 숲」 지정·운영 실적보고서

(' 〇 〇 년 〇 분 기)

□ 지정 현황

구 분	계	단체의 숲	체험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회환원의 숲
개소수					
면 적(ha)					

※ 지정현황은 인터넷에 게시한 현황임.

□ 운영 실적

구 분	지정		운영	
	개소수	면적(ha),임도거리(km)	개소수	면적(ha),임도거리(km)
계				
체 험 의 숲				
단 체 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 회 환 원 의 숲				

□ 세부 추진실적

구분	협약체결		이용실적(회/명)							
	협약자수	면적(ha), 거리(km)	계		협약식		행사		이용활동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계										
체 험 의 숲										
단 체 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사 회 환 원 의 숲										

[별지 7]

「국민의 숲」 지정 내역

○ 지정기관 :

지정 일자	지정 구분	유형	소재지	면적· 임도거리	특기 사항

※ 기재요령

- 구분 : 신규, 변경 등 지정 종류 기재
- 유형 : 체험의 숲, 단체의 숲, 산림레포츠의 숲 등
- 특기사항 : 임도시설 등 시설 현황 기재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혁신

3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품질 혁신

목 표

- ▶ 숲나들e 서비스 영역 확대 및 내실화로 국민편의 증진
- ▶ 다양한 휴양수요를 반영한 특색있는 산림휴양시설 확충
- ▶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기여

가. 정책여건

- 전국 국·공·사립 자연휴양림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숲나들e” 서비스 제공
 - * ('19년) 휴양림 시설 수: 172개, 숲나들e 통합 휴양림 : 147개
- 국민소득·여가시간 확대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 수요 증가
 - * 휴양림 이용자 증가 : ('14) 1,395 → ('16) 1,524 → ('18) 1,533만명
- 국·공립 산림휴양시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 증가

나. 기본방향

- 숲나들e 서비스 영역 확대 및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실화
 - 산림레포츠·숲길 안내·예약 서비스 통합 및 이용자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숲나들e 서비스 고도화 및 정보보안 강화
- 다양한 휴양수요를 반영한 산림휴양 시설·프로그램의 특성화
 - 증가하는 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에 의해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 반려견 동반 휴양림 운영 등 특수 산림휴양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및 소득사업 발굴
 -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객실 등 편의시설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종합 산림휴양·관광을 위해 “숲나들e”서비스 영역을 산림레포츠·숲길로 확대

- 산림레포츠·숲길 운영 제도를 표준화하여 통합 기반 마련
 - 예약 개시일, 환불정책 등 표준 운영 정책 수립
 - 숲길 안내도를 이용자에게 친숙한 이미지, 3D형태로 표준화
- 산림레포츠·숲길 콘텐츠를 통합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산림레포츠) 복합산림레포츠시설, 산림레포츠 숲·길, 테마임도 등

구 분	내 용	개소	이용자 수	비 고
계		83	653,749	
①복합산림레포츠시설	다양한 레포츠를 한 곳에서 즐기는 복합시설 조성(균특회계)	11	-	조성중11
②산림레포츠의 숲	산림레포츠에 적합한 국유림을 선정, 관련기관과 협약 후 이용	23	56,074	
③산림레포츠길	숲길의 종류로서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균특회계)	7	9,600	
④테마임도(레포츠형)	도시와 인접한 곳, 기존 레포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 선정	42	588,075	

- (숲길) 예약제로 운영하는 국가숲길, 100대 명산 등산로, 주요 둘레길·트레일, 곰배령 등 * 일반등산로는 공간정보 형태로 서비스
- 이용자들에게 산림휴양·관광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서비스 체계 마련
 - (주)카카오에서 보유한 관광관련 빅데이터 실시간 수집(약 300만건)·분석을 통해 산림휴양시설 방문 고객에게 맞춤형 주변 관광지 정보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산림휴양·관광 일정을 숲나들e에서 수립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휴양·관광 정책 수립 지원
 - 콜센터 민원, 숲나들e 1:1 문의, 이용후기 등 빅데이터 분석결과 제공

2)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위한 “숲나들e” 내실화 및 정보보안 강화

-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숲나들e 서비스 고도화
 - 현재 누락되거나 노후된 자연휴양림 배치도, 평면도를 전체 재구축
 - 사용자가 증가하는 성수기(7~8월)에는 간편예약 기능을 개발하여 시스템 안정성 유지
- 산림휴양시설 안내를 넘어 산림휴양·관광 인공지능 서비스로 혁신
 - 카카오의 인공지능인 카카오 i를 통해 산림휴양시설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 확인, 결제 등의 서비스를 말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자연휴양림 통계 업무 자동화
 - 자연휴양림의 가동률·수입금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제공
 - 숲나들e를 통해 수집되는 유용한 정보(유동 인구, 방문 연령대 등)를 개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숲나들e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 콜센터를 확대 운영(6명 → 12명)하여 고객 문의사항 실시간 대응
 - 24×365 장애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숲나들e 고객지원센터 대표번호 및 국립자연휴양림 개별 번호를 통합하여 중복민원 및 민원 불만 가중 해소
 - * (통합) 고객지원센터(1588-3250) + 국립자연휴양림 지역번호(42개소) \
- 숲나들e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 400만 건의 개인정보 보안체계 강화
 - 2중 로그인 체계 적용 및 개인정보접근기록 분석 시스템 적용
 - 국가정보원·광주센터와 협력하여 모의해킹 훈련 실시(연 2회)
- 숲나들e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추첨의 공정성 강화
 - 추첨제 서비스에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신뢰성 확보

3) 증가하는 휴양수요 충족을 위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 국민의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SOC 3개년 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 확충
 - ※ 산림휴양시설 “생활SOC 3개년 계획”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자연휴양림	174	181	184	186
숲속야영장	3	4	5	6

- 자연휴양림 신규조성 : ('19) 18개소(275억원) → ('20) 18개소(315억원)
 - * 국립 3개소(인천 무의도, 군산 신시도, 김해 용지봉)
 - ** 공립 15개소(서울1, 경기1, 강원1, 충북1, 충남1, 전북2, 전남1, 경북2, 경남5)
-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 ('19) 92개소(372억원) → ('20) 114개소(553억원)
 - * 국립 41개소(사업대상지 별도 선정)
 - ** 공립 72개소(대전2, 경기3, 강원8, 충북13, 충남11, 전북6, 전남11, 경북6, 경남8, 제주4)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3개소(경북1, 경남2) / (※지방이양 사업)
- 도시인근의 산림은 도시민의 휴식수요를 충족하는 산림욕장으로 조성
 - 산림욕장 조성·보완 : ('19) 2개소(4억원) → ('20) 15개소(28억원)
 - * 공립 신규조성 7개소(대구1, 인천1, 경기1, 충북1, 전북1, 전남1, 경북1)
 - ** 공립 보완사업 8개소(대구1, 경기1, 강원3, 전북1, 전남2)
- 가족·단체 등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숲속야영장 조성
 - 숲속야영장 조성·보완 : ('19) 4개소(18억원) → ('20) 6개소(31억원)
 - * 국립 신규조성 2개소(남부 김천, 부산)
 - ** 공립 신규조성 3개소(강원, 전남, 경북) / 보완사업 1개소(전남)
- 산림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복합재해모니터링 실시
 - 공립 10개소(대전1, 강원1, 충북2, 충남 2, 경북2, 경남2)

4) 특수 산림휴양수요 대응 전문시설 확대

-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
 - 휴양림의 위치, 입지여건 및 휴양수요를 고려하여 특성화 조성
 - * 예시) 암벽·짚라인(용화산), 산악스키(청태산), 숲길명상(칠보산), 음이온체험(남해편백), 아시아 문화투어(아세안), 증강현실 휴양림체험(유명산), 해수물놀이(변산) 등
 -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살린 산림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예시) 숲속 결혼식, 목공예체험, 숲속음악회 등 문화공연, 다문화가족 숲체험캠프 등
- 반려견 동반 전문 자연휴양림 운영 정착을 위한 내실화
 - 국립자연휴양림 반려견 입장가능 시설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정화
 - * '19년 3개소(산음, 검마산, 천관산) → '20년(모니터링 등 운영 정착)
 - ** 부정적 인식개선 및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로 견주·반려견이 함께하는 휴양문화 제공

5)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지역 인적자원과 함께하는 생활·문화 공간으로 산림휴양시설 개방
 - 산림휴양시설별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지역과 상생·협력 기반 마련
 - * 지역협의체에서 전국협의체 발전, 국립에서 공립으로 확장
 - ** 국립휴양림관리소 지역팀(4)에서 주민대표 간담회, 지역사업 발굴 등 주도적 역할
 - 지역주민 일자리 제공 및 소득사업 발굴 지원
 - * 특산물 판매장, 먹거리 장터 및 고유브랜드 도시락 판매
 -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확대 및 숲속결혼식 공간 제공
 - * 숲속음악회, 숲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생활 공간으로 개방
- 휴양림 인근 민간시설 개방·협력을 통해 휴양림 역할 확장
 - 민박·펜션 및 관광농원 등 휴양시설 상호 이용(사용료 할인 등)
 - * 숲해설, 목공예 및 산촌 체험 프로그램 등 공동운영
-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으로 랜드마크 명소화
 - 숲속의 집, 휴양림 입구 등 독창적 디자인 적용으로 관광 명소화
 - * 예시) 진도휴양림('17) : 명량대첩의 거북선과 12척 판옥선을 주제로 디자인
 - ** 신규 휴양림 조성 시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 반영

6)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 이용확대를 위한 시설 보완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이용기회 확대
 -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확보
 - * 자연휴양림 장애인 객실확보, 산림욕장, 숲속야영장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우선예약 객실 확대(장애인 전용 75실→84실 / 복지바우처 32실)
 - *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및 중증장애인용 시설 확충(비상벨, 침대, 식탁 등)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층을 위한 전화예약(ARS) 운영(50실)

7)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 안전관리 강화

-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 정기적 합동훈련을 통한 안전사고 대응력 제고
 -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를 통한 상황별 재난안전관리, 대처방안 숙지

- CCTV 확충, 노후시설물 안전진단 및 긴급의료시설 연락망 상시점검
 - *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한 모의훈련을 상·하반기 각 1회 실행
- 현장관리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반복 실시
 - 화재, 산사태 등 재해 대응 안전사고 응급처치 교육 및 위기대응 모의훈련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4단계 안전점검 체계 확립
 -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매뉴얼 보급 및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기준>

- 매일점검: 자연휴양림의 운영·관리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매일 점검 실시
- 월별점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시설물, 위생 관리상태 등을 점검
- 반기점검: 성수기, 동절기 대비 등 상, 하반기에 중점적인 점검 실시
- 특별점검: 산사태, 산불 등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시설의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유사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안전점검

- 산불, 산사태, 침수 등 복합재해 모니터링으로 사전 예방 및 조치
 - 진단 결과에 따라 휴양림 보완사업 또는 산불·사방사업 활용하여 보강
 - 낙상, 미끄러짐 등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사전제거 및 차단
- 쾌적한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후시설물 정비
 -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리모델링 등 보완사업 추진
 - 긴급 유지보수전담반 운영으로 고객 불편 최소화(국립)
-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하게 먹는 물 제공
 - 지하수 환경조사, 수질검사에 따라 정수기 설치, 상수도 도입 등 수질관리
 - 수질검사 결과는 홈페이지 및 객실 등에 공지하여 신뢰성 제고

8) 국립자연휴양림 객실확충 및 사용료 인상 등 경영개선

- 객실 확충 및 주중 가동률 제고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 이용률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휴양림 당 44객실 이상 확충(現평균 28실)
 - * 오지, 이용률 낮은 휴양림은 동절기 폐쇄, 숲속야영장으로 전환 등 탄력적 운영

- 단계적 사용료 인상 및 무료 이용시설은 여건을 감안해 유료 전환
 -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매년 사용료 인상 및 무료입장 축소
 - 바비큐장, 물놀이장 등 일부 무료시설 이용자 부담 및 체험료 현실화
-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절약형 시설물 설치 확대
 - 고단열·고기밀 설계, 열교환 환기장치 등 패시브 건축 도입
 - 태양광, 빗물 재이용시설 등 에너지 및 자원 절감 시설 확대

9) 산림휴양시설의 적기 조성 및 산림휴양분야 제도개선 추진

- 신규조성·보완사업에 따른 행정절차 사전 이행으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철저
 - 휴양림 구역지정, 조성계획승인, 부처협의 등 인·허가사항 조기 완료 및 사업 착수로 당년 예산 이월 최소화하여 집행 철저
 - * 공립휴양림 신규 조성 예산은 1차년 설계비, 2~4차년 시설비를 요구
- 사업 타당성 심의 강화를 통해 적정 예산 반영 등 사업효율성 제고
 - 대상지 확보,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시설규모 등을 검토하여 예산 반영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시 건축공사에 대한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에 의해 추진

-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시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건축법 적용
- 숲속의집 등 건축공사는 산림사업법인,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경우만 가능
- 숲속의집 등 휴양림내 건축공사는 “산림사업”, “건축공사업” 모두 해당
- 산림조합이 대행·위탁을 통해 수의계약한 숲속의집 건축공사 하도급은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 산림조합이 산림사업법인에 하도급하여 법인이 시공한 실적을 적격 심사시 법인의 시공실적 인정은 공사 계약 담당관이 판단
-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하되 계약의 방법 등은 계약담당관의 결정에 따름

※ 산림자원과-6521(2019.11.22.)호 「자연휴양림 등 건축공사 관련 법령해서 알림」 참고

-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구체화 및 지자체 조례제정 근거 마련

- < 금지행위 예시 >
1.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자연휴양림등의 시설을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물건을 파는 행위
 5. 기타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자연 휴양림 등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을 통해 타당성 평가기준의 실효성 확보 및 정밀한 산림휴양 수요예측 기법 마련, 자연휴양림 지정 면적기준 등 완화
-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객실 이용요금 감면 대상 확대
 - * 입장료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와 보호자(상이등급 1~3급)를 추가하고 입장료 면제 대상 지역주민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
 - ** 객실요금 : 독립유공자, 지역주민(읍·면·동 → 시·군) 등 비수기/주중 할인
- 자연휴양림 내 연소난방기가 있는 객실의 경우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 의무화 (전체 객실 중 약 13%)

10) 산림휴양문화 개선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및 행정관리

- 홍보매체 다양화 및 국민 참여형 캠페인 추진
 - 애니메이션 등 광고영상 송출 및 리플릿, 기념품 등 로고 활용 홍보
 - ‘휴문화한마당’ 등 기관별·지역별 각종 행사 시 캠페인 전개
- 휴양시설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휴양문화 확산
 - 자연휴양림에 전통놀이세트(웃놀이, 공기 등) 및 보드게임 비치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등 금지행위 중점 홍보·계도 및 단속
 - 객실, 탐방로, 야영장 등 지정장소 외 흡연행위 금지 중점 계도
 - 휴양림 매표소 안내입간판, 객실 내 안내문 등 금연문화 조기 정착 유도

라. 추진일정

- 산림휴양시설 계속 및 보완사업 추진 : 1~12월
- 자연휴양림 조성·보완사업 타당성 심의 : 2월
-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 추진 : 4~12월
- 자연휴양림 성수기 및 화재예방 안전점검 : 6월, 11월
- 숲길·산림레포츠를 포함한 숲나들e 서비스 개시 : 12월
- 산림휴양시설 조성현황 점검 : 상·하반기 각 1회
- 산림휴양시설 모의훈련 실시 : 상·하반기 각 1회

[별표 1]

2020년도 산림휴양시설 사업량 및 예산현황

가. 자연휴양림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개소별
합계	132	86,769	
조성	18	31,478	
국립	3	18,971	인천(2,367), 군산(14,237), 김해(2,367)
공립	15	12,507	서울(200), 경기 광주(200), 인제(1,750), 괴산(800), 충남(407), 정읍(300), 김제(1,300), 영암(1,750), 청도(1,200), 영덕(300), 진주(1,000), 사천(500), 밀양(1,100), 고성(950), 거창(750)
보완	114	55,291	
국립	42	25,003	국립 42개소(개소별 사업량 별도 선정)
공립 (개소/금액)	72 30,288		대전(2/1,000), 경기(3/550), 강원(7/1,660), 충북(13/10,112), 충남(11/3,350), 전북(6/3,500), 전남(11/4,566), 경북(7/1,685), 경남(8/2,965), 제주(4/900)

나. 산림욕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개소별
계	15	2,750	
조성	7	1,900	대구 동구(400), 인천 계양구(200), 성남(100), 음성(300), 남원(400), 영광(300), 구미(200)
보완	8	850	대구 달성군(100), 광명(150), 홍천(100), 삼척(100), 영월(100), 진안(100), 장흥(150), 해남(50)

다. 숲속야영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개소별
계	4	3,050	국립 2개소, 공립 4개소
조성	5	2,800	김천(국립, 1,000), 부산(국립, 200), 태백(공립, 1,000), 화순(사립, 400), 의성(공립, 200)
보완	1	250	보성(사립, 250)

라.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모니터링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개소별
복합재해 모니터링	10	425	대전(1), 강원(1), 충북(2), 충남(2), 경북(2), 경남(2)

1. 자연휴양림의 지정 신청 및 고시

-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제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구역도(축적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각 1부
 - 자연휴양림 지정 타당성평가조사서 1부
 -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 협의에 필요한 사전입지조사서 9부
-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신청 시 공고 및 열람, 주민의견 청취 등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이행 후 신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내용을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자연휴양림 지정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참조
 - ※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5호)」 참조
- 자연휴양림 지정(변경) 고시 후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공익용산지)로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산지관리시스템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재하는 등 후속조치 반드시 이행

2. 조기착공 및 선금·기성금 등 조기집행 촉진

-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동참하여 시설공사 기성금 등 조기집행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신규조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는 1월내로, 기본 및 실시설계는 2월내로 완료하여 3월 안에는 반드시 전 개소가 착공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보완사업은 성수기(7월) 이전에 제반사업 완료
-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대행 위탁규정을 최대한 적용
- 공사완공 즉시 준공 검사하여 자금의 조기집행 촉진
 - '17년도 불용 및 이월, '18년도 상반기 집행실적(60%이하) 부진개소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20년도 예산 신청 시 삭감 등 강력 조치

3. 자연휴양림 설계 · 조성 및 보완사업의 체계적 추진

-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사업비의 충분한 확보
 - 사전환경(경관)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등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한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최초 조성(설계) 시부터 체계성을 갖춰 부실화되지 않도록 추진
- 자연휴양림 설계 및 조성은 자연친화적이고 특성화·다양화되게 추진
 - 숲속의 집 등 휴양시설은 이용요구에 따라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등의 전통가옥을 도입하여 특성화 및 다양화 추구
 - ※ 특성화를 이유로 이용객의 선호도가 낮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시설 도입은 지양
 - 시설물은 자연지형을 이용하는 등 산지전용 등이 최소화되도록 배치
- 자연휴양림 내 신·개축 및 보완공사 시 목재 등 친환경자재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국산목재 등 목조시설 개발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제고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개발한 목조시설용 프리컷 방식의 목조건축 기술 및 주차장용 목재 카스토프 등 활용
 - 친환경자재 사용 및 단열성능을 높이기 위해 내·외 단열공법을 적용하고 에너지 효과가 높은 LED 전등기구, 펠릿보일러 등 적극 적용
-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휴식년제 실시
 - 보호나 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곳은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고시 전에 산림청에 통보
 -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사전에 해소
- 자연휴양림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자연휴양림 조성 협의회」 운용
 - 협의회는 산림휴양·환경·건축·토목 등에 관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등 기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
 - 협의회는 임무는 개소별 자연휴양림의 설계와 조성에 대한 자문

<자연휴양림 신규설계>

- 자연휴양림 설계는 자연친화적이고 고객 선호도 중심으로 추진
- 자연휴양림의 특성화 및 브랜드화를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고객선호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구상단계부터 다음 5대 방향성을 감안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 <산림휴양시설의 브랜드화를 위한 5대 방향> —

- ① 통일성 : 산림휴양시설내 모든 환경과 시설, 프로그램이 산만하지 않고 통일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함
- ② 통합성 : 어트랙션과 시설물, 이벤트, 특산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모여서 통합되어 관리 유지되도록 함
- ③ 복합성 : 창조적 공간으로서 휴양기능과 함께 여가·오락·문화·산림정보·교육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④ 포용성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전용시설 확충 등 배리어 프리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을 설계에 반영·추진되어야 함
- ⑤ 테마성 : 산림휴양시설별로 건축물, 조경물, 놀이시설, 특산품 등 대표하는 독특한 테마와 일정공간을 바탕으로 조성·운영되어야 함

- 휴양자원, 이용수요, 주변 관광자원 등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표 시설 규모 설정으로 예산의 무분별한 낭비 예방
- 산림휴양시설의 물리적(시설물의 최적공간규모), 생태적(식생·토양·수자원 등 자기회복 능력), 사회적(탐방객의 이용밀도) 수용력(carrying capacity)을 고려한 적절한 시설로서 자연환경·경관 등 어메니티(Amenity)의 자원화
- 시설물 배치는 산지전용 및 입목벌채가 최소화되도록 자연경사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고, 계곡의 최고수위 및 산사태 위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
- 산림체험코스, 자연관찰원 등 자연학습·교육을 위한 기초시설은 확대
-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시설과 교통약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은 충분히 설계에 반영
- 산림환경의 탄력성과 비가역 특성을 감안하여 생물종 다양성이 높은 일정 범위의 수변지역은 반드시 보전
- 건축물의 지붕 등은 주변 지역의 색채와 조화되도록 하고, 숲속에 심어 놓은 형태의 숙박시설, 오토캠핑장 및 야영장이 되도록 설계
- 숙박시설의 다양화 및 편의성 제고
 - 숲속의 집은 지역 및 주변 환경적 특성에 맞는 건축물을 도입
 - 건물은 이용객 프라이버시 보호 및 조망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배치
 - 창문은 앉아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낮고 넓게 배치
 - 화장실, 싱크대 등 습기가 많은 부분은 벽돌 등 내습성 재료 설계
 - 구조용 목재는 직경이 20cm이상인 성숙한 원목으로 설계
 - 목조자재는 함수율, 용이, 방부처리가 제대로 된 자재 사용

- 휴양편익시설은 방문자 안내소를 중심으로 기능별로 배치
 -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자연휴양림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배치
 - 특히, 숙박시설지구와 캠핑지구를 격리하여 이용자 마찰 방지
- 자연휴양림 주변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
- 산림환경보전을 위한 수질오염 예방 등 시설기준 이행 철저
- 기본계획 및 신규설계 착수 전에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 추진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관리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등 타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이행

<자연휴양림 조성>

- 산림휴양시설 조성 전에 지역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성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할 것
- 기반시설은 목표 시설규모에 맞추어 초기에 조성(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하고 숙박시설은 기반시설 정비 후 연차적으로 시설 반영
-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의 부합여부 검토
- 공·사유 자연휴양림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이행
 - 건축, 하천점용, 오수정화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등 타 법령에 의한 인·허가 조치를 완료한 후 공사 추진
- 공·사유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권자 : 시·도지사
 - *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 즉시 산림청에 결과 보고
-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설계내역대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철저
 - 통나무 자재로 숲속의 집 등을 조성하는 경우 자재에 대한 검수 철저
 - 특히, 함수율, 용이여부, 방부처리, 성숙도(직경20cm 이상) 등 점검에 유의
 - 시·도(시·군)에서는 사유자연휴양림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산림 소유자로부터 준공계를 제출받아 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 실시
- 개소별 여건을 감안하여 산림문화체험 등 특성화 및 명소가 되도록 추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 시설확충은 가동률이 높고 이용자수 증가가 예상되는 자연휴양림에 시설별 투자수익성 및 잠재 수요에 따라 선택과 집중(자연휴양림별 완결원칙)
- 자연휴양림별로 이용자 불만족도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보완 추진
- 제반 보완사업은 연초에 착수하여 성수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 숙박, 위생시설, 고객안전, 유니버설디자인 등 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집중 보완

<보완 및 개선이 시급한 대표적인 시설>

- 노후화된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숙박시설 리모델링
- 전기배선점검, 취사용가스 안전보관함 설치, 화재방제 안전시설 구축
- 음용시설, 재래식 화장실, 공동 취사장 등 위생시설개선 및 냄새, 곰팡이, 습기제거, 빛바랜 천막, 부후가 심한 평상형 야영데크 철거
- 스텐레스 식기, 양은냄비, 너무 작은 용량의 냉장고, 휴대용부스터, 색이 바랜 수저류 등 주방기기 개선, 긴급구호, 비상대피 안내 등을 위한 방송음향시설 설치
- 이부자리(무거운 솜이불, 시트 및 베개) 교체, 웰빙형 목재침대, 세탁시설 설치
- 진입로 정비, 안내이정표 설치, 전기승압, 휴대전화 송수신 및 TV난시청 해소 등
- ※ 화재방제시스템은 부실시공 예방과 지하수 환경 보전 및 연중 전천후 활용을 위해 관정·계곡유하수를 이용한 정부공인 시스템으로 구축

4. 자연휴양림 운영활성화 및 이용요금 현실화로 경영수지 개선 도모

- 주중 가동률 제고를 위해 상품 개발, 단체연수 전문업체와의 MOU확대
 - 휴양림을 플랫폼으로 한 숲으로 떠나는 힐링열차, 기차로 떠나는 캠핑 등 주중 상품 개발·운영 및 홍보강화로 브랜드화
 - 국내 여행사와 공동으로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새로운 투어 상품 개발
 - 단체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업체와 전략적 업무협력 강화
- 언론,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강화
 - 일간지 주말 섹션을 통한 기획보도,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의 광고판 활용
 - 투어상품 홍보 블로그 운영,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홈페이지 배너 광고
- 펠릿보일러, 태양광 시설확대로 전기료, 난방비 등 운영경비 절감
 - 산림문화휴양관 등 규모가 큰 시설부터 펠릿보일러 확대 설치
 - ※ 펠릿보일러 확대(국립): ('13) 29대 → ('14) 34대 → ('17) 49대
 - 태양광, 지열, 하이브리드 가로등, 지열 등 에너지 절약시설 적극 도입

- 시설사용료 인상을 통한 요금현실화 및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등에 대해서는 주중 요금할인 적용

5. 자연휴양림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

- '보완 및 개선이 시급한 대표적인 시설'을 중심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부터 집중보완
-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전용시설의 점진적 확대 운영
 - 자연휴양림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 등 보완사업을 할 경우에는 전용 편의시설(주차장, 객실, 화장실 등), 진입로 경사 완화, 현관 진입턱 제거, 점자블럭 시설, 데크, 핸드레일 등 유니버설 및 배리어 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을 설계에 반영하고, 장애인 전용 객실도 점진적으로 확대

(사례 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장애인 시설 추가 건축비용 비교

(비용 : 천원)

시설물명	건축면적	일반객실(A)		장애인 전용객실(B)		증감(B-A)		
		건축비용	비용/㎡	건축비용	비용/㎡	건축비용	비용/㎡	비율(%)
숲속의집(1층)	58㎡	72,161	1,252	75,591	1,312	3,430	60	4.6

-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문화프로그램의 운영 확대를 통한 자연휴양림의 공익적 역할 강화

(사례 2) 장애인과 함께 하는 숲·목공예체험(방장산), 다문화가정 초청캠프(유명산) 등

- 국민의 이용예약 및 입장 편의를 위한 온라인예약관리시스템 구축
 -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 및 예약시스템 운용, 정규공무원 배치 등
- 고객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제공
 -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객 편의 증진
 - 자연휴양림별로 음악회, 시 낭송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수시로 개최
 - 관내 유치원,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확대
 -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산림청의 「숲에 On」을 통해 홍보
- 자연휴양림별 이용객을 대상으로 자연휴양림에서 실제 느낀 이용 만족도를 인터넷·전화·대면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자율)하여 정책에 반영
-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휴식년제 실시
 - 보호나 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곳은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
 - 자연휴양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고시 전에 산림청에 통보
 -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여 이용객의 혼선을 사전에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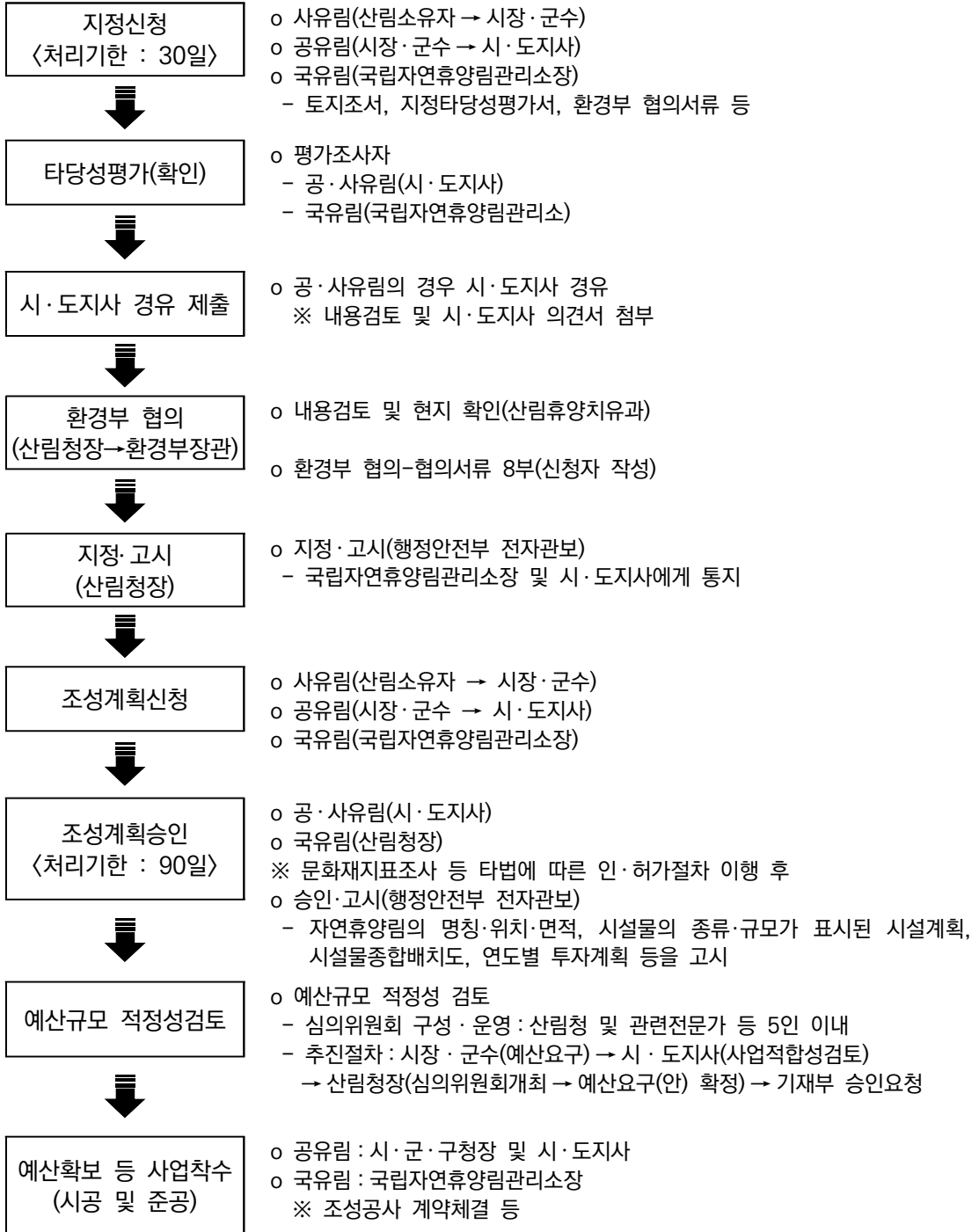
6. 재해·재난, 산불 및 화재예방, 먹는 물 관리 강화 등 고객 안전 강화

-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관리 철저
 - 산사태, 낙석위험지 등 휴양림 내 취약지역 안전시설 확충 및 순찰 강화
 - 여름철 산림재해대책상황실 운영으로 기상상황에 따라 신속 대응
- 산불·시설물 화재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 휴양림별 산불방지 대책 및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철저
 - 야외소화전, 소화기 등 산불·화재 진화장비 확보 및 자체 훈련 강화
 -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자연휴양림내 안전한 먹는 물 제공
 - 음용수는 연 4회(분기별), 물놀이장 등의 생활용수는 연 2회(반기별) 실시
 - 신뢰성 제고를 위해 수질검사 결과를 홈페이지, 객실 등에 신속히 공지
 - 부적합시 대장균 등 부적합 항목의 특성에 따라 신속한 수질개선 조치
 -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
-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산책로 등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여 등산객 안전 강화

7.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 시·도지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육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
-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때에는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산림청장은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
- 기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 일시정지, 정산 등에 관한 처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추진절차



1. 대상지 선정

- 1단지의 면적은 5ha이상
- 도심에서 가까운 산림으로 지역주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

2. 조성 및 관리·운영

- 공·사유림의 소유자 등이 산림욕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
- 시·도지사가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
-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전망대·야외탁자·야외쉼터·대피소·방문자안내소·주차장 등 편익시설
 - 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등 위생시설
 - 탐방로·자연관찰원·목공예실·숲속교실·곤충원·식물원 등 체험교육시설
 - 철봉·평행봉·배드민턴장·족구장·물놀이장·다목적잔디구장 등 체육시설
 - 재해경보기, 사방댐 등 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 기타 파고라, 정자, 관리사 등 산림욕장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산지전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적의 판단하여 설치
- 야생화 등 자생식물 식재 및 다양한 숲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방과 후 숲속교실로 적극 활용
- 산림욕장 안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해당 산림욕장의 산림상태 및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오물처리장·화장실 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상시 위생관리
 -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을 1미터50센티미터 내외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지전용을 최소화
-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 및 야생화 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방과 후 산림교육이나 숲속교실 공간으로 활용

- 간이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때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유의
 - 특히, 목재로 시설하는 경우 방부·방충 처리 적정여부 등 충분히 검토
- 각종 안내판 및 해설판 등은 반드시 설계에 반영, 자연휴양림 이미지 형성 사업(C.I) 추진요령에 의거 제작 설치
- 성수기에는 가급적 관리 및 안전 인원을 배치하여 시설물의 점검, 오물청소 및 산불 감시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이용실적을 파악하여 연간 이용현황 작성
- 지역 사회단체, 학교, 이벤트업체 등과 연계하여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

3. 산림욕장 조성 및 운영 관리의 체계화

- 신규조성 및 보완사업은 조기 착공, 성수기 이전에 완료
- 도시 근교형 산림욕장은 주변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숲체험·산림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추진
 -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우선도입
 - ※ 산림욕장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산림욕장 활성화 계획」 수립

4.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 시·도지사는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
- 산림청장은 산림욕장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때에는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산림청장은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
- 기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 일시정지, 정산 등에 관한 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1. 숲속야영장의 정의

-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함)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조성한 시설

2. 조성절차

- 산림의 소유자 등이 숲속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

3. 숲속야영장 시설의 설치기준

- 조성 대상지
 -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 숲속야영장의 조성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할 것

○ 시설의 종류

구 분	시설의 종류
가. 기본시설	일반야영장(야영테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동차야영장·숲속의 집 및 트리하우스 등
나. 편의시설	임도·야외탁자·테크로드·전망대·모노레일·야외쉼터·야외공연장·대피소·주차장·방문자안내소·임산물판매장·매점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등
다.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음수대·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라. 체험·교육 시설	산책로·탐방로·등산로·목공예실·생태공예실·산림공원·숲속교실·숲속수련장·세미나실·산림작업체험장·임업체험시설 및 로프체험시설 등
마. 체육시설	철봉·평행봉·그네·족구장·민속씨름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썰매장·테니스장·어린이놀이터·물놀이장·운동장 및 다목적잔디구장 등
바. 전기·통신 시설	전기시설·전화시설·인터넷중계기·휴대전화중계기 및 방송음향시설 등
사. 안전시설	펜스·화재감시카메라·화재경보기·소화기·재해경보기·보안등·비상조명설비·비상조명기구·재해예방시설·사방댐 및 방송시설 등

* 비고 : 가목에 따른 기본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기본시설 안에 다목에 따른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없다.

○ 시설의 규모

가.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 기준(단 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 민간이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

다.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

○ 시설의 기준

가. 일반기준

-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 자연배수가 잘 되고 평균경사도가 25도 이내의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할 것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석류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 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 범람으로 고립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야영장 진입로 및 내부도로는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만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차량 주행도로(「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와 야영장은 20미터 이상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것
- 전기시설의 경우 침수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접지를 하며, 보행로 상에 전선피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나. 시설별 설치기준

- 일반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텐트 1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의 야영시설은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는 공간과 그 옆에 야영 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당 5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 간 이격거리를 6미터 이상 확보할 것
 - 야영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당한 울폐도(鬱閉度: 숲이 우거진 정도) 및 차폐도(遮蔽度: 숲으로 둘러싸인 정도) 등을 유지할 것
 - 이용자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시설 중 일부는 장애인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
 -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긴급한 재난·사고 시 신속히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갖출 것
 - 야영공간 2개소당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배치할 것
 - 응급약품 등 비상물품을 갖춘 별도의 비상대피시설을 지정할 것
 - 비상시 야영장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비상조명설비 또는 비상조명기구를 갖출 것
- * 비고 : 기타 시설별 설치기준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 및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장업에 관한 기준에 따름

4.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조치

- 시·도지사는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
- 산림청장은 조성계획의 승인 취소 통보를 받은 때에는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산림의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산림청장은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
- 기타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 일시정지, 정산 등에 관한 처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I. 총 칙

1. 현황 및 문제점

- 산림에 조성되는 휴양시설은 그 목적과 위치적 특성상 산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산불, 산사태, 토석류, 낙석, 지반침하, 침수 등의 각종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시설물 노후, 불량 등으로 인한 인공재해 등 다양한 종류의 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인공재해 및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
- 특히 산림휴양시설은 산림내 대면적으로 조성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발생 시기와 산불 발생 시기에 이용자가 집중되므로 재해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크며,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재해발생시 초동대처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연재해, 인공재해, 안전사고 등 각종 복합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방법과 절차가 없는 실정임

2. 필요성 및 목적

-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방지, 산사태예방, 산지보전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산사태예방사업의 경우 생활권 중심으로 사업이 실행되는 등 자연휴양림과 같은 특수 복합시설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비 체계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4.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산림휴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조사 및 유지관리 업무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5. 용어의 정의

-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 산림에 설치된 휴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
 - * 자연재해 : 산불, 산사태, 토석류, 낙석, 지반침하, 침수 등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
 - * 인공재해 : 인공사면 및 절토사면 붕괴뿐만 아니라 건축물, 목구조물, 교량, 터널 등의 시설물 노후 및 불량 등으로 인해 기능이 상실 또는 저하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재해
-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시스템
 - 산림휴양시설과 그 일대의 영향 범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재해에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실태조사」 및 「유지관리」를 종합한 산림복지 안전서비스
 - * 산림휴양시설 정밀실태조사 :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을 점검·조사·분석하고 이에 따른 재해별 모니터링 방안 및 대책공법 등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기술업무
 - * 산림휴양시설 유지관리 : 정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불량 시설물을 보수하거나, 위험지역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 또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수·보강·경보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산림휴양시설의 장수명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유지관리 행정업무

Ⅱ. 사업개요

1. 실행주체

- 공유 자연휴양림을 운영 및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
- 사유 자연휴양림을 운영 및 추진 중인 개인 및 민간단체

2.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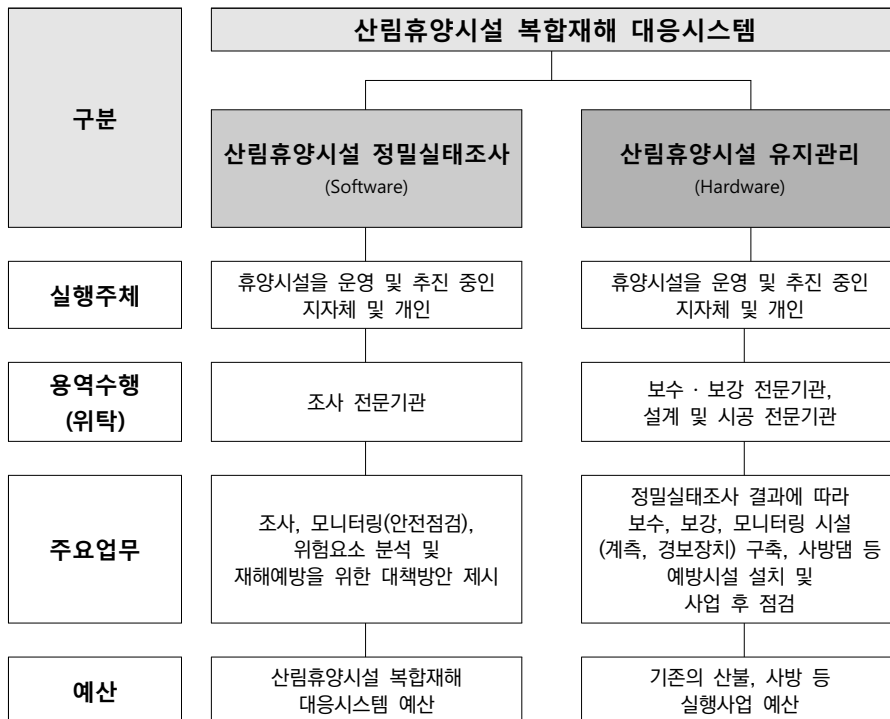
-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본 지침 및 산림청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예산지원 : 지자체(국고 50%, 지방비 50%)

3. 사업 대상

- 지방자치단체(공립)가 조성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 등 각종 복합재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해당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 또는 상실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 등)을 대상으로 함
- 새로이 조성되는 산림휴양시설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에서부터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각종 복합재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추진(해당 지침과 기술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함)
- 국유 자연휴양시설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은 본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나, 예산 및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정함

4. 사업 추진 체계

- 산림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시스템」 예산으로 실시하고, 보수·보강·대책공법(산불소화시설, 사방댐 등) 및 모니터링시스템(계측, 경보) 등의 설계·시공 사업은 기존의 산불 및 사방사업 예산 등으로 추진
- 추진 체계



5. 사업계획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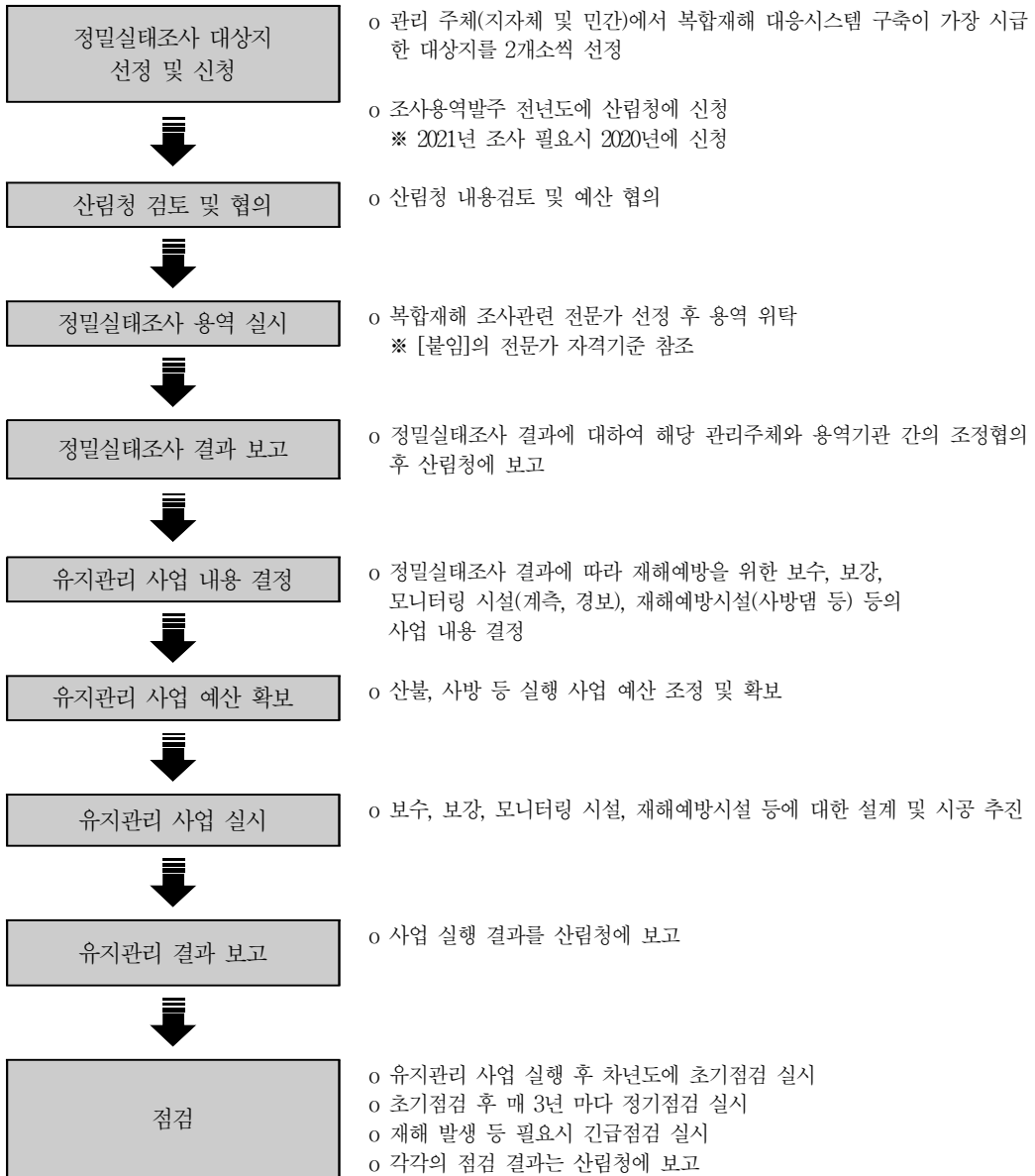
○ 2020년도 ‘산림휴양시설 정밀실태조사’ 사업계획

- 대상개소 : 공유 10개소

※ 공유 자연 휴양림의 경우 각 도별로 관리중인 휴양시설 중 조성 후 10년이 경과하거나 정밀실태 조사가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 소요비용 : 개소당 85백만원(30ha 기준)

6. 추진 절차



7. 정밀실태조사 대상지 선정방법

<우선 조사대상지 선정 요건>

- 1 순위: 해당 관리주체에서 운영 및 추진 중인 산림휴양시설 중 각종 복합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시설 또는 민원 요청지
- 2 순위: 각종 복합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 3 순위: 각종 복합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 해당 지자체 및 개인이 우선 조사대상지 선정이 어려울 경우 산림청에 문의하여 전문가 지원을 받아 현장검토 실시

<후 순위 요건>

- 최근 3년 이내 조성된 산림휴양시설로서 재해이력이 없거나 재해 발생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시설

8. 용역수행자 선정

-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는 전문적인 지식, 경험 및 자격 없이는 그 위험성과 피해정도를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재해예방 대책방법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여야 함
- 정밀실태조사 용역수행 전문가는 [붙임]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복합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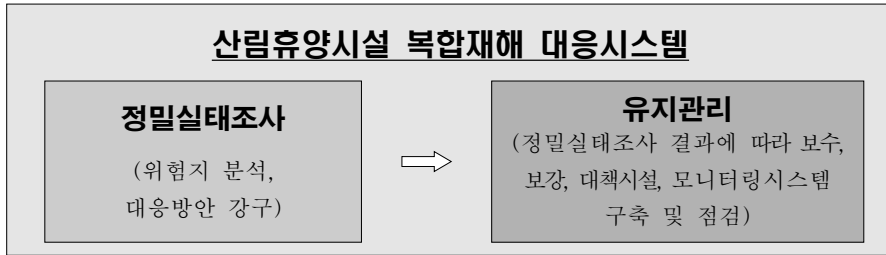
Ⅲ.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시스템

1. 시스템 개요

- 산림휴양시설을 대상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복합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피해정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시설을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 함으로써 장수명화를 도모

2. 시스템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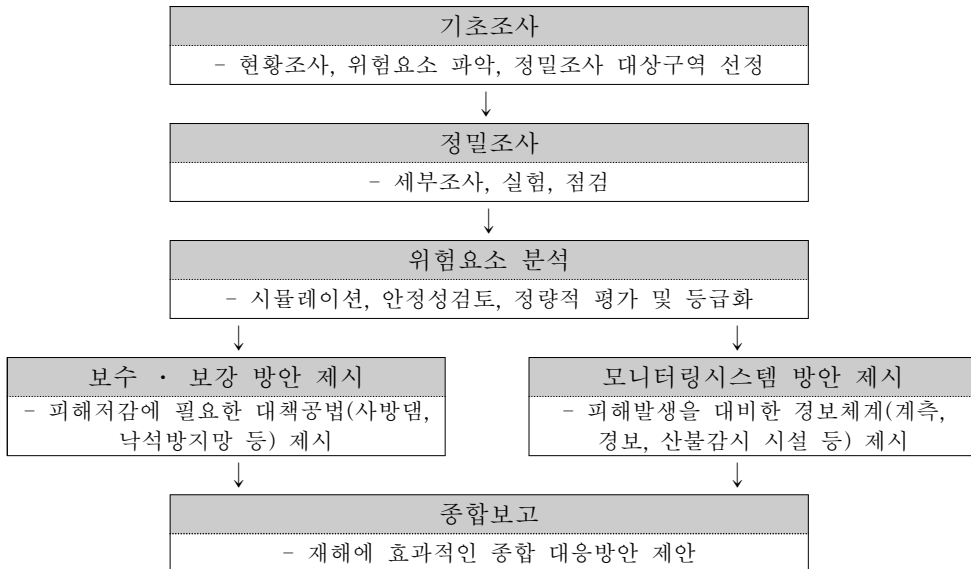
- 정밀실태조사: 각종 복합재해의 위험성과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실험·분석·평가 및 효과적인 대응·모니터링방안 제시
- 유지관리: 정밀실태조사의 대응방안에 따른 보수·보강·대책시설(산불소화시설, 사방댐 등)·모니터링시스템(계측, 정보) 구축 및 해당 시설물 점검



<시스템 체계도>

3. 정밀실태조사

- 정밀실태조사는 다음의 체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정밀실태조사 체계도>

- 조사방법: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위성사진분석·의견조사 등 간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조사영역: 산림휴양시설 내 주요시설 및 복합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피해 예상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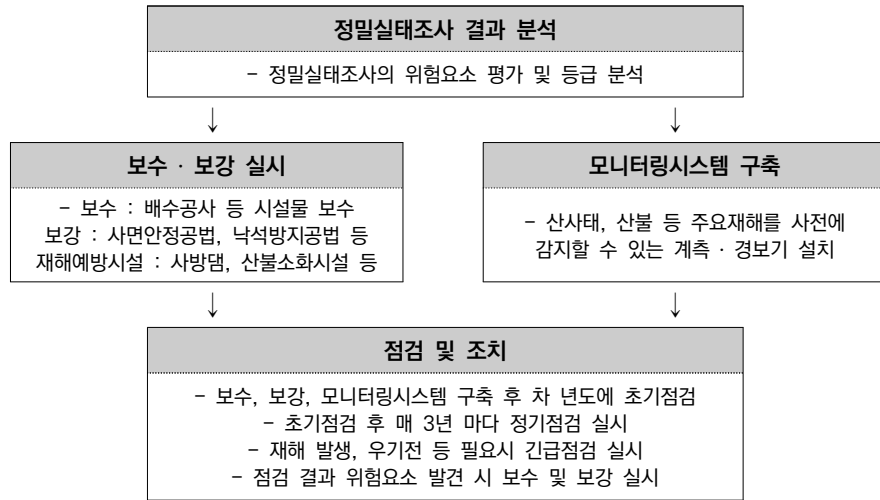
- 기초조사
 - 자연산지: 지표지질 조사 등 현황조사
 - 인공사면: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 현황조사
 - 산불: 산불예측지도, 산불이력 및 임상 등 조사
 - 구조물: 건축물, 교량 등 구조물관련 기초자료 검토, 현황조사
 -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성이 높은 정밀조사 대상지 선정
- 정밀조사
 - 자연산지: 산사태, 토석류, 낙석 가능성 정밀조사
 - 인공사면: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 붕괴가능성 정밀조사
 - 산불: 산불소화시설 및 산불감시시설 적지 현장검토
 - 구조물: 건축물, 교량 등 주요시설물 점검(산림휴양관 등에 대한 내진 검토 등)
 - 실험: 시물레이션, 안정성분석 등을 위한 시료채취, 각종 현장 및 실내실험
- 위험요소 분석
 -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및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근거 마련
 - 실험결과 분석: 각종 현장실험 및 실내실험 결과 분석
 - 시물레이션: 산사태, 토석류, 낙석의 위험도 및 피해도에 대한 수치해석
 - 안정성검토: 인공사면에 대한 안전율(설계기준) 검토
 - 상태평가: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구조물의 상태를 평가
 - 산불 평가: 산불 위험도 및 피해 가능 정도 평가
 - 기타 재해 평가: 침수, 지반침하 및 기타 안전사고 위험도 및 피해도 평가
 - 등급화: 각 위험요소에 대한 등급 설정
- 보수·보강방안 제시
 - 분석된 위험요소별 효과적 대응방안 제시
 - 자연산지: 사방시설, 낙석방지시설 등 대책방안 제시
 - 인공사면: 사면안정공법 등 대책방안 제시
 - 산불: 산불소화시설 필요시 대책방안 제시
 - 구조물: 보수 또는 보강공법 대책방안 제시
 - 기타 재해: 침수, 지반침하, 안전사고 등에 대한 대책방안 제시
- 모니터링시스템 방안 제시
 - 대책방안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경보체계가 필요한 구간 또는 현실적으로 재해예방시설 시공이 어렵기에 대피체계 구축이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고 계측기 및 경보장치 등 기술적인 방안을 제시

○ 종합보고

- 해당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안

4. 유지관리

○ 유지관리 시에는 다음의 체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유지관리 체계도>

○ 대상지

- 보수·보강: 정밀실태조사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재해대책 공법(산불소화시설, 사방댐 등)이 제시된 산림휴양시설
- 모니터링시스템: 제안된 보수·보강 공법의 시공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보수·보강 후에도 피해 가능성이 높아 대피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산림휴양시설
- 점검: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시스템」에 따라 보수·보강·재해대책공법·모니터링시스템 중 한 가지라도 실시된 산림휴양시설

○ 보수 및 보강

- 정밀실태조사 결과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대책공법(기본계획)이 제시된 산림휴양시설의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 및 보강을 실시하여야 함
- 보수·보강·재해대책공법의 적용시에는 사방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모니터링시스템

- 대책공법의 실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모니터링시스템 등을 통해 대피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모니터링시스템 구성
 - 계측기(산사태, 토석류, 낙석,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을 대상으로 변위양상 파악)
 - 산불감시기(산불재해발생 여부 사전 파악)
 - 경보기(계측기 및 산불감시기와 연동하여 위험발생시 해당 휴양시설에 경보 발령)

○ 점검 및 조치

일상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기관 : 해당 시설 관리주체 직접 수행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 주기 : 우기 전 년 1회 실시 - 점검사항 :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시스템」의 정밀조사 지역에 대해 육안으로 위험요소 점검 - 이상 발견 시 조치사항 : 배수시설 정비 등 단순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산사태 등 주요 사항 발생 시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점검 실시
초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기관 : 전문기관 - 주기 :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시스템」에 따라 유지관리 사업이 실시된 후 차년도에 1회 실시, 긴급점검 실시 시 생략 가능 - 점검사항 : 정밀실태조사 항목 및 유지관리 사업이 실시된 시설물 중심으로 위험여부를 재점검 후 필요시 대책방안 제시 - 이상 발견 시 조치사항 : 대책방안에 따라 보수 및 보강 실시
정기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기관 : 전문기관 - 주기 : 초기점검 후 매 3년마다 1회 실시, 긴급점검 실시 시 생략 가능 - 점검사항 : 정밀실태조사 항목 및 유지관리 사업, 초기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여부를 재점검 후 필요시 대책방안 제시 - 이상 발견 시 조치사항 : 대책방안에 따라 보수 및 보강 실시
긴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기관 : 전문기관 - 주기 : 일상점검, 초기점검, 정기점검과 상관없이 관리주체의 필요 또는 산사태, 산불 등 재해 발생 시 실시 - 점검사항 : 정밀실태조사 및 각종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위험도, 피해도 파악 및 대책방안 제시 - 이상 발견 시 조치사항 : 대책방안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실시

정밀실태조사 수행 전문가 자격기준

항 목	필 요 전 문 성	자 격 및 경 력 기 준
1. 과업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보유 - 해당 시설물과 인근 영향범위에 대한 위험 및 피해를 종합적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림기술사로서 복합재해와 관련된 분야 과업책임자 경력 보유자 1인
2.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휴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반 및 지질재해(산사태 및 토석류, 낙석, 지반침하)의 가능성에 대한 조사 및 평가 기술 - 산림휴양시설 인근 유역에 대한 지표지질조사, 지반조사, 모니터링 기술 - 휴양시설 주변에 위치한 절토사면, 성토사면,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시뮬레이션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조사와 관련된 사업 유경험자로서 응용지질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인 이상
3. 휴양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휴양림 설계 및 시공 등과 관련된 지식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휴양림 관련 사업 유경험자로서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4. 산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소화시설 등 산불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소화시설 설계 및 조성 관련 유경험자로서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5. 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휴양시설 내에 존재하는 구조물(터널 및 교량, 건축물, 수리 등)에 대한 안전점검 기술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등 터널 및 교량, 건축, 수리, 정밀안전진단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사립자연휴양림 등 용자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1. 목 적

- 증가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을 조성·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 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0조

3. 사업대상자

- 자연휴양림 또는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조성하려고 하는 자로서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조성 승인을 받은 자

4.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권자 : 관할 산림조합장
 - 사업계획 심사 :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사업수행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5. 사용용도 및 범위

-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 조성·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 운영자금 : 시설 유지보수, 관리인 인건비 소요액, 집기류(가구, 침구 등) 구입

6. 대출의 시기

- 자부담 우선집행 후 잔액 사전 용자(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증거서류 확인)

7. 지원대상 및 형태

-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 조성·운영(시설 보완,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단위 : %, 년)

사업명	금리	용 자 기 간			용자한도	용자비율
		계	거치	상환		
자연휴양림 · 숲속야영장	고정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20년	10년	10년	1개소당 4억원 이내	- 설계금액의 80% 이내 (신규조성) - 소요자금의 80% 이내 (보완사업,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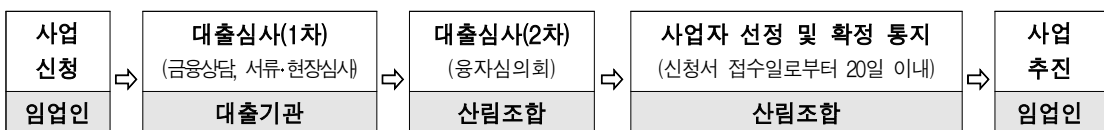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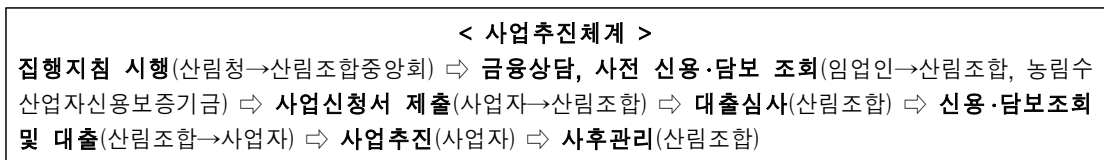
-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의 고정금리 적용
-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 대출시기 : 사후용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8. 사후관리

- 사후관리책임자 : 관할 산림조합장
- 사후관리 내용
 - 용자시설에 대하여는 지원계획 대 실적을 현지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
 - 용자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실태를 확인하여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에 따라 조치
 - 산림조합장은 지원한 용자사업의 계획 집행사항을 수시로 확인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는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9.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방침
 - 산 립 청: 지침시달, 자금배정
 - 산림조합: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사업추진 체계도



참고 6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 캠페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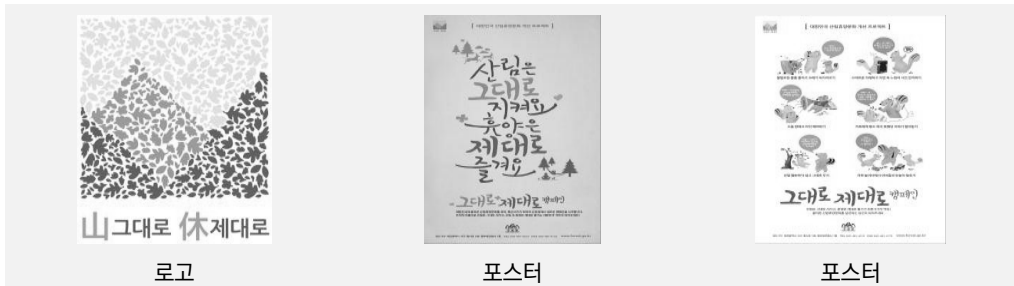
- 목 적 : 올바른 산행 및 산림휴양문화 정착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산림휴양시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캠페인 추진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6대수칙

- ① 불필요한 물품 줄이고 쓰레기 되 가져 오기
- ② 스마트폰 자제하고 자연 속 느낌의 시간 만끽하기
- ③ 소음 없애고 타인배려하기
- ④ 가족에게 평소 하지 못했던 이야기 털어놓기
- ⑤ 산림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
- ⑥ 자연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눈높이 맞추기

□ 추진사례

-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 알리기 : 산림청 및 전국 지자체
 - 로고 및 포스터 개발·보급, 홍보물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
 - 포스터, 볼펜·수첩·파일홀더, 우산, 컵 등



- 대국민 서명운동 및 숲속콘서트 개최
 - 현장서명 : 국립 및 전국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 온라인 서명운동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 숲속 콘서트 개최



서명운동



서명운동



숲 콘서트

○ 온·오프라인 노출 및 애니메이션 제작 및 송출

- 언론 홍보: 주요일간지 등
- 애니메이션제작 및 공중파 송출

신문기고



애니메이션 송출



□ 추진계획

-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알리기 지속 추진
 - 산림청 홍보대사 등과 함께하는 중앙단위 대규모 캠페인 전개 (서울역 광장 등)
 - 기 제작된 애니메이션 송출과 함께 이슈패러디 영상제작을 통해 온라인 (SNS) 확산 유도
 -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실천 사생대회 및 글짓기 대회 개최
 - TV 교양 프로그램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추진
- “그대로 제대로 캠페인”실천운동 추진
 - 휴대폰, IT 기기없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세트(웃놀이 공기 등) 및 카드보드게임 제작 보급

1. 행정사항

- 공·사유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상황 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유 자연휴양림(산림욕장) 조성 계획 승인 후 10일 이내 산림청장에게 승인상황을 보고<서식1-1, 1-2>
- 국립자연휴양림 보완시설계획 승인신청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보완사업계획 수립 또는 변경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완시설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서식2>
-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속야영장) 조성 결과보고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은 관할 구역 내 자연휴양림(사유자연휴양림 포함)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이 완료된 경우 준공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서식3>
- 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사업 추진상황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은 관할 구역 내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의 조성 및 보완사업 추진상황을 매분기말 10일 이내 산림청장에게 보고<서식4>
- 자연휴양림 통계(가동률, 수지현황, 이용실적)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은 관할지역 내 자연휴양림(사유자연휴양림 포함)의 가동률, 수지현황, 이용실적 등 통계 자료를 매분기 말 30일 이내 산림청장에게 보고<서식5-1, 5-2, 5-3>
- 그 외 자연휴양림 지정신청 및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 신청 등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름

2. 보고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유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상황 보고 	수 시	승 인 후 10일 이내	서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유 자연휴양림 보완시설 계획 승인신청 	즉 보	발생 즉시	서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휴양림(산림욕장·숲속야영장) 조성 결과 보고서 	즉 보	준공 즉시	서식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휴양림 가동률 	분 기 보	분 기 말 30일 이내	서식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휴양림 수지현황 	분 기 보	분 기 말 3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휴양림 이용실적 	분 기 보	분 기 말 30일 이내	

〈서식 1-1〉

공 · 사유 자연휴양림(산림욕장 ·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상황 보고

☉ 명 칭 :

☉ 위 치 :

☉ 면 적 : ha

☉ 임야소유자 :

☉ 조 성 자 :

☉ 승인일자 :

☉ 조성기간 :

☉ 총투자계획 : 백만원

계	기투자	2017	이후

- ※ 붙임 : 1. 시설승인내역 〈서식 1-2〉
2. 산지전용면적 내역 〈서식 1-3〉

시 설 승 인 내 역

시설명	단위	승 인 내 역									
		기본계획(종합설계)			연 차 별 계 획						
		규모	수량	금액	기 시 설		2017			2018 이후	
					규모	수량	규모	수량	금액	규모	수량

〈서식 1-3〉

자연휴양림 조성(신규·보완) 산지전용면적 내역

시설물명	단위	기본 계획 상				승 인 신 청			
		규모	수량	조성내역		규모	수량	조성내역	
				산지전용면적	건축면적			산지전용면적	건축면적

<서식 2>

국유 자연휴양림 보완시설계획 승인신청서

☸ 자연휴양림 명칭 :

☸ 위 치 : 도(시) 군(시·구) 면(읍) 리 (번지)

☸ 구 역 면 적 : ha (소유구분 :)

☸ 예 산 액 : 천원(재 원 별 :)

(단위 : 천원)

시설명	단위	기본계획상		기 시 설		2017 보완계획		
		규모	수량	규모	수량	규모	수량	금액

※ 첨부 : 1. 시설물 종합배치도(2016 보완계획시설은 다른 색깔로 표시)
 2. 산림형질변경면적내역(국유림 조성계획승인 붙임 서식 1-3 참조)

<서식 3>

자연휴양림(산림욕장, 숲속야영장) 조성 결과보고서

☞ 명 칭 :

☞ 위 치 : 도(시) 군(시·구) 면(읍) 리 (번지)

☞ 구 역 면 적 : ha (소유구분 :)

☞ 예 산 액 : 천원(재 원 별 :)

(단위 : 천원)

시설명	단위	계 획			실 적			비 고
		규 모 (규격)	수 량	금 액	규 모 (규격)	수 량	금 액	

<서식 4>

자연휴양림 가동률

○년 ○분기

<단위 : 동·실, %>

기관	휴양림명	가동가능수량			실제 가동률(동·실)			가동률 (D/A) *100	주말·주중 가동률		운영 동·실수			비고
		계 A	주말 B	주중 C	계 D	주말 E	주중 F		주말 (E/B) *100	주중 (F/C) *100	소계 (동·실)	숲속 의집 (동)	휴양관 (실)	

※ 주말(금, 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 주중(주말을 제외한 요일)

자연휴양림 수지현황

○년 ○분기

<단위 : 천원, 명>

기관	휴양림명	수입금(A)			지출금(B)			차액 (A-B)	관 리 인 력					
		계	주말	주중	계	인건비	제세공과금 &기타경비		계	공무원	청원직	공익	일용직	

※ 수입금 : 입장료 + 시설사용료 + 기타 수입금

※ 지출금 : 인건비 + 운영비

1. 인건비 = 정규직 + 청원산림보호직 + 일용·관리직 급여(순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제외)
2. 운영비 : 차량·선박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재료비,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추진비, 청소용역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오수처리용역비, 각종 보험료 등

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시설사용료 현황

○년 ○분기

<단위 : 천원, 명>

기관	휴양림	이용객수				수입액 합계 (A+B+C)	입장료 (A)	체험료 (B)	시 설 사 용 료(C)								
		소계	유료	무료	숙박 이용객				소계	숙박 시설	오토 캠핑장	야영장	주차장	썰매장	숲속 수련장	학습원	기타
	합계																

※ 이용객 : 유료 + 무료 + 숙박이용객

1. 유료 : 입장료를 지불하고 시설물(야영테크, 수영장, 썰매장 등) 이용시 금액을 지급한 자
2. 무료 :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하는 자
3. 숙박이용객 : 숙박을 위하여 숙박시설을 이용한 자(야영테크 포함)

※ 수입액 : 입장료 + 시설사용료

1. 시설사용료 : 숙박시설 + 오토캠핑장 + 야영장 + 주차장 + 썰매장 + 숲속수련장 + 학습원 + 기타
2. 기타 : 위약금 + 기타수익 - (결재대행 수수료+공문접수 환불금+마일리지 결제금)



숲길 조성

목 표

- ▶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에 따라 역사와 문화가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관리
- ▶ 산림생태체험 및 관찰,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등 숲길의 종류와 목적에 맞는 지역별 숲길 조성
 - 트레킹길 조성 : 20km, 497백만원

가. 정책여건

-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보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산림생태·문화·역사를 연계할 수 있는 숲길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고령화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걷기에 대한 수요 증가와 산행인구 및 참여계층의 다양화로 레저스포츠, 탐방, 휴양·치유 등 목적에 맞는 숲길조성 요구
-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한 숲길 이용의 활성화 전망
- 낙후된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숲길 수요 증대

나. 기본방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및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에 따라 숲길 조성
- 숲길 및 숲길 주변의 환경 보전과 숲길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숲길네트워크 구축 및 시설물 설치 등 쾌적한 숲길환경 조성

- 숲길 종류별 노선선정 및 조성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며, 향후 운영·관리방안 마련 추진
- 숲길 노선의 수평적 선형을 유도하여 보행활동에 제약을 가진 이용객에게도 산림휴양의 공익적 기능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

다. 세부추진계획

- 5대 트레일 및 5개 둘레길, 2개 이상 시·도 및 3개 이상 시·군·구에 걸치는 숲길 등을 중심으로 구축·관리
 - 조성계획 : ('19까지) 1,728 → ('20) 20 → ('21까지) 5,595km
-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고, 숲길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운영·관리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담당자의 업무역량 제고 및 숲길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 추진
 - 안내시설에는 사업명칭과 산림청 로고를 반드시 표시

1) 트레킹길 조성

- 트레킹길의 일관된 정보제공 및 연결을 위해 기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기본계획에 따라 노선 선정·조성 및 동일한 안내체계 적용
 - DMZ편치불둘레길, 백두대간트레일, 낙동정맥트레일, 낙동강풍경트레일, 남도오백리역사숲길, 속리산둘레길, 한라산둘레길은 기본계획에 의한 노선을 기본으로 기 조성된 숲길과 연결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거점 지역별 안내센터 설치, 고유 CI 및 안내체계 구축 등 운영·관리방안 마련 추진
-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안내시설 설치
 - 안내시설에는 사업명칭과 산림청 로고를 반드시 표시
 - 민원요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시설물은 적정하게 반영 설치 하되 과다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설계심의회 등 강화

- 타 부처 또는 각 지자체에서 조성하고 있는 ‘걷는 길’과 중복 노선 배제
 - 타 부처(지자체)에서 산림을 통과하는 걷는 길 조성을 위한 토지사용 협의 등 의견 요청시 숲길 노선을 반드시 확인
- DMZ트레일 시범운영 및 지역숲길과 연계 추진
 - 다양한 계층,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운영방안 마련
 - * 시범운영 : 5월~10월, 가이드탐방제(1회 20명 내외)
 - '19년 DMZ트레일 시범사업지와 DMZ펀치볼둘레길 연결사업 추진
 - * (위치) 강원도 인제 고성구간 / (사업량) 국유림 내 10km / (사업비) 248백만원 / (시행주체) 국가직접

< 국가트레킹길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현황 >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연도	수립기관
○ DMZ트레일 조성 기본구상	2010	동국대
○ 낙동정맥트레일 기본노선 조사보고서 및 낙동정맥 CI 개발	2011	경북
○ 백두대간트레일 기본계획	2012	(사)백두대간숲연구소
○ 서부종단·남부횡단트레일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2012	(사)한국문화관광연구소
○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 조성 기본설계	2012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경북)
○ 평창올림픽트레일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2012	강원대
○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	2013	숲산사 산림기술사사무소(전남)
○ 속리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013	산림조합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
○ 팔공산둘레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2015	대구

2) 산림레포츠길 조성

- 레저스포츠의 종목은 산림 내에서 국민적 여가수요에 부응하면서도 인위적인 산림훼손이나 이용자에 의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산악승마, 산악스키 등 무동력 종목으로 한정

- 신규 노선보다는 기존의 임도시설을 활용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다른 숲길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이용 및 운영·관리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조성
 - 신규조성 시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시설물은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설치·운영
 - 레저스포츠길 이용자와 다른 숲길 이용자와의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다른 숲길과 분리하여 활용하고, 반드시 운영·관리방안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
- 레저스포츠 종목 중 일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서 요구되는 안전시설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을 경우 관련 협회와 협의 후 안전시설 설치
- 레저스포츠의 종목별로 숲길 명칭을 지정·고시하여 이용에 따른 혼란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3의3에 산림레포츠의 종류 및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동 시설여부 검토 후 사업진행 필요

3) 탐방로 조성

- 탐방로의 특성상 기존 길과의 연결을 통해 탐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규 노선의 선정을 지양하고 특정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임도, 농로, 마을길과 생활길, 옛길 등을 활용하여 조성
- 보전적 활용원칙에 부합되도록 노선을 선정하고 탐방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대상물과 사건 등을 연결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탐방로 조성 및 운영·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교육·학습프로그램 개발 필요

4) 휴양·치유숲길 조성

- 휴양·치유숲길 이용자는 사회적 약자 및 일반인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편적으로 조성

-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는 신규노선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노선 선정
- 숲이 지닌 휴양의 기능과 보건의학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휴양 및 치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성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림문화·휴양 :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 산림치유 :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5) 국가숲길 지정 등 제도 운영 기반 조성

- 국가숲길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마련
 - 국가숲길, 숲길 타당성평가, 예약탐방제 등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백두대간 마루금등산로(산림청 소관 420km)를 국가숲길로 우선 지정하고, 지리산둘레길 등으로 확대 지정 추진
 - * (지정신청) 숲길관리청 → 검토(산림청) → 협의(지자체) → 심의·결정(산림복지심의위원회) → 지정·고시(산림청)
- 국가숲길 지정에 따른 운영 활성화 연구 및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 국가숲길 정책 홍보로 숲길정책 대국민 인식 제고
 - * 전문가 토론회 및 보도자료 배포, 기획홍보, SNS 등 홍보
- 무분별한 숲길조성 사전 방지 및 숲길 품질향상을 위한 타당성 평가제 시행
 - 2020. 6월부터 숲길 신규노선에 대한 적정성 평가 대비 평가기준 마련

라. 추진일정

- 2020년도 숲길등산정책 사업계획 수립·배부 : 2020. 1월
- 숲길 실태조사 : 연중

- 숲길조성사업 월별 예산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 숲길 걷기행사 : 2020. 상·하반기
- 숲길 현장모니터링 : 2020. 6월·11월
- 숲길조성사업 완료 : 2020. 하반기
- 숲길의 조성·관리 연차별계획 수립·제출 : 2020.12.31.까지
- 2020년도 숲길조성사업 완료보고 : 2021. 1월

< 붙임 >

2020년도 트레킹길 등 숲길 조성사업 내역

□ 트레킹길

(단위 : km, 백만원)

숲길 관리청	사업량	예 산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국가	20.0	497	497	-	지원 1700-1731-302
북부	10.0	248	248	-	인제
동부	4.0	99	99	-	양양
남부	2.0	50	50	-	영주, 양산
중부	2.0	50	50	-	보은
제주	2.0	50	50	-	제주

* 숲길조성(국가) : 1700-1731-302(균특-지원)

(단위 : km, 천원)

숲길관리청		구분	개 소	사업량	예 산 내 역				
지방청	관리소				계	설계비 (420-02)	시설비 (420-03)	감리비 (420-04)	부대비 (420-05)
합계				20.0	497,191	26,835	446,720	15,010	8,626
북부	인제	DMZ 트레일	강원 인제 서화 서화 산 1 외	10.0	248,378	13,299	223,360	7,504	4,215
동부		DMZ 트레일	강원 고성 간성 진부 산-2외 1	4.0	99,225	5,414	89,344	3,002	1,465
			소계	2.0	49,864	2,708	44,672	1,502	982
남부	영주		경북 영주 가흥동 산8-3	1.0	24,932	1,354	22,336	751	491
	양산		경남 김해 대청 산 64-1	1.0	24,932	1,354	22,336	751	491
중부	보은		충북 청중 상당 원 로 산47-1	2.0	49,862	2,707	44,672	1,501	982
제주	제주	한라산 둘레길	제주. 제주·서귀포	2.0	49,862	2,707	44,672	1,501	982

□ 숲길안내센터(국가) : 1700-1731-302(균특-지원)

(단위 : 개소, 천원)

숲길 관리청	구분	개 소	사업량	예 산 내 역					
				계	설계비 (420-02)	시설비 (420-03)	감리비 (420-04)	부대비 (420-05)	
계				1	400,000	42,000	730,000	20,000	8,000
북부	안내센터	백두대간트레일		1	400,000	20,216	361,000	15,884	2,900

숲길등산정책사업 월별 추진실적 보고

(단위 : 개소, km, 천원)

시·도	시군구	사업명	소재지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사업 기간	비고 (추진상황)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엑셀>로 작성												

※ 사업명은 트레킹길, 레저스포츠클럽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산로로 구분하여 작성

< 서식 2 >

숲길 조성사업 완료 보고

사업명 : ○○○ 조성사업

위치 :

* 1/25,000 위치도, 노선도 등

노선 지정·고시 내역

○ 노선 :

○ 지정·고시 일자 및 매체 :

○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 :

사업량 : km 또는 개소

○ 제1구간 : * 구간이 나뉘어질 경우 표시

○ 제2구간

사업비 : 천원(국비 , 지방비)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사업 조성전·후 비교사진, 구간별 사진 등 첨부

○ 숲길명 :

* 전체 구간 중 숲속을 통과하는 노선 거리 : km

○ 숲길안내센터 :

○ 기타 편의시설 :

□ 숲길 운영·관리 계획

○ 운영·관리 개요

- 운영방법 : 직영, 기관내 다른 부서 운영, 민간위탁 등
- 숲길안내센터 유무 : * 위치, 운영인원 등
- 개통식 개최 여부 :
 - * 개통식 개최 계획 또는 기 개최했을 경우 일자 기입
- 홈페이지 : * 또는 연계 홈페이지 기재
- 운영주체 연락처 :

○ 숲길 구간정보

- (총괄 또는 구간별) 산림 및 역사·문화자원 등 * 필요시 별첨
- 구간 내 편의·휴게시설 현황 등
- 대중교통 접근정보 등 * 각 구간별 접근방법 기재 요망

○ 숲길 안내사인

- 로고, 이정표 시안 등 (jpg 파일)

○ 프로그램 운영계획

- 정기적 걷기 행사
 - 예) 지리산둘레길의 '걷기 축제'(매년 10월~11월중)
- 숲길 내 산림 및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 예) 금강소나무숲길의 '명사와 함께하는 숲길 탐방'
- 일시적 개통 행사 등

□ 기타 참고사항(특기사항 및 언론보도 등)

- 특기사항 및 언론보도 등
- 우수사례



숲길 운영·관리

목 표

- ▶ 숲길의 이용 및 안전·편의가 증진되도록 숲길 운영·관리
 - 트레킹길 민간위탁 : 7개소, 1,553백만원

가. 정책여건

-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확대와 함께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체제형·체험형 중심의 다양한 산행수요 발생
- 올바른 산행문화의 정착을 통해 이용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하고 숲길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관리 필요성 대두
- 여성, 노약자 등도 안전하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요구
- 각종 재해로 인하여 예기치 않게 발생하거나 산행요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산행객들의 산악사고 증가에 따른 예방 및 구조 필요
 - 산악사고 구조건수 : ('15) 10,310건 → ('16) 9,134건 → ('17) 9,682건 → ('18) 9,502건

나. 기본방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운영·관리 도모
- 숲길 운영·관리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적 이해와 지지기반 확보
- 지속적인 숲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운영·관리 철저
- 각종 안내판 및 홍보물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산림청 로고 사용
- 산악구조 활동의 민·관 공조체계 유지 및 산악사고 신속 대응

다. 세부추진계획

(1) 숲길 운영·관리 일반

1)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이용자 안내 방안, 지역연계 방안, 노선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는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이용자 안내 방안 >

- 이정표, 노면 상태 등 이용자 안전 관련 점검방안 마련
- 구간별 산행 집중화로 인한 생태계 피해 방지를 위해 경관, 자원, 상대적 난이도 등 이용등급 구분을 활용한 이용자 분산 프로그램 마련
- 소외계층, 장애인, 단체, 개인 등 숲길이용 특성에 따라 다양한 안내 서비스 제공 및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 숲길안내센터 설치 및 지역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 지역연계 방안 >

- ‘지역에 필요한 숲길 조성’이 숲길의 기본 조성 원칙
-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조성 초기부터 협력 추진
- 숲길과 지역이 연계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은 지역의 자립적 기반과 자존감, 외지 이용자에게 대한 배려 등 전통공동체성 복원

< 노선 운영·관리 방안 >

- 숲길의 노면 상태, 안내판, 이용자 반응, 주민 의견수렴 반영
- 안내프로그램의 균등화를 위한 내부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숲길 구간별 특이성을 구별 할 수 있는 통합 숲길 설명서 비치
- 장거리 숲길의 경우 사후 통합 홍보·관리 방안 제시
- 사업계획 단계부터 향후 운영·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
- 숲길의 운영·관리를 위해 숲길관리청, 지역시민단체, 관련법인 및 지역 주민 등과의 통합적인 관리·운영체계 구축

2) 숲길의 운영·관리 방안

○ 정기 업무

- 돌횡배수대, 돌수로, 이정표 및 안내시설 등 상시 모니터링
- 이용자와 주민의 이용에 위험하거나 민원 발생 시 대체노선 조사
- 풀베기, 이정표 정비, 배수로 이물질 제거, 샛길 정비, 각종 장애물 제거 등 일반 정비 추진
- 정비업무 수행 시 위험 표지 간이 알림판, 현수막 등 설치
- 숲길안내센터, 홈페이지 및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 숲길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숲길 이용현황 파악 및 만족도 조사

○ 비정기 업무

- 노면·시설물 등이 훼손되어 불편과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복구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숲길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숲길 홈페이지 및 게시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공지
-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발생 후 숲길 전 구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조사 및 간단한 보수 실시(단, 피해 규모가 커서 인력, 예산이 필요할 경우 별도 대책 마련)
- 숲길에서 안전사고에 의한 부상, 상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한 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숲길 정화활동 및 취약지역 순찰 등 실시
- 숲길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 숲길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숲길별 운영·관리매뉴얼 작성·운영

- *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산림청, 2016년)」 및 「숲길 운영·관리 매뉴얼(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015년)」을 참고하여 숲길별 자체 실정에 맞는 운영·관리매뉴얼 작성

3) 지역문화와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숲길이용 문화 정착

- 숲길 이용과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숲길 홍보를 위한 구간별 스토리텔링 개발 운영

- 숲길등산지도사 등이 이용객과 함께 숲길에 대한 이야깃거리를 재미 있게 안내하여 숲길 주변의 역사성 재조명

4)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효율적인 운영

- 숲길 휴식년제 및 휴식기간제 운영
 -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반인의 출입 제한·금지 기준 마련 추진
 - * 산불조심기간, 동절기 등 산림재해 및 각종 사고 등에 대비한 숲길의 일시적 이용통제
 -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숲길의 명칭, 휴식기간, 실시 목적,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등 사전 고시
 - 휴식년(기간)제 실시구간에 대한 온·오프라인 안내·홍보 강화, 숲길 입구에 금지사항과 주의사항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 휴식년제와 휴식기간제 >

구 분	휴식년제	휴식기간제
정 의	일정기간 출입 제한 또는 금지	탄력적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지정/기간	숲길관리청/연(年)단위	숲길관리청/기간을 정함

- 숲길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일시적 이용 통제
 - 집중호우, 풍수해,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안전상 숲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치안사고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산림사업 실행 등 안전상 통제가 필요한 경우
 - 통제 기준, 절차, 안내 방법 등 제반 기준 마련

(2) 트레킹길 민간위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조성된 트레킹길을 보전하고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도록 이용 및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민간위탁 추진

< 운영·관리 위탁 주요내용 >

주요내용	세부내역
트레킹길의 상시 점검 및 유지·보수	○ 각종 재해 조사·보고 및 소규모 복구, 노면 배수로 정비, 풀베기, 안내판 정비·설치, 기타 시설물 정비 등
숲길안내센터 운영·관리	○ 트레킹길 이용정보 및 편의시설 등 제공 ○ 트레킹길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산행 및 안전교육 ○ 트레킹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추진 ○ 홈페이지 운영, 예약제 운영(필요시) ○ 각종 재해대비 숲길의 일시 이용중지 안내 ○ 트레킹길 관련 협의체 운영(정기, 수시)
트레킹길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연 1회 이상 숲길 걷기행사 개최 ○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교류 도모 ○ 청소년과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소외계층을 배려하는 프로그램 상시 운영
트레킹길 모니터링	○ 트레킹길 유지·보수 모니터링, 운영·관리 실태조사 ○ 트레킹길 이용현황 파악 및 이용객 만족도 조사 ○ 트레킹길에 대한 이용자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지역주민·이용자의 민원 및 애로사항 해소 등 ○ 트레킹길 노면 및 주변환경, 불필요한 셋길 등의 분기, 시설물 노후화, 위험요소 등 정기·수시 점검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 실시
- 트레킹길 운영·관리 수탁자는 성실히 위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예산 집행
- 특히, 폭우·폭설 및 산불 등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위탁기관에 대책을 보고하고 협의하여 응급조치 추진
- 트레킹길 운영·관리 지원내역

<국가>

(단위 : km, 백만원, 개소)

숲길명	기관	거리	예산	숲길안내센터	지원형태
계	7	712	1,553	16	
백두대간트레일	인제관리소	113	141	1	직접
백두대간트레일	홍천관리소	44	97	1	직접
DMZ편치불둘레길	양구관리소	73	158	1	직접
백두대간트레일	평창관리소	60	200	1	직접
금강소나무숲길	울진관리소	76	215	1	직접
지리산둘레길	서부지방청	295	428	9	직접
한라산둘레길	제주도	51	314	2	위탁

(3) 숲길 안전관리 대책

1) 숲길의 안전관리 점검과 병행한 실태조사 추진

-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 추진
 - 숲길의 노선, 위치 및 거리,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및 이용객 수 등 숲길 이용정보 및 관리상태 조사
 - 이정표, 안내판, 편의시설, 대피소, CCTV 등 설치 현황 및 난청 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 조사(지점별 공간좌표를 취득하여 관리)
 - 숲길실태조사 자료 관리대장 기록화
-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안전관리 보완조치
 - 안전 및 편의시설 추가 소요량 파악, 정비
 - 특히 난청 등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 이용자 정보 제공 및 정기적인 순찰활동 추진 * 이동통신사 협조 요청

2)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숲길관리청 및 숲길안내센터를 중심으로 이용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및 지역숲길 단체와의 비상연락망 구축(야간에는 숲길관리청 당직실과 연결)
 - 지역 숲길별(시·군 단위) 비상연락 체계도 작성
- 이용자가 응급 구조 요청 가능한 비상연락 체계 구축·운영
 - 지역숲길을 관리하고 있는 숲길 단체 및 숲길관리청 홈페이지에 비상연락 체계 게시
 - 국민의 인지도가 높은 119상황실과 산악사고 구조 협력체계 유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대상 홍보
 - 산림청 홈페이지 및 숲길 관련 사이트에 '산행 안전수칙(안)'을 참조하여 작성 게재
 - 주요 숲길 출입구에 산행 안전수칙 등 현수막 및 안내판 설치
 - 건전한 숲길문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 추진

3) 현장 중심의 순찰강화 및 안전시설물 확충

- 숲길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강구
 - 숲길관리청은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이용자 정보제공 및 안전조치 사항 기록 유지
 -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재해모니터링 인력 등을 활용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활동 계획 수립 추진
 -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산림보호협회 등 자원봉사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한 산림정화 활동을 병행한 정기 순찰 실시
 - 거점 마을별 자율방범조직 구성 운영
 - 조끼, 모자 등 지원, 정기 교육, 합동 캠페인 계획 마련
- CCTV, 이정표 및 안내판 등 숲길 안전·편의시설 보수·확충
 -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안전관리 시설 현황 자료에 따라 유지·보수 및 추가 설치 계획 마련
 - 숲길주변에 설치된 목교, 안전난간, 돌담 등에 추락, 붕괴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 등에는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 숲길 노선이 통과하는 마을에 설치된 방범용 CCTV의 실태를 조사하고 숲길 안전관리용으로 병행 활용 방안 마련
 - 신규 CCTV 설치는 범죄발생 우려지역, 마을안길 통과 노선, 숲길 안내센터 통과 노선 등에 우선 설치하되 설치비, 유지관리비, 훼손 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선정
 - * 숲길 및 등산로 주변 CCTV 1,423대 운영('19년 7월 기준)
- 국가지점번호 제도 도입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등산로, 트레킹길에 설치된 안내판, 이정표 등에 국가지점번호 부여 및 번호판 설치
 - 기 조성된 등산로, 트레킹길 중 안전사고 빈발지역, 조난우려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신규 숲길조성 사업지는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4) 산악구조대 운영

1) 산림항공구조대 운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운영
 - 인 원 : 12개대 49명(산림항공본부 및 항공관리소)
 - 운영헬기 : 31대
 - 구조장비 : 호이스트, 무선통신헬멧, 그라플 시스템, 조이스틱 등
 - * 산림항공본부 : 산림항공구조대(공중), 숲길관리청 : 산행안전지원대(지상)
- 산악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및 119구조 활동 지원
 - 봄·가을 산행활동 증가로 산악사고가 빈발하고, 기상이변 등 대형 재난·재해도 국가차원에서 대응·지원할 수 있는 인명구조 체계 유지
 - 닥터헬기, 소방헬기 등으로 조기 인명구조가 불가능한 산악사고 현장은 산림항공구조 헬기로 적극적인 구조 협조
- 산림항공구조대(산림항공본부) 운영 및 교육 강화
 -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규정」에 따른 항공구조대 운영계획 수립
 -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1회 이상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 산악구조대원반 교육 수행(수요 제출)
 - 숲길 이용자가 집중되는 봄·가을철 및 공휴일·주말 등 산악구조 대응 및 상황유지 철저
 - 지방산림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산악사고 대응

2) 민간산악구조 활동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민·관 합동 구조체계 구축
 - (사)대한산악구조협회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정책방향 공유
 - 구조협회 : 1본부 17개 시·도 연맹 소속 민간구조대 운영(약 700명)
 -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로 신속한 산악사고 신속 대처

- 제10회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 추진
 -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를 통한 산악구조의 기술교류 및 격려
 - 항공본부와 구조협회가 협의를 통해 장소 선정·제출

3) 산악구조 활동의 실적관리 및 홍보강화

- 산악구조 활동의 통계자료 구축
 - 산림항공구조대 활동 실적 및 민간구조대의 실적관리 강화
- 언론사, 산악단체 등과 연계한 산악구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민·관 산악구조 경진대회와 산행안전지원대 협력 활동 등
- 산악구조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및 수범사례 홍보
- 숲길관리청별 산행안전지원대 운영 등에 대한 홍보 강화

라. 추진일정

< 트레킹길 민간위탁 >

- 트레킹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계약 체결 : 2020. 1분기
- 트레킹길별 실무협의회 개최 : 분기별 또는 반기별
- 트레킹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위탁기관→지방청)
 - 상반기 : 2020. 7. 30.까지
 - 2020년도 총괄 실적보고서 : 완료계 제출받은 후 10일 이내
- 트레킹길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 모니터링 : 연중

< 숲길 안전관리 대책 >

- 숲길 안전관리대책 수립·운영 : 연중
- 숲길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안전 인프라 구축 : 수시
- 숲길 비상연락망 구축·정비 : 수시
- 숲길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안전취약지역 순찰 : 수시
- 숲길 휴식기간제 및 휴식년제 운영 : 필요시\

< 산악구조대 운영 >

- o 산악구조대 운영 : 연중
- o 산림항공구조대 운영계획 및 전년도 실적 제출 : 2020. 1월
- o 제11회 민·관 산악구조 경진대회 개최 : 2020. 9월중

< 붙임 >

숲길 운영·관리 정기적 점검사항

일/1회 점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길 안내센터 이용 현황- 안내책자 및 홍보물 비치 현황- 숲길 안내센터 보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길 안내센터 청소 및 시설물 점검- 숲길 이용자 의견 수렴
---	--

주/1회 점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길 안내센터 내 소화기 및 소방시설 점검- 응급치료 및 구급함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길 안내시설 점검- 숲길 안전시설 점검- 숲길의 노면상태 점검
---	---

1개월/1회 점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숲길 주변의 사면안정시설물에 대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길의 위험요소에 대한 점검- 숲길 배수시설에 대한 점검- 숲길 안내센터 보안관리
--	---

1분기(4개월)/1회 점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길운영위원회 등 개최·운영- 편의시설물의 운영 현황 점검-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숲길 노선의 분기 등 훼손구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캠페인 추진- 숲길 근무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

1년/1회 점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내센터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숲길 이용현황 및 여건 파악- 숲길 주변 교통시설에 대한 현황 조사
--	---

장마철 및 동절기 점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숲길 배수시설 점검- 숲길 침수피해 및 풍도목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마철 및 해빙기 숲길 노면 점검- 이용자 이용통제 여부 파악
---	---

< 서식 1 >

숲길 유지·보수 모니터링 야장

□ 노선명 : ~ 구간(km)

관측지점	좌표또는 측 점	조사일		조사자	
사진 및 스케치			사진 및 스케치		
조 사 내 용					
모니터링 결과					
조치 계획					
정비 방향 (조사자 의견)					

< 서식 2 >

숲길 유지·보수 현장 작업 보고서

날짜		지역		성명	
지도 번호			작업 위치		
작업 내용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 서식 3 >

민원 접수·완료 보고서

접수날짜		완료날짜	
민원인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민원완료내용

< 서식 4 >

숲길 실태조사 관리대장

- 숲길명 :
- 거 리 :
- 위 치 :
- 조사일 :
- 조사자 :

노선명 (구간)	거리 (km)	접근 방법	이용도	이용 등급	정비 등급	시설물				안전취 약지	정비 내용	비고
						안내판	이정표	안전 및 편의시설	CCTV			
인월 ~ 금계	19.3	인월 안내 센터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매우 높음 (연간 이용 자수 : 천명)	1~3 등급	0~6 등급	0개	00개	00개 (구조 위치 시설물 별도 기재)	0개	좌표 및 구간 0 km 지점 등 으로 표시	시설물 및 노면 보수,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 소요량 기재	

* 이용등급 :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이용등급기준 참조(p.34)
 * 정비등급 :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등급판정기준 참조(p.35)

< 서식 5 >

○○○○년 산악구조 실적

기관명 :

구 분	계	월별 구조실적						비고
		1월	2월	-	-	-	12월	
산악구조건수(건)								
구 조 인 원 (명)								
- 조난자/실종								
- 외상(찰과상, 골절)								
- 뇌질환								
- 심장질환								
- 내과(당뇨/혈압)								
- 탈진(저체온)								
- 의식없음(사망추정)								
- 기타								

* 기존 엑셀 보고서식 활용 가능

구조 우수사례 제출

- 사진 제출 : 사진 2~3매 제출
- 홍보 실적 : 신문, 방송 등 우수사례 사본 제출

산행 안전수칙(예시)

1. 산행하기 전에 날씨 등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라
 2. 계획에 알맞은 장비, 의복, 식량을 준비하고 체온유지에 최대한 신경을 쓰라
 3. 특히 노약자, 여자, 어린이 등은 가능한 나홀로 산행을 자제하고, 동행할 경우 일행 중 가장 처지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하라
 4.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하고 해지기 1시간 전에 마쳐야 하며, 오후 6시 (동절기 5시) 이후의 산행이 불가피한 경우 숲길안내센터, 경찰서 등에 사전 신고하라
 5. 하루의 산행은 8시간 이내로 하고 체력의 3할은 항상 비축하라
 6. 짐은 적게 하고 손에 물건을 들지 말라
 7. 지정된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
 8. 산행 중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먹어라
 9. 지도 및 안내리플릿을 휴대하고 수시로 위치를 확인하고, 조난 시 조난 구조용 스마트폰 앱 및 119로 위치 전송 구조 요청하라
 10. 길을 잘못 들었다고 판단되면 빨리 돌아서라
- * 각 숲길별 현장에 맞도록 안전수칙 변경 사용

[참고자료 2]

산림항공구조대 배치 및 구조현황

□ 산림항공구조대 배치 현황(12개대 운용)

(단위 : 대, 명)

구 분	계	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헬기(대)	31	3(1)	3(2)	2(1)	3(2)	3(1)	3(2)	3(2)	3(2)	2(1)	3(2)	2(1)	1(1)
인원(명)	49	6	5	4	4	4	5	5(4)	5(4)	4(3)	4	3	0
주요장비	헬기 Hoist 장척(18대 운용), 들것, 레스큐 시트, 산소소생기, 부목 셋, 구급낭, 제세동기												

□ 연도별 구조현황

구 분		연 도										
		총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출동 횟수(건)		342	4	16	16	19	36	54	72	56	46	23
구조 인원(명)		326	4	9	13	16	31	50	76	60	43	24
구조 방법	호이스트	199	4	8	7	11	24	34	46	37	28	0
	착륙	83	0	1	5	4	5	14	26	14	14	0
	수색	23	0	6	3	2	4	2	0	3	3	0
환자 유형												
조난/실종		27	0	6	3	2	4	3	0	2	5	2
외상(찰과상/골절)		193	3	6	8	11	13	32	48	35	22	15
뇌질환		1	0	0	0	0	0	0	0	0	0	1
심장질환		22	1	1	0	0	4	1	10	3	2	0
내과(당뇨/혈압)		9	0	0	1	1	1	1	2	1	2	0
탈진(저체온)		80	0	1	4	2	9	12	16	18	13	5
의식없음(사망 추정)		18	0	1	0	2	4	4	0	3	4	0
기타		6	0	1	0	2	3	0	0	0	0	0

국가지점번호

참고 1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검증기준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검증기준


- (지역)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서 100m이상 떨어진 지역 중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 (설치대상 시설물) 지면에서 50cm이상 노출되어 고정된 시설물 중 1년 이내에 철거되지 않을 시설물

기관별 지점표시 사례




○ (규격 및 디자인 표준)

- 한국산업표준규격(KS) 두께 2mm 알루미늄판 강도 이상의 금속 재질
-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가로형(520mm×300mm)과 세로형(300mm×486mm)으로 제작 가능
- 글씨체는 한글의 경우 Rix맑은고딕B로, 숫자 및 로마자는 한길체로 구분하여 적용
- 바탕색은 노란색 계통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제작



가로형



세로형

① 시설물 명칭 : 국가지점번호

② 지점번호 : 한글(2자리) + 아라비아 숫자(8자리)

③ 기타 : 시설물 관리기관명 및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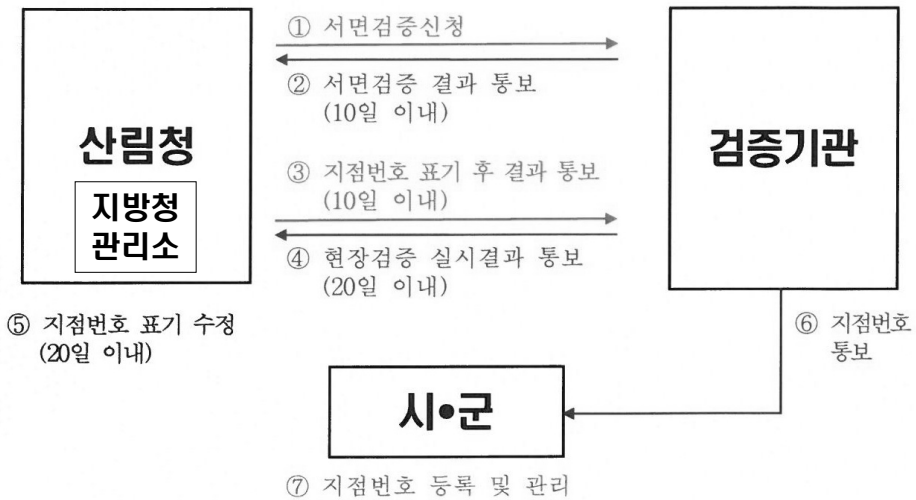
⑤ 시각경계선 : 테두리를 안쪽으로 적용하여 표지판의 시인성을 향상시킴

⑥ 모퉁이 : 곡선처리 하여 사고를 예방하며 부드럽게 표현

○ (지점번호의 검증)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지적측량 및 수로측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서 검증
- * 해당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 (업무처리 절차)



2019년 숲길안내센터 운영 현황

(2019. 7월말 현재)

(단위 : km, 명)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안내센터 명칭	주소	설치연도	관리거리	근무인원	전화번호	운영기간
서울	48개소	1개소			2,166	151		
서울시	서울둘레길 (gil.seoul.go.kr)	서울둘레길 안내센터 (서울창포원)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916	2016	157	6	070-4465-7905~6	연중 (월요일 제외)
부산	2개소	2개소			157.7	4		
금정구	금정산 등산로	금정산등산문화 탐방지원센터	부산 금정구 금성동 산1-14	2011	145.7	2	051-888-6876	연중
해운대구	장산 등산로	산림생태 관찰센터	부산 좌동 756-5 (장산로 331-39)	2014	12	2	051-749-5713	연중
대구	1개소	1개소			108	5		
대구시 (팔공산자연공 원관리사무소)	팔공산둘레길	팔공산둘레길 종합안내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229(진인동)	2018	팔공산 둘레길 108km	5	053-803-7155	2019. 1. 1.~현재 운영중
울산	1개소	1개소			15.5	1		
중구	입회산점살이 숲길	입회산야영장 숲길체험 관리사무소	대운동 8	2013	15.5	1	070-8282-6533	3~10월
경기도	5개소	5개소			220.9	10		
수원시	팔교산 등산로	팔교산등산 안내소	경기도 수원시 상광교동 413-3	2013	37.2	1	031-228-5575	연중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안내센터 명칭	주소	설치연도	관리거리	근무인원	전화번호	운영기간
과천시	관악산둘레길	관악산안내소	경기 과천시 중앙동 산86	2000년 이전	24	4	02-3677-2762	연중
고양시	고양누리길 (행주누리길)	고양누리길 탐방객지원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32번길 114	2014	고양누리길 114KM (행주누리길 :11.9KM)	2	031-8075-4384	매년 3월~12월
양주시	천보산 숲길 (천보 산림욕장)	천보산 센터	양주시 삼송동 산48	2014	7.6	1	031-8082-6202	연중
의왕시	바라산 등산로	바라산 안내센터	경기도 의왕시 북골안길 96	2017.6	26.2	2	031-8086-7470	연중
강원		1개소			52.5	4		
강릉시	녹색순환숲길	녹색숲길 안내센터	강릉시 구정면 수목원길 156	2012	52.5	4	033-660-2323	연중 (매주 월요일 휴원)
충북		2개소			62.3	5		
보은군	속리산둘레길	장안안내센터	보은군 장안면 개안길 20	2015	25.1	2	043-542-3330	2~12월
"	"	상판안내소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로 743	2016	37.2	3	043-542-7330	3~12월
충남		10개소			355.2	33		
보령시	성주산 등산로 (seongjusan.brcn.go.kr)	관리사무소	보령시 성주면 화장골길57-228	1992	12.0	3	041-930-3529	연중
서산시	내포문화숲길 (www.naepotrail.org)	한서대 안내소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77-4	2013	23.0	1	041-688-9383	2~ 11월
	내포문화숲길 (www.naepotrail.org)	고풍리 안내소	서산시 운산면 고풍리 323	2013	15.0	1	041-662-6829	3~10월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안내센터 명칭	주소	설치연도	관리거리	근무인원	전화번호	운영기간
당진시	내포문화숲길 (www.naepotrail.org)	아미산 방문자센터	당진시 면천면 아미로 354-2	2014	92.3	4	041-356-2522	2~12월
부여군	부소산 등산로	해설사의 집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	2.0	2	041-830-2884	연중
청양군	칠갑산 등산로 (칠갑지구)	칠갑지구 관리사무소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1-6	2006	10.5	4	041-940-2721	연중
	칠갑산 등산로 (장곡지구)	장곡지구 관리사무소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75	2017	9.3	3	041-940-2722	연중
홍성군	칠갑산 등산로 (천장지구)	천장지구 관리사무소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112-5	2016	6.1	4	041-940-2723	연중
	내포문화숲길 (www.naepotrail.org)	남산 숲길 방문자센터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21-32	2014	84.0	2	041-635-1661	2~12월
예산군	내포문화숲길 (www.naepotrail.org)	예산군 방문자센터	예산군 덕산면 가야산로 401	2013	101.0	9	041-338-0773	2~12월
전북		1개소			5	2		
진안군	구룡산등산로	구룡산관리소	진안군 주천면 정주천로 590	2016	5.0	2	063-430-8746/7	연중
경북		2개소			115.6	3		
봉화군	낙동정맥트레일	낙동정맥트레일 숲길안내센터	봉화군 소천면 분천길 31	2012	70	2	054-672-4956	1~12월
칠곡군	한티기능길	신나무골 안내센터	지천면 연화리 31-4	2016	45.6	1	-	2 ~ 11월
경남		4개소			88	4		
산청군	지리산둘레길	산청안내센터	산청군 금서면 천호경로 2605번길 5-7	2012	69.5	1	070-4227-6921	2 ~ 11월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안내센터 명칭	주소	설치연도	관리거리	근무인원	전화번호	운영기간
합천군	가야산소리길	소리길 탐방지원센터	합천군 가야면 황산리 976-1	2011	3.9	1	055-930-8000	연중
	남산제일봉	돼지골탐방 지원센터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산16-1	2014	4.9	1	055-930-8000	연중
	상왕봉	토산골탐방 지원센터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198	2014	9.6	1	055-930-8000	연중
제주		3개소			14			
서귀포시	한라산둘레길 (hallatrail.or.kr) - 천이숲길 돌오름길 동백길, 수악길	한라산둘레길 안내센터 (동백길입구)	서귀포시 도순동 산1번지	2013	47.1	6	064-738-4280	2~12월
	한라산둘레길 (hallatrail.or.kr) - 북은오름사려니숲길	한라산둘레길 숲길센터 (북은오름방면 사려니숲길 탐방안내소)	서귀포시 가시리 산158번지	2018	11.2	4	064-784-4280	2~12월
제주시	한라산둘레길 (hallatrail.or.kr) - 교래 사려니숲길	교래 사려니 숲길 탐방안내소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1	2011	4.8	4	064-900-8800	연 중
북부청		4개소			296.7	11		
홍천관리소	백두대간트레일	백두대간 트레일 홍천권역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 197-1	2013	46.5	1	033-434-8006	3~12월
인제관리소	백두대간트레일 (인제)	백두대간트레일 안내센터	인제군 기린면 현리 454-24	2018	139	4	033-461-4453	3~11월
	둔가리 약수숲길	약수숲길 안내센터	인제군 기린면 내린천로 4096-3	2011	38	2	033-461-4453	3~11월
양구관리소	DMZ편지불레길	편지불레길 안내센터	양구군 해안면 해안사회로 23	2016	73.2	6	033-481-8565	2~11월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안내센터 명칭	주소	설치연도	관리거리	근무인원	전화번호	운영기간
동부청		1개소			87.85	5		
동부청 (강릉관리소) 평창관리소)	대관령 숲길 (선자령백두대간,제왕산 옛길,대관령소나무숲)	대관령 숲 안내센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760	2017	87.85	5	033-330-4037	2월~12월 (월요일 휴무)
남부청		1개소			79.4	6		
남부청	금강소나무숲길 (www.ujntrail.or.kr)	금강소나무숲길 안내센터	울진군 울진읍 수산리 480-1	2011	79.4	6	054-781-7118	4~11월
서부청		8개소			295	35		
남원시	지리산둘레길 (jisantrail.kr)	남원센터	남원시 인월면 인월2길 95	2007	47.4	6	063-635-0850	3~12월
남원시	지리산둘레길 (jisantrail.kr)	주천안내소	남원시 주천면 정령치로 93	2011		2	063-625-8952	2~11월
산청군	지리산둘레길 (jisantrail.kr)	산청(성심원) 센터	산청군 산청읍 산청대로 1381번길 17	2012	69.5	4	055-974-0898	3~12월
산청군	지리산둘레길 (jisantrail.kr)	종태안내소	산청군 시천면 승하중태길 280	2011		2	055-973-9850	3~12월
하동군	지리산둘레길 (jisantrail.kr)	하동센터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52-4	2011	74.1	10	055-884-0854	3~12월
하동군	지리산둘레길 (jisantrail.kr)	삼화안내소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21-1	2013		2	055-883-0858	3~12월
구례군	지리산둘레길 (jisantrail.kr)	구례센터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로 106	2012	80.4	6	061-781-0850	3~12월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jisantrail.kr)	함양센터	함양군 마천면 금계길 5	2010	23.7	3	055-964-8200	3~12월
남대야열대 산림연구소		1개소			6.5	3		
서귀포시	서려니숲길 (서려니오름 구간)	한남연구시험림 탐방안내센터	서귀포시 남원읍 산2-1	2014	6.5	3	064-730-7272	5~10월

2019년 CCTV 설치·운영 현황

(2019. 7월말 현재)

(단위 : km, 대)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합계				1,423		
서울		334.79		787		
종로구	인왕산 등산로	4.1	2012~2014	9	입구 3, 등산로변 6	
	북악산 등산로	-	2012	1	북악팔각정 시설물 관리용	북악팔각정
중 구	매봉산 등산로	1	2009	3	입구	
용산구	매봉산 등산로	2.4	2012~2014	4	입구3, 등산로변 1	
	매봉산 등산로	3	2009~2014	3	입구 1, 등산로변 1, 산정상1	
성동구	금호산 등산로	2	2012	2	입구	
	응봉산 등산로	2	2009~2015	6	입구 3, 등산로변 2, 산정상 1	
	대현산 등산로	2	2009~2013	4	입구 3, 등산로변 1	
광진구	아차산 등산로	13.3	2013~2016	26	등산로변 5, 입구 21	
	배봉산 등산로	4.4	2009~2015	11	입구	
동대문	배봉산 둘레길	4.2	2018	26	둘레길 주변	
	천장산 등산로	0.6	2013	2	입구	
	홍릉공원 등산로	0.59	2016	3	입구	
종량구	용마산 등산로	30.1	2012~2018	13	입구, 등산로 등	
	봉화산 등산로	14.0	2010~2018	13	입구, 등산로 등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성북구	북한산 등산로	9	2010~2016	8	입구	
	월곡산 등산로	2	2010~2016	5	입구2, 등산로변3	
강북구	북한산 등산로	29.4	2013~2015	12	입구	
	오패산 등산로	3.9	2009~2016	11	입구 3, 등산로변 8	
도봉구	북한산 등산로	-	2012	2	입구 2	
	조안산 등산로	4.5	2011이전~2016	30	입구 등	
	쌍문근린공원 등산로	3.8	2015~2016	7	입구3, 등산로변 4	
노원구	수락산 등산로		2013~2015	15	입구 14, 등산로변 1	
	불암산 등산로	11	2012~2018	14	입구 6, 등산로변 8	
	조안산 등산로	1	2009	4	등산로변 4	
	영축산 등산로	1	2015	1	입구 1	
은평구	백련산	2.5	2014	1	입구	
			2015	3	입구	
	북한산	5.5	2012	2	입구	
은평구			2014	1	입구	
			2012	1	입구	
			2015	1	입구	
			2012	3	입구	
			2013	2	입구	
			2016	6	입구	
			2014	8	입구	
	비탄산	1.5	2012	1	등산로 상	
은평구			2012	2	입구	
	이말산	-	2013	5	입구	
			2014	4	입구	
	항림공원	1.5	2015	4	입구	
	기차준공원	1.0	2015	30	입구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서대문구	북한산 등산로	3.4	2012~2016	18	입구	
	안 산 등산로	27.8	2010~2016	45	입구	
	백련산 등산로	3.4	2012~2016	18	입구	
마포구	외우산 등산로	1.0	2014~2016	3	입구1, 등산로변2	
	신정산 등산로	4.5	2009~2013	4	입구	
양천구	지양산 등산로	4.2	2012	1	입구	
	수명산 등산로	0.1	2014	1	입구	
	봉계산 등산로	9.6	2012, 2019	3	입구2, 등산로	
강서구	개화산 등산로	4.3	2012-2015,2019	5	입구4, 등산로	
	공산 등산로	2.2	2012	2	입구	
	우장산 등산로	4.3	2016	1	입구	
	까치산 등산로	0.9	2013	3	입구	
	개웅산 등산로	0.7	2012	4	입구 2, 정상 2	
구로구	매봉산 등산로	1.0	2015	8	입구	
	능골산 등산로	0.4	2012	4	입구	
	호암산 등산로	14	2015	1	입구	
동작구	국사봉 등산로	4.1	2010~2016	8	입구	
	서달산 등산로	6.4	2014	2	등산로변	
관악구	관악산 등산로	18.4	2010~2017	48	입구 등	
	청룡산 등산로	2.8	2013	7	입구	
	근린공원등산로	10	2017	14	입구	
서초구	청계산 등산로	10	2015	2	등산로변, 산불감시용 경용	
강남구	대모산 등산로	25.6	2007	9	입구, 산불감시용 경용	
송파구	천마산 등산로	2	2011~2012	6	입구 등	
	일자산 등산로	3.1	2009	6	입구	
강동구	고덕산 등산로	3.8	2014~2016	2	입구	

시·도(시·군·구)	출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중부공원녹지 사업소	남산공원	-	2009~2017	65	시설물 관리용, 입구 및 공원순환로변	공원내 시설물관리
	낙산공원	-	2009~2012	11	시설물 관리용, 입구 및 공원순환로변	"
	용산가족공원	-	2010~2014	9	시설물 관리용, 입구 및 공원순환로변	"
	간데메공원	-	2009	3	시설물 관리용, 입구 및 공원순환로변	"
	중랑캠핑숲	-	2010~2015	28	시설물 관리용, 입구 및 공원순환로변	"
	북서울꿈의숲	-	2010~2016	97	시설물 관리용, 입구 및 공원순환로변	"
	서울창포원	-	2009	7	시설물 관리용, 입구 및 공원순환로변	"
	경춘선숲길	-	2016	33	시설물 관리용, 입구 및 공원순환로변	"
	부산	40.55		19		4개소 추가 설치
	동구	쌍샘로드	1.62	2012~2013	1	등산로 입구
영도구	볼래산 등산로	6.5	2015	3	블로초공원 2, 지연생태학습장 1	
해운대구	장산 등산로	1.31	2011	1	좌동 752-10(장산산림욕장)	
	장산 등산로	1.20	2015	1	반송동 산51-160(영산대)	
해운대구	장산 등산로	3.40	2015	1	반여동 산111-2(조록공원)	
	장산 등산로	4.50	2015	1	우동 산125-1(운촌경로당 뒤)	우동 산133-1에서 이설
	오봉산 등산로	1.78	2016	1	반여로 68-38(반여2동)	
	오봉산 등산로	1.78	2016	1	재반로255번길 30(반여3동)	
	장산등산로	1.31	2017	4	대전공원 ~ 장산 생태숲 (우동 산 148-1 등 4개소)	
강서구	연대봉 등산로	17.15	2013	5	지양곡 2, 연대봉 2, 응주봉 1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대구				34	상리동 644, 상리동 540-1, 상리동 593, 상리동 520-12, 상리동 239-73, 상리동 239-13, 상리동 673-5, 상리동 154-1, 상리동 산30, 상리동 산107, 상리동 649-2	
서구	외룡산 등산로	0.1~0.3	2010~2016	11		
남구	앞산자락길 (고산골 메타숲길)	0.1	2010	1	고산골메타숲길 입구	등산로 입구
북구	운암지~함지산 등산로	0.1~0.3	2010~2016	4	등산로입구, 체육시설 등	방법 및 밀착형산불감시 등
달서구	삼평봉 등산로(도원공원)	0.02	2016년	1	달서구 도원동 미리샘길 26	
달성군	비슬산 등산로	0.1~0.3		12	등산로 주변	휴양림주변 11개 방법용 1개
	외룡산 등산로	0.1~0.3		2	등산로 주변	방법용 2개
	가치봉 등산로	0.1~0.3		2	등산로 주변	방법용 2개
	백산	0.1~0.3		1	등산로 주변	방법용 1개
인천		84.07		34		
연수구	청학산 등산로	9.4	2013	2	청학동 산55-4, 청학동 산57	산불감시 전용
	문학산 등산로	14.8	2013	1	연수동 산59-1	산불감시 전용
남동구	만월산 등산로	2.2	2015	3	간석동 225-338, 37-685, 산27-6	산불감시용
	만수산 등산로	5.9	2015, 2018	3	만수동 산1-2, 산3-11, 산6-2	산불감시용
	오봉산 등산로	3.9	2015	2	노현동 225-4, 도림동 272-12	산불감시용
	소래산 등산로	6.8	2016, 2017	2	장수동 산61-13, 727-2	산불감시용

시·도(시·군·구)	출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부평구	장수산 등산로	2.9	2017	1	정천동 산4-6번지(등산로 입구)	방범용
	원적산 등산로	5.9	2017	1	산곡동 80-71번지(등산로 입구)	"
	함봉산 등산로	6.3	2017	1	산곡동 산42-3번지(등산로 입구)	"
계양구	계양산 등산로	1.6	2008	3	계양산 정상	산불감시 전용, 방범용
	계양산 등산로	0.3	2016	4	하느재고개	산불감시 전용, 방범용
	계양산 등산로	1.6	2016	3	피고개	방범용
	계양산 등산로	-	2016	3	장미원	방범용
	계양산 등산로	-	2016	1	계양문화회관	산불감시 전용
	천마산 등산로	0.9	2008	1	중구봉	산불감시 전용
	문학산 등산로	15.91	2018	1	학익동 산134-15	산불카메라
미추홀구	문학산 등산로	-	2018	1	학익동 78-24	산불카메라
	승학산 등산로	5.66	2018	1	문학동 220-13	산불카메라
	빛고을산들길	101.7		70		
광주	빛고을산들길		2015	8	응구 소태동 450-3 등 4개소	
	빛고을산들길	주노선 (81.5)	2015	10	서구 세하동 562-3 등 5개소	
	빛고을산들길	부노선 (20.2)	2015	8	남구 노대동 364 등 4개소	
	빛고을산들길		2015	16	북구 두암동 산164 등 8개소	
	빛고을산들길		2015	28	관산구 송대동 941-3 등 14개소	
	대전	31.55		12		
대덕구	계족산 등산로	4.8	2015	1	범동 353-27(범동소류지)	산불감시 전용
	식장산 등산로	1.45	2016	1	편암동 산32-1	산불감시 전용
	식장산 등산로	2.6	2016	1	대성동 12-5	산불감시 전용
공원사임소	보문산 순환숲길	22.7	2014~2018	9	대사동, 무수동, 사정동 등 일원	산불감시 전용
울산		36		13		
중구	임화산점삼이 숲길	4	2013	4	임화산야영장, 임화산입구	방범용
남구	솔마루길	24	2013	7	신선산대공원산,삼호산,남산	등산로 입구 방범용

시·도(시·군·구)	출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북구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등산로	8	2014, 2017	2	달천동 산 160-1	시설물관리, 방범용
경기		20.8		22		
수원시	광고산 등산로	0.2	2016	9	입구3, 등산로6	
과천시	관악산 주등산로	4.1	2016	1	관악산 입구1	
의왕시	모락산둘레길	14.5	2016	2	둘레길 입구 2	
파주시	감악산 출렁다리	2	2017	10	출렁다리2, 폭포1, 전망대2 범륜사1, 주차장,도로 4	시설관리
강원	12개소	79.3		19		
춘천시	느릿재 등산로	10.2	2014	1	동면 감정리 산83-4번지	
	대룡산 등산로	8.0	2014	2	동내면 거두리 산36번지	
	연염산 등산로	6.0	2014	2	동산면 봉명리 산58번지	
원주시	소금산 등산로	5.6	2014	1	지정면 간현리 1108	
	미륵산 등산로	5.0	2014	1	귀례면 주포리 산31-7	
	흥업면 등산로	8.7	2014	2	흥업면 대안리 산167(매지리 산139-1)	
강릉시	모산봉 등산로	2.8	2014	1	노암동 산56-1	
	춘감봉 등산로	3.5	2014	1	포남동 산35	
	시루봉 등산로	2.2	2014	1	저동 산77	
정선군	괘방산 등산로	8.7	2007	1	강동면 모전리 26-3	
	민동산 등산로	4.96	2017	1	정선군 남면 문곡리 48-7	
양구군	비룡산 등산로	13.6	2013	1	양구읍 상리 산6-3	
			2016	4	양구읍 상리 산1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충북		56		24		
청주시	우암산등산로	4.2	'12~'15	6	청주시 상당구 수동 산4-2외 5개소	
	백화산 등산로	0.3	'16	2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81-3	
충주시	남산등산로	2.0	'17	1	충주시 용산동 산 11번지 17개소	
옥천군	장령산등산로	10.3	'14~'15	11	옥천군 장령산 산책로 및 치유의 숲	
영동군	민주지산(휴양림) 등산로	12.2	'16	1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 51-1	
	삼도봉(물한계곡)등산로	6.4	"	1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929	
영동군	백화산(반야사) 등산로	13.9	"	1	영동군 황간면 우매리 산56-1	
	천태산 등산로	6.7	"	1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696-1	
충남		227.1		130		
	테조산 등산로	7.2	2014	2	동남구 원성동 1-7	청송사 입구
	태학산 등산로	3.2	2015	6	동남구 유량동 산7-2	등산로 입구 및 주변
천안시	봉서산 등산로	11.2	2014	8	서북구 쌍용동 산12-1(2)	등산로 입구 및 주요지점
					서북구 쌍용동 1358(3)	
					서북구 쌍용동 315-10(3)	
			2017	2	서북구 쌍용동 313-12	
	노태산 등산로 (유동단지공원 포함)	4.0	2014	2	서북구 백석동 1071	생태통로 주변
					서북구 상성동 441	
부영 공원 숲길 (에코힐링 맨발 황톳길)	2.5	2014	2	서북구 불당동 1279	공원입구	
은석산 등산로 (어서박문수테마길)	10.7	2017	4	동남구 북면 은지리 45-1	박문수테마길 입구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전안시	일봉산 등산로	4.0	2015	5	동남구 다가동 440-29(3) 동남구 다가동 460-8(2)	등산로 입구
				3	동남구 용곡동 474-5	일봉산 터널
				2	동남구 다가동 460-12	정상 정자
공주시	태화산 등산로	2.0	2014	3	동남구 다가동 460-12	등산로
				6	사곡면 운암리	등산로 입구 및 주요지점
보령시	산림휴양마을(주미산) 성주산 등산로	2.5	2016 2013~2018 2019	1	금학동	휴양마을 내 등산로 부근
				18	성주면 성주리 산39	등산로 입구
				2	성주산자연휴양림 내	및 주요지점
이산시	영인산 등산로	18.8	2015	1	영인면 상성리 영인산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입구
서산시	부춘산 등산로	4.6	2015	5	동문동 산38-1 (옥녀봉 전망대 2대) 읍내동 562-12 (봉화대1, 가로등 옆 1대) 읍내동 562-13 (봉화대2, 아래갈림길 1대) 읍내동 609-19 (맛이나라는 1대)	등산로 입구 및 주요지점
					9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당진시	아미산 등산로	16.0	2016	1	당진시 면천면 죽동리 347-1	등산로 입구
금산군	금성산 솔래길	13.0	2012	1	금성면 의총길 금성산 솔래길 입구	솔래길 입구 (철백의총-문화재청 소관)
청양군	철갑산 등산로	19.2	2016	17	정산면 천장리 천장지구	주차장 및 출렁다리 주요지점
	남산	7.6	2016	1	대치면 장곡리 장곡지구	주차장
	백월산	15.9	2002	2	홍성읍 남장리 439-3	등산로입구, 주차장
	지기산	1.1	2002	1	홍성읍 월산리 산71-5	산불감시용
	오서산	37.8	2005	1	은하면 장곡리 152-4	산불감시용
	봉수산	16.0	2012	1	장곡면 관성리 산92-3	산불감시용
	청룡산	5.8	2005	1	금마면 봉서리 산2-1	산불감시용
				1	결성면 무량리 산30-36	산불감시용
태안군	백화산 등산로	12.0	2016.11.	18	태안읍 상옥리 산218번지 태안읍 남문리 3-10번지 태안읍 상옥리 1100-2번지 태안읍 동문리 산5번지 태안읍 산후리 산132번지 태안읍 동문리 4-2번지	개소당 추적형(1), 일반형(2) 설치
전북		81.5		12		
익산시	미륵산 등산로	21	2005	1	미륵산 정상	산불감시용
	함라산 등산로	12	2005	1	봉화산 정상	산불감시용
	당재산 등산로	2	2010	1	당재산 정상	산불감시용
	시대산 등산로	3.5	2010	1	시대산 정상	산불감시용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남원시	지리산 둘레길	14.3	2016	2	1. 주천면 장안리 581-7 (1코스시작점) 2. 주천면 덕치리 457-2 (1코스~구룡폭포 순환길 합류점)	
	덕음산 등산로	20	2017	3	1. 시계탑 2. 삼거리(주천면 용담리 산49) 3. 임도변(주천면 송치리 산87-1)	
	팔공산 등산로	3.4	2011	1	정상	산불감시용
정수군	봉화산 등산로	1.6	2011	1	철쭉단지 정상	산불감시용
고창군	전불 등산로	3.7	2014	1	등산로변(고수면 와촌리 산18)	
전남		325.8		51		
완도수목원	완도난대숲둘레길	7.4	2016	3	완도군 근외면 초평1길 156	수목원 ব্যবয়
	완도자연휴양림산책로	1.4	2018	1	완도군 완도읍 대야일길 115	휴양림 주차 관제 시스템
순천시	오성산 등산로	6.1	2010	1	순천시 승주읍 두월리 산140-2(정상)	산불감시
	갯거리봉 등산로	7.8	2010	1	순천시 서면 청소리 산18-1(정상)	산불감시
	봉화산 등산로	4.4	2003	1	순천시 용담동 산50(정상)	산불감시
	남산 등산로	22.2	2003	1	순천시 인제동 산42-20(정상)	산불감시
구례군	지리산둘레길	80.4	2015	3	구례군 구례읍 광의면 방광리 방광마을(지리산 둘레길센터 3)	
고흥군	팔영산 등산로	10	2016	1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1058	
	천등산 등산로	12	2016	1	고흥군 풍양면 울치리 산26	
	마복산 등산로	12.5	2016	1	고흥군 표두면 옥강리 산379	
	적대봉 등산로	17	2016	1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산162-4	

시·도(시·군·구)	출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고흥군	봉황산 등산로	4	2016	1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신57	
	두봉산 등산로	5.1	2016	1	고흥군 동강면 매곡리 신136	
	동촌 산림욕장	4.7	2016	1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991-3	
	봉래산 등산로	6.4	2016	1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212-21	
함평군	군유산 등산로	11	2014	2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535-3 (입구1) 함평군 신광면 승사리 신80 (산정상1)	산불감시경용
	천주봉 등산로	5	2014	2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735 (입구1) 함평군 나산면 우치리 신36 (산정상1)	"
	고산봉 등산로	3	2014	1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31 (입구1)	"
	고봉산 등산로	2	2014	1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85-5 (입구1)	"
	기산봉 등산로	5	2014	1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4-1 (입구1)	"
	용문산 등산로	7	2014	1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신34 (입구1)	"
영광군	인의산 등산로	1.5	2004	2	영광군 범성면 범성리 신41	산불감시용
	불갑산 등산로	17.3	2004	2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1	산불감시용
	물무산 등산로	8	2004	2	영광군 영광읍 화정리 산1-1	산불감시용
	봉덕산 등산로	10.8	2005	2	영광군 영산면 봉남리 산30-4	산불감시용
영광군	대신산 등산로	5	2011	2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신193	산불감시용
	검덕산 등산로	2.7	2011	2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신82	산불감시용
	장암산 등산로	8.4	2016	1	영광군 묘량면 삼호리 신45-11	산불감시용
	물무산 행복숲	10	2018	6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신1-1	시설물관리, 방범용
진성군	제봉산 등산로	1.9	2013	3	진성군 장성읍 영천리	
	침철산 등산로	18.0	2015	1	진도군 이신면 사천리	
진도군	동석산 등산로	7.8	2015	1	진도군 지산면 심동리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경북	효자그린아파트 등산로 동해면 조항산 등산로	3.5	2016	17	남구 효곡동 지곡로 260번길	반범용 CCTV
				1	남구 동해면 약전리 257-2	
포항시	연일읍 증명자연 생태공원 등산로	2	2016	2	남구 연일읍 중명리 1123	반범용 CCTV
				2	남구 연일읍 우부리 산223	
경주시	구룡포읍 맑목장성 등산로	1.5	2016	2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732-1, 844-1번지	반범용 CCTV
				2	경주시 용강동 산83-1일원	
안동시	안동호반나들이길	2	2013	9	안동시 성곡동 842-1번지 일원	만남주유소 옆
경남		535.9		83		
창원시	숲속나들이길	40.9	2012	1	의창구 봉림동 127-4	반범용
	숲속나들이길	40.9	2012	1	의창구 도계동 산138-7	"
	저도비치로드	6.6	2012	1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북리 산186-1	"
	무학산둘레길	21	2012	1	마산합포구 교방동 산40-3	"
	무학산둘레길	21	2012	1	마산회원구 회원동 산29-5	"
	시루봉 등산로	3	2012	1	진해구 자은동 404-6	"
통영시	벽범산등산로	7.4	2016	3	도산면 원산리 177-4(사계마을)	"
				4	광도면 인정리 1897-1(안정사주사장)	"
				5	북신동 624-5 (명계수협 앞)	"
				2	북신동 301-6(북신성당 앞)	"
통영시	미륵산 등산로	29.7	2016	3	미수동 520-1(숲속유치원 앞)	"
				4	봉평동 산19-5(영화사 광장)	"
				3	산양읍 남평리 1386(금평마을)	"
				2	산양읍 영운리산184-2(띠밭등)	"
			2017			

시·도(시·군·구)	출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통영시	천함산 등산로	4.0	2016	3	명정동 29-4(명정고개길)	"
	발암산 등산로	6.0	2017	3	광도면 죽림리 455-2(용봉사 앞)	"
	천개산 등산로	6.0	2017	3	광도면 노산리 728-1(광도천)	"
이령군	남산산림욕장	2.5	2012	1	이령읍 중동리 산6	"
	내조 등산로	3.2	2013	1	칠곡면 내조리 산51-2	"
	식목재 등산로	1.3	2013	1	대이면 신전리 산1-1	"
창녕군	화왕산, 관룡산 등산로	2.5	2017	1	창녕읍 옥전리 516(옥전매표소 방향)	"
	화왕산 등산로	2	2016	1	창녕읍 송현리 10(도성암 사거리)	"
고성군	갈모봉산등산로	8.6	2015	1	고성읍 이당리 253-5	주차장조성에 따른 시설
			2016	2	고성읍 이당리 653-2	지번수정
남해군	거류산등산로	13.1	2018	2	고성읍 이당리 산146-1	방범용
	망운산 등산로	2	2017	2	거류면 송산리 산9-5	신규
하동군	지리산둘레길	74.1	2013	2	남해읍 서면리 산11-1	방범용
				2	하동군 적량면 관리 545-3, 산 49-3	"
				2	청암면 고시래길 208	"
				2	청암면 고시래길 3	"
				1	청암면 평촌리 1220-1	재난감시용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24.2	2015	1	청암면 청학로 654	방범용
				1	마천면 의탄리 870	"
				1	마천면 창월리 1475	"
				1	마천면 의탄리 1234	"
				1	마천면 의탄리 1281	"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24.3	2012	1	마천면 의탄리 416	"
				1	휴천면 송전리 산135-1	"
				1	휴천면 동강리 84	"
				1	마천면 의탄리 1108	"
				1	휴천면 송전리 788-1	"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함양	황석산등산로	4.2	2015	1	안의면 상원리 산 48	산불감시용 밀착형카메라
	기백산등산로	4.5	2015	1	안의면 상원리 산16-4	산불감시용 밀착형카메라
	필봉산등산로	2.3	2015	1	함양읍 교산리 산54	산불감시용 밀착형카메라
	오봉산등산로	2.1	2015	1	함양읍 죽림리 55	산불감시용 밀착형카메라
	백운산등산로	5.0	2015	1	백전면 백운리 산35-1	산불감시용 밀착형카메라
	대봉산등산로	5.6	2015	1	서하면 은곡리 산5-23	산불감시용 밀착형카메라
합천군	가야산 소리길	3.9	2013	4	가야면 황산리 산1	방범용
					가야면 구원리 산1	"
					가야면 치인리 산15-8	"
					가야면 치인리 산14-4	"
					가야면 치인리 11	"
					가야면 치인리 산16-1	"
제주특별시		15		2		
서귀포시	시려니숲길	15	2015	2	표선면 가시리 산158 남원읍 수망리 산203	밀착형 산불카메라
북부지방청		58.9		5		
춘천관리스	오봉산 등산로	5.2	2015	1	화천. 간동. 간척. 산151-9 (배후령 정상)	밀착형 산불카메라
춘천관리스	검봉산 등산로	4.0	2015	1	춘천. 남산. 백양. 산97 (검봉유아숲체험원)	밀착형 산불카메라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충천관리소	봉화산 등산로	3.2	2015	1	충천. 남산. 강촌. 산136-1 (숲속다람쥐학교)	밀착형 산볼카메라
홍천관리소	백두대간 트레일	46.5	2015	2	백두대간 트레일 홍천권역 (홍천군 내면 광원리 산 197-1)	
동부지방청		31.3		7		
양양관리소	구룡령옛길 등산로	3.0	2014	1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 (등산로입구 1)	밀착형 산볼카메라
평창관리소	선자령 등산로	13.3	2014	1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산1-2 (등산로입구 1)	밀착형 산볼카메라
정선관리소	가리왕산 등산로	5.0	2000	1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 산400 (등산로정상 1)	조망형 산볼카메라
정선관리소	가리왕산 등산로	3.0	2018	2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산1 (가리왕산 등산로 분기점 - 마항치 사거리)	밀착형 산볼카메라,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볼감시)
정선관리소	가리왕산 등산로	7.0	2018	2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 산400 (가리왕산 등산로 입구 - 장구목이)	밀착형 산볼카메라,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볼감시)
남부지방청		93.42		7		
남부청	금강소나무숲길	74	2011	1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대광천길 60-1	금강송 군락지
			2011	1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대광천길83	금강송 수련관
			2011	1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대광천길 60-1	소광천입구 (유전자원보호구역)
	대야산 등산로	2.5	2015	1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산11	대왕소나무
			2014	1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산75-1(대야산)	
			2014	1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박달령)	산볼 밀착형 감시카메라
			2014	1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산1(도래기재)	

시·도(시·군·구)	숲길(등산로)명	거리(km)	설치년도	설치대수	설치위치	비고
서부지방청		295.1		73		
함양군	지리산둘레길	23.7	2012	2	금계1 용유담1	
산청군	지리산둘레길	69.5	2012	23	자혜교1, 방곡마을1, 고동재1, 수철마을1, 지막마을1, 산정음 경호교~내리고 5, 지성마을1, 내리한밭2, 어전마을4, 운리마을1, 원정마을1, 덕산사리마을1, 덕산고교앞삼거리1, 송하마을1, 중태마을1	
남원시	지리산둘레길	47.4	2016, 2017	16	장항1, 구인월교1, 서림공원1, 운봉초등학교1, 운봉농협사거리1, 행정마을1, 가장마을2, 회덕마을1, 노치마을1, 내송마을1, 외평마을3, 내용궁마을2,	
구례군	지리산둘레길	80.4	2015	29	현천마을3, 원촌초등학교3, 효동마을2, 탐동마을2, 예술인마을2, 당동1, 화엄사입구2, 운조루 주변7, 운조루유물관 주변6, 하죽마을 소망교회1	
허동군	지리산둘레길	74.1	2013	3	관동마을2, 대축마을1	
난대야열대 산림연구소				2		
서귀포	시려니숲길 (사려니오름 구간)		2015	2	한남연구시험림 입구(2)	



숲길등산지도사 운영

목 표

-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림서비스도우미)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트레킹을 지도·교육하고 다양한 산행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길등산지도사 배치·운영
- 숲길등산지도사 운영 : 204명, 2,625백만원

가. 정책여건

- 산행 수요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숲길 인프라는 구축되고 있으나 숲길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산행활동 서비스 제공 부족
- 산행안전 및 등산·트레킹문화의 저변 확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등산·트레킹 활동에 대한 요구 증대

나. 기본방향

- 백두대간·정맥 및 100대 명산 등산로, 트레킹길 등을 중심으로 숲길 체험서비스 제공
- 숲길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구축된 자료를 DB화하여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안전산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숲길 운영·관리 도모

다. 세부추진계획

- 숲길관리청별로 산행안내서비스가 필요한 주요산은 숲길등산지도사를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지침으로 운영하되 사업성과 높은 지역에 우선 배치
 - 등산객의 사고예방 교육은 물론 간단한 등산로 정비 및 실태조사 수행
 - 건전한 등산문화 캠페인 등 등산예절 홍보 강화

- 주요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등) 및 숲길안내센터에서 이용자에게 숲길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 활동 전개
- 백두대간·정맥 주요 구간, 100대 명산과 기 조성된 트레킹길의 숲길 안내센터 운영 등 안내 수요가 많은 숲길 중 산행안전 사각지대 및 방범취약지구에 우선 배치·운영
- 숲길의 정확한 이용정보 구축을 위해 숲길 조사 및 모니터링, 경미한 훼손 숲길의 조기 복구와 국민들에게 안전산행 및 다양한 숲길체험 서비스 제공
 - 기상상황, 코스별 소요시간, 대피소, 위험구간, 입산통제구역 등 안내
 - 배수로, 낙석, 도복목 정리 등 간단한 등산로·트레킹길 정비 및 관리
 - 산의 지형적 특성, 주요 동·식물, 주변 문화재 등 안내 및 건전한 산행문화 캠페인 실시
- 산행안전지원대 운영 등 사업 참여
 - 비상약품 휴대 및 산림항공구조대·민간산악구조대 등과 유기적인 연락체계 유지
- 숲길등산지도사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숲길조사 병행 실시
 - 2007~2018년까지 미조사된 산에 대한 숲길조사 및 기 조사한 산 중 자료가 미비한 산에 대한 보완조사 실시
 - * 백두대간, 정맥, 100대 명산, 도시생활권주변 등의 등산로 순으로 조사
 - 전국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등)을 노선별 위치, 거리, 명칭, 상태(훼손 정도) 및 당해연도 자연재해 발생 시 일시적 훼손현황(서면 또는 유선 즉보) 등 숲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실시
 - 숲길(등산로, 트레킹길 등)의 특징, 유래, 문화, 역사, 이용빈도 등 숲길체험에 대한 자료 조사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GPS,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노선측량, 안내판 위치, 안내판 설치 대상지, 훼손지 등 표시
 - 1개 산별로 완결될 수 있도록 조사(여러 기관 해당 경우 우선협조)

- 등산로 위치 특성상 시·도, 시·군·구 등 지자체 경계지역 조사가 중복될 경우, 노선이 많이 편입된 기관에서 협의 후 일괄 조사
- 조사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숲길등산지도사는 이용자가 많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근무일로 하고, 주중(평일)을 휴일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숲길등산지도사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숲길등산지도사로 선발된 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실무교육 실시
 - 교육시기 : 2월~3월 중
 - 교육기간 : 3일(비합숙)
 - 교육기관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대전광역시 대덕구)
- 산림분야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숲길등산지도사 배치·운영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
 - 숲길등산지도사 선발 및 운용사항, 근무일지, 숲길체험 프로그램 운영, 숲길조사야장 등은 2020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숲길등산지도사 일자리사업지침 적용

라. 추진일정

- 숲길등산지도사 선발 : 2020 2월까지
- 숲길등산지도사 선발내역 보고 : 선발 직후
- 숲길등산지도사 전문 위탁교육 : 2020. 2월~4월
- 숲길등산지도사 고용현황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숲길등산지도사 운영현황 지도·점검 : 상·하반기

< 붙임 >

숲길등산지도사 배정인원 및 예산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기관별	숲길등산지도사		기관별	숲길등산지도사	
	인원	예산		인원	예산
합계	204	2,625	인천	2	21
<산림청>	45	969	대전	4	42
본청	-	55	울산	3	31
북부청	9	180	경기	15	156
동부청	8	159	강원	14	146
남부청	5	106	충북	10	104
중부청	-	-	충남	11	115
서부청	23	469	전북	10	104
<지자체>	159	1,656	전남	20	208
서울	3	31	경북	29	302
부산	2	21	경남	18	188
대구	15	156	제주	3	31

* 보조율 : 산림청(국고 100%), 지자체(국고 50%, 지방비 50%)

< 서식 1 >

숲길등산지도사 선발내역

기관명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주요경력 및 기본 교육 이수여부	숲길등산지도 사 자격유무	배치지역

*** 기재요령**

- 배치지역에는 숲길안내센터, 산 이름과 등산코스 및 트레킹길 명칭 등을 기재
- 연락처는 현장에서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기재

숲길등산지도사 운용결과 보고(서식/분기별)

기관명	고용상황 (명)			사업비 (천원)		숲길체험 프로그램운영		산행안내		숲길조사			숲길 관리		구조·구급 등 기타	
	계획	실적		예산	집행	회수	인원 (명)	회수	인원 (명)	조사 산수	노선수	거리 (km)	회수	내용	회수	인원 (명)
		계	남													
계																

※ 숲길등산지도사 운용 제도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
- 애로 및 건의사항 :
- 수범사례 :

<사업실행 주요장면 사진 각 2매(원본은 별도 메일 송부)>

< 서식 2 >

숲길등산지도사 근무일지

근무일자	2018년 월 일 ~ 월 일				결재							
지도사 성명		체험지도 지역										
근무사항												
일 (날씨)	o 당일의 숲길체험지도 및 점검활동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다. - 숲길체험지도 내용 및 인원(0회 0명)											
일 (날씨)	- 구조·구급 내용 및 인원(0회 0명) - 숲길 조사 및 안전점검 내용 및 거리(0회 0km)											
일 (날씨)	- 기타 특기사항 등											
일 (날씨)												
일 (날씨)												
사업실적												
월/일	숲길체험 프로그램운영		산행안내		숲길조사			숲길관리		구조·구급 기타		비고
	회수	인원 (명)	회수	인원 (명)	조사 산수	노선수	거리 (km)	회수	내용 (km, 개소 등)	회수	인원 (명)	
계												
비고(상세기재) :												



등산로 정비

목 표

- ▶ 훼손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
 - 훼손 등산로 정비 : 53.87km, 1,716백만원(국비)
- ▶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한 산림생태축 복원과 안전산행 도모
- ▶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가. 정책여건

- 등산 수요의 증가로 등산객이 집중되는 생활권 등산로와 백두대간, 정맥 등의 등산로는 과다이용으로 훼손 상태 심각
 - * 산행인구 추이(연1회 이상) : ('91) 16 → ('01) 27 → ('10) 30 → ('15) 32백만명
- 단절된 등산로의 산림생태축 복원 및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과 산행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 등을 즐기는 동호인들의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및 등산객·지역주민 등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 * 산악자전거 안전사고 구조현황: ('16) 57 → ('17) 33 → ('18) 69건
 - * 민원 현황: ('17) 163 → ('18) 230 → ('19.6월) 182건

나. 기본방향

- 숲길정책 사업의 체계적인 조성·관리 등 제도적인 기반 마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숲길정책 기반 마련
 -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021)」 수립에 따라 체계적인 조성·관리 사업 추진
- 백두대간·정맥, 생활권 등산로의 과도한 이용으로 훼손된 등산로를 우선 정비하여 안전한 산행환경 조성
 - 등산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숲길 지정·고시 추진

- 동일 노선에서는 훼손이 심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 추진
- 등산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하여 산림생태계 복원 및 등산객의 이용편의 도모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네트워크 구축
 - 등산로 연결사업(출렁다리)의 설계는 반드시 「도로교설계기준」 준용
 - 주변 경관을 고려한 사업추진 및 이용자 안전성을 감안한 구조물 설치
- 건전한 등산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등산로 등급별 구분, 숲길 내 차마(車馬)¹⁾ 출입금지 법률 개정 추진

다. 세부추진계획

1) 백두대간·정맥·생활권 등산로 정비

□ 대상지 선정

- 백두대간 및 정맥 등산로 구간 중 등산객 증가 등으로 훼손이 심화되어 정비가 시급한 곳과 민원해소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곳 우선 선정
 - 언론 등에서 훼손문제를 제기한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우선 선정
- 100대 명산, 생활권 주변의 등산로 등 등산객 집중으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하되,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을 우선 선정

□ 사업추진방향

- 대상지의 규모, 훼손 상태 및 주변 산림생태 환경을 고려한 설계 및 정비 추진
 - 이용객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고려하고, 숲길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숲길의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등산로 정비
 - 동일 노선은 숲길관리청별로 설계 단계부터 협의하여 유역 완결 추진
 - * 산별로 정비하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한 통일된 사업 추진
 - 등산로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예정노선 도면을 포함한 숲길 (등산로) 조성계획을 누리집 등에 20일 이상 공고 후 숲길 지정·고시(사업 전)

1) 도로교통법 제2조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것,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 예비노선에 대한 토지 소유자별 조성내용을 근거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주 동의 요청과정을 반복하여 최적노선을 확정
- 산림생태계 및 경관보전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공법으로 정비
 - 가급적 친환경 소재(돌, 목재)를 사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인위적 구조물은 최소화하여 설치
 - * 장기적으로 숲길훼손 및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원주목 계단 등의 시설은 설치 지양
 - 정비 구간은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돌계단 및 횡단배수로 설치, 안내 및 편의 시설 등 주요 공종을 전부 반영하여 등산객의 민원 요구가 없도록 정비
 - * 안내 및 편의시설은 이용자의 등산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
 - 민원요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시설물은 적정하게 반영 설치 하되 과다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설계심의회 등 강화
 - 등산로 주변 경관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병행 추진(숲가꾸기 등)
 - 안내판, 표지판 등 설치 시에는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을 적극 활용
-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물 및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 재해 취약지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편의시설은 이용자 안전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치
 - * 산행 후 쾌적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편의시설(샤워실) 설치 검토
 - 급경사로 훼손이 반복되는 구간은 유실방지를 위한 공법 반영 및 재해예방 시설 집중 설치
 - 낭떠러지, 해빙기 낙석 위험지역 등 상시 위험구역과 산행사고 빈발 지역은 위험표지판, 사고내용에 대한 안내판, 심폐소생술 안내문, 간이 구급함 등 안전시설 설치
 - 종합안내판에 입산·하산시간, 야간산행 금지, 낙뢰 피해예방 행동 요령, 야생동물 주의사항, 국가지점번호판, 구급함, 산불예방을 위한 소방시설의 위치를 표시

- 등산객의 산행안전 지원 및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정비, 보수 등을 위하여 기존 표지판은 위치데이터(GPS)로 유지·관리
 - * 등산객 조난 대비 신고처(좌표)는 국가지점번호로 통일 운영
 - 등산로 정비 설계 시 국가지점번호 설치를 설계에 반영
 - 설치거리는 500m 내외로 설치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소방청 긴급전화(119)와 시설관리기관명을 명시
- 등산로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는 가급적 상반기에 정비 완료
 - 산 정상에 설치된 낡은 표지석·이정표는 자연친화적으로 정비
 - 산 정상에 설치될 예정이거나 설치된 표지석은 임의대로 규모를 크게 하여 정상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적정규모로 설치·보완
 - 등산인구 통계관리를 위해 주요 등산로에 계수기 등 시범·설치 운영
 - 등산로 현황자료는 누리집 등을 통해 개방
 - * DB 구축을 위해 등산로 정비 후 노선, 안내판, 이정표, 편의시설, CCTV 등의 시설에 대한 공간위치정보를 제출(산림청)
 - 지역주민, 유관기관, 관련단체, 학계 등 의견 반영을 통한 사업품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 *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 심의회, 현장 토론회 개최 등
- 등산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 철저
 - 산림조합중앙회 설계·감리, 지역산림조합이 시공할 경우 잦은 설계 변경 및 과다 요율적용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산림조합의 불법하도급 우려 및 수행능력에 대한 불신해소를 위해 기술자 보유현황 등 사업수행능력을 확인
 - * 「지방계약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근거로 입찰공고문 또는 계약서 등에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명시

2) 등산로 정비사업 사후관리

- 등산로 정비사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 숲길관리청별 추진사항의 지속적인 점검과 상·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 규모 있는 정비사업 현장은 시·도별 현장 특별책임관 지정·운영
 - 생활권 주변의 이용도가 높은 등산로는 산림문화유산 발굴과 문화와 역사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이용도 증진(해설관 설치 등)
- 등산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사항 지속적인 반영
- 기업, 유관기관, 산악단체 등을 활용한 등산로의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이용도가 높고 특색 있는 등산로는 민간단체를 이용한 사후관리 도모
 - 지역 산악단체, 대학생 봉사단 등 지자체에서 등산단체와의 등산로 관리 협력강화(우리명산 클린 경진대회 등)
 - 숲길관리청별로 등산로를 선별하여 단체 등과 협약 체결 관리
 - 사후관리 참여 단체에는 소요 비용의 지원 등 노력
- 자생 산악단체에 주요 산행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홍보
 - 산악단체 사후관리를 통해 숲길정책 사업의 서포터로 활용
 - 시·도별 등산로 정비사업 우수 지역을 선정하여 대국민 홍보 및 활용

3) 등산로 연결

□ 대상지 선정

- 도로 및 산림훼손 등으로 단절된 등산로 연결을 통해 산림생태계 네트워크 구축과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대상지 우선 선정
 - 교량과 같은 녹지공간형과 보행가교형(소형, 대형)으로 구분
 - * 보행가교형(출렁다리) 설계는 반드시 「도로교설계기준」 준용

□ 사업추진방향

- 녹지공간형은 산림식생복원 등의 사업을 통해 경관과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안정감과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

- 보행가교형은 아치교량 형태의 케이블공법 등을 반영하고 노폭이 좁은 등산로 연결과 산정의 단절된 암석 구간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전성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설계
 - 규모가 큰 등산로 연결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첫 해에는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
 - 디자인 심의, 부지확보 등 민원사항 해소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완료
 -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착오 방지
 - 소요예산 확보 등 사업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철저
 - 단절된 훼손지의 연결 등 녹지기능 향상을 통해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 및 안전성이 강화된 등산로의 네트워크 구축
 - 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인 시설 도입
 - 주요자재는 이용자의 안전성, 편의성과 사후관리 등을 고려하여 추진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품질향상 및 대규모 등산로 연결사업의 대국민 홍보 강화
 -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
 - 이용자 만족도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식 사업명칭 사용과 산림청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대규모 사업의 홍보강화
- * 예시(사업명) : ○○ 등산로 연결사업(○), ○○ 등산로 복원사업(×)

4) 등산로 연결사업 사후관리

- 등산로 연결사업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 숲길관리청별 추진사항의 지속적인 점검과 상·하반기 모니터링 실시
 - 규모 있는 연결사업 현장은 시·도별 현장 특별책임관 지정·운영
- 등산로 연결(출렁다리) 시설점검 강화
 - 출렁다리 관리 주무부처(국토부)에서 제정한 ‘공통 운영·관리기준’에 따라 산림청 자체 ‘등산로 연결사업 운영·관리기준’ 마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에 대해 제3종 시설물 지정 추진 및 정기 안전점검(외관조사) 실시
- 출렁다리의 규모, 준공 후 경과연수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밀안전 점검(외관조사+측정·시험) 추진
- 지자체별 자체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계획 수립·운영

5) 국민 요구에 맞는 등산정책 개발 및 추진

- o 보행자 전용 숲길 법적근거 마련
 - 등산객과 레포츠 동호인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보행자 전용 숲길 구분·운영에 따른 법률근거 마련(산림휴양법 개정)
 - * 숲길 내 차마 출입금지구간 지정·고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 o 등산로 이용등급 구분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
 - 등산객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등산로 난이도 등을 고려한 이용 등급 구분을 위한 일제조사 실시
 - * 등산로 등급별로 권장 이용수준, 위험구간 등을 표시

라. 추진일정

- o 2020년도 산림휴양등산분야 사업계획 배부 : 2020. 1월
- o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제출 : 2020. 2월
- o 등산로 실태조사 : 연중
- o 등산로 정비사업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 o 등산로 정비사업 현장 지도·점검 : 2020. 상·하반기
- o 등산로 이용등급 구분을 위한 일제조사 : 2020. 하반기
- o 등산로 정비사업 완료 보고 : 2021. 1월

2020년도 국가등산로 정비사업 내역

□ 등산로(지방청) : 1700-1731-302(균특-지원)

(단위 : 개소, km, 천원)

숲길관리청		구분	개 소	사업량	예 산 내 역				
지방청	관리소				계	설계비 (420-02)	공사비 (420-03)	감리비 (420-04)	부대비 (420-05)
합계			12개소	53.87	1,716,068	93,846	1,551,456	54,215	16,551
북부	소계		1	7.5	239,649	13,088	216,000	7,260	3,301
	인제	기타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방태산)	7.5	239,649	13,088	216,000	7,260	3,301
동부	소계		4	22.2	706,382	38,178	639,360	22,148	6,696
	강릉	기타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대관령옛길)	4.3	136,343	7,004	123,840	4,162	1,337
	정선	기타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가리왕산)	5.0	158,654	8,259	144,000	4,840	1,555
	태백	기타	태백시 황지동 (명품하늘숲길)	3.5	111,385	6,109	100,800	3,388	1,088
	평창	기타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발왕산)	9.4	300,000	16,806	270,720	9,758	2,716
남부	소계		2	5.8	184,579	10,122	167,040	5,614	1,803
	영주	기타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박달령~도래기재)	3.3	105,019	5,759	95,040	3,194	1,026
	구미	기타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두루봉)	2.5	79,560	4,363	72,000	2,420	777
중부	소계		3	14.27	454,981	25,304	410,976	14,471	4,230
	단양	기타	단양군 어상천면 임현리 (삼태산)	2.87	91,334	5,008	82,656	2,778	892
	충주	기타	충주시 산천면 송강리 (천등산)	2.0	63,647	3,490	57,600	1,935	622
	보은	기타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상당산성)	9.4	300,000	16,806	270,720	9,758	2,716
서부	소계		2	4.1	130,477	7,154	118,080	4,722	521
	함양	기타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형제봉)	1.6	50,917	2,792	46,080	1,842	203
	정읍	기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신시도 대각산)	2.5	79,560	4,362	72,000	2,880	318

< 서식 1 >

등산로 정비사업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

(단위 : 개소, km, 천원)

사업명	기관명	개 소	사업량	사업비			계약일	사업 기간	준공일
				계	국비	지방비			
		<엑셀>로 작성							

※ 사업명은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 연결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 서식 2 >

등산로 정비사업 완료 보고

사업명 : ○○○등산로 정비사업(연결사업)

위치 :

사업량 : km

사업비 : 천원(국비 , 지방비)

사업기간 :

사업내용(주요공종)

○ 조성·정비 : ○○노선정비 외 ○m

○ 안내시설 : ○○ 외 ○종

○ 편의시설 : ○○ 외 ○종

지자체 및 시민참여 실적 :

기타 참고사항(특기사항 및 언론보도 등)

○ 특기사항 및 언론보도 등

○ 우수사례

위치도(1/25,000)

□ 등산로 정비사업지 전경사진

○ 위 치 :

조성 前

조성 後

(조성前사진과 대비될 수 있도록
동일 장소와 각도에서 촬영)

사업 전경 대표사진(2-3장)
<원본 파일 별송>

기 타

(조성과정, 의견수렴, 점검, 조성 후 활용 등 관련 사진)

[참고자료 1]

전국 등산로 및 훼손 등산로 정비현황

□ 전국 등산로 현황

(단위 : 개, km)

관리주체	산	노선	연장 거리	비 고
계	3,299	10,267	32,892	○ 백두대간등산로 681km (지리산 천왕봉~설악산 향로봉) * 관리주체 · 일반지역(산림청) : 420km, · 국립공원(국립공원관리공단) : 261km
산 립 청	309	872	4,190	
지 자 체	2,975	8,995	27,227	
국립공원 관리공단	15	400	1,475	

※ 숲길정책팀-2273 (2011.10.21.)호에 따른 실태조사에 따라 각 숲길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 및 숲길등산정책팀-748 (2016.4.1.)호에 따른 숲길관리청의 숲길 현황자료 수정

□ 훼손등산로 정비 실적 및 계획

(단위 : km)

구 분	정비실적(계획)								'20 계획	비고
	계	'03~ '13	'14	'15	'16	'17	'18	'19		
계	14,712	6,887 (-)	1,279 (974)	1,360 (1,082)	1,469 (1,187)	1,325 (1,100)	1,342 (1,305)	1,050 (1,023)	54	
백두대간· 정맥 등	1,496	994	109	50	158	108	37	40	54	지원
생활권 등산로	13,216	5,893	1,170	1,310	1,311	1,217	1,305	1,010	-	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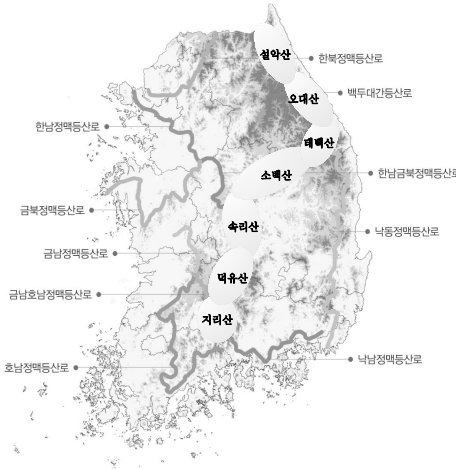
* 등산로 1km당 단비 : ('10까지) 30,560 → ('11부터) 31,824천 원/km

권역별 등산로 관리체계

□ 권역구분

- 노선거리 · 이동시간 ·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백두대간은 7개 권역, 정맥은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백두대간 권역 : 설악산 · 오대산 · 태백산 · 소백산 · 속리산 · 덕유산 · 지리산권
 - 정맥 권역 : 한북 · 한남 · 한남금북 · 금북 · 금남 · 금남호남 · 호남 · 낙동 · 낙남정맥

□ 권역별 등산로 현황



▶ 백두대간 7개 권역(681km)

권역명	거리(km)	구 간
설악산권	78	구룡령~진부령
오대산권	89	백봉령~구룡령
태백산권	97	도래기재~백봉령
소백산권	97	하늘재~도래기재
속리산권	102	개머리재~하늘재
덕유산권	140	중재~개머리재
지리산권	78	지리산~중재

▶ 정맥 9개 권역(2,080km)

권역명	거리(km)	해당 시·도	시 점	종 점
한북정맥 등산로	165	서울, 경기, 강원	장명산	오두산
한남정맥 등산로	210	서울, 인천, 경기	칠장산	문수산성
한남금북정맥 등산로	178	경기, 충북	속리산 천왕봉	칠현산
금북정맥 등산로	285	경기, 충북, 충남	칠현산	안흥진
금남정맥 등산로	129	대전, 충남, 전북	마이산	부소산 조룡대
금남호남정맥 등산로	66	전북	장수 영취산	진안 부귀산
호남정맥 등산로	395	광주, 전북, 전남	섬진강	백운산
낙동정맥 등산로	412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매봉산	다대포 물운대
낙남정맥 등산로	240	경남	지리산 영신봉	낙동강 분산



산림레포츠 활성화

목 표

- ▶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산림레포츠 인프라 확충 및 저변 확대
 -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대회 : 150백만원(국비)

가. 정책여건

- 점차 다양화되고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산림 내 레포츠 수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산림레포츠시설 확대 필요
- 산악스키, 패러글라이딩 등 동호인 위주의 산림레포츠대회로 일반인 참여 부족으로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나. 기본방향

- 산림레포츠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산림레포츠시설, 산림레포츠길 등 산림레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대
- 산림청장배 레포츠 대회의 효과적 운영으로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

다. 세부추진계획

1)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산림레포츠시설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관리를 지도해 주는 “산림레포츠지도사” 제도 운영 및 지도사 양성('20. 하반기)
 - (업무)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산림레포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
 - (자격)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지정교육기관에서 산림레포츠지도사 과정 이수 시 자격증 발급
 - (교육) 산림교육원 및 국립등산학교 등을 산림레포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과정 신설

- (배치) '21년 산림레포츠지도사를 국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 시설에 배치하기 위한 예산 확보 추진
- 국민들이 원하는 신종 레포츠 수요 충족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 내 도입 가능한 모험·체험시설을 산림레포츠시설로 확대 추진
 - 산림 내 조성 수요가 있는 새로운 레포츠 중 산림 내 도입 가능성이 있는 레포츠를 조사·검토하여 산림레포츠로 육성
 - *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가결된 시설 지정·고시(산림휴양법 시행령 별표3의3)
 - 신규 지정된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 설치 및 안전기준 마련

2) 산림레포츠 인프라 확충 및 모니터링 실시

-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산림레포츠시설 조성
 -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로프 체험시설 등 복합 단지조성
 - * 산림레포츠시설(9개소) : 천안, 순천, 고성, 보성(2), 문경, 군위, 영덕, 고성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지방이양)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 행정절차 이행, 조성계획 적합성 등 현장점검 및 영상회의 추진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지에 대한 정기(연2회) 및 수시점검 실시
- 산림레포츠길, 국민의 숲(산림레포츠의 숲) 및 테마임도(레포츠형) 지정 및 운영 확대
 - 산림레포츠에 적합하고 도시와 연결한 곳, 산악자전거, 모험·체험시설 등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을 우선 선정
 - 가급적 신규 노선보다는 기존의 임도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
 -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종목에서 요구되는 안전시설 등은 반드시 구비
- 자연휴양림 연계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운영 활성화
 - 휴양림의 입지여건 및 산림레포츠 수요와 연계한 산림레포츠 특성화 휴양림 대상지 선정(3개소) 및 예산확보 추진
- 산림레포츠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 산림레포츠 활동 모니터링 실시
 - 산림레포츠 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 이전 전국 산림레포츠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실시
 - * (대상) 복합산림레포츠시설, 자연휴양림 내 시설, 산림레포츠의 숲, 테마임도, 산림레포츠길 등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산림레포츠 관련 시설
 - 산림레포츠 관련 시설 이용인구, 안전사고, 신규 레포츠, 산림피해 등 모니터링 실시

3) 산림레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산림청장배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기상여건 영향 및 안전사고 위험이 적으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대회 진행
 - 숲길달리기, 오리엔티어링,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 지역축제와 연계한 산림청장배 종합 산림레포츠대회 개최 및 지방청별 특화종목 육성
 -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림 관련 축제, 국제대회 등 행사와 연계하여 동일 기간·장소에서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 (대상종목)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오리엔티어링, 패러글라이딩
 - * (개최지) 매년 연말 차년도 개최지 선정
 - 북부(숲길달리기), 동부(트리클라이밍) 지방산림청은 관련 인프라 및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매년 특화종목 대회 개최
-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개장기념 산림청장배 클라이밍대회 개최
 - 국립등산학교 홍보 및 스포츠클라이밍 저변확대를 위해 개장일에 맞춰 산림청장배 스포츠클라이밍대회 개최
 - * (개최 예정일) '20. 10월, (개최지) 국립등산학교(강원 속초)
- 숲길,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과 연계한 특화종목 발굴·육성
 - 울트라마라톤대회, 산악자전거 대행진 등 도입 가능한 산림레포츠대회 발굴

라. 추진일정

-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 운영 : 2020. 하반기
- 지역의 특성·여건에 부합하는 산림레포츠시설 설계 및 조성 : 연중
-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업지 및 예정지 정기 점검 : 상·하반기
- 산림레포츠 특성화 휴양림 대상지 선정 : 2020. 3월
- 휴가철 대비 산림레포츠시설 등 일제 점검 : 2020. 6월
- 산림청장배 종합 산림레포츠 대회 : 2020. 9월
- 인공암벽장 개장기념 스포츠클라이밍대회 : 2020. 10월
- 산림레포츠 활동 모니터링 및 新산림레포츠대회 발굴 : 연중



국립산악박물관 및 등산학교 운영

목 표

- ▶ 국립산악박물관 발전기반 구축 및 복합 문화공간 역할 강화
- ▶ 국립등산학교를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등산교육 실시
 - 박물관 2,139백만원, 등산학교 781백만원, 인공암벽장 운영 266백만원

가. 정책여건

- 국립산악박물관 운영을 통해 등산 역사·문화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소장·전시·연구 등을 위한 기반은 마련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시·연구 등 고유기능에서 평생교육 기능 중심으로 확대 필요
- 국립등산학교 운영을 통해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 및 안전산행을 위한 체계적인 등산교육 서비스의 기틀은 마련

나. 기본방향

- 국립산악박물관을 우리나라 등산 관련 역사·문화·교육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산악메카로 육성
- 등산관련 유물·유산의 체계적인 수집·기록·전시 등을 통해 산악강국의 면모 강화 및 전시 운영·관리 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등산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확산

다. 세부추진계획

1) 국립산악박물관의 기능 및 역할 확대

- 산악 전문박물관의 정체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
 - 박물관 브랜드 및 이미지 정착과 역할 강화를 위한 기획홍보

- 스토리 기반 홍보콘텐츠 개발 및 SNS 기반 홍보 강화
 - 조형물 이용한 포토존 설치, 블로그기자단 운영, 뉴스레터 활성화
 -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교류 활성화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강화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각종 규정 제·개정 추진
- 전시기능 강화로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 완성도 높은 기획전시(2회)와 작은 전시(수시) 추진
 - 산악자료 발굴을 위한 산악인 구술조사와 영상인터뷰 실시
 - 등반사 및 산악문화에 대한 논문집 발간 및 학술세미나 개최
 - 상징성과 역사성을 갖춘 근현대 산악자료 수집(구입·기증·기탁)
 - 증가하고 있는 산악자료의 보존기능 개선 및 충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수장고 확충 검토
 - 다양한 등산·산악정보 제공을 위한 제2전시관 추가 건립 검토
 - * 백두대간 주요 명산, 지역별 산악·등산문화, 국제 등산·산악행사 유치 등
- 산악박물관 특성에 맞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연령 및 대상별 교육체험 프로그램 강화
 - 지역단체와 협업 및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로 복합문화 공간 조성
 - 상설체험실 보수 등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

2)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등산교육서비스 제공

- 건강하고 안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수요자 맞춤형,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 * 등산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연간 8,000명 이상 교육 계획
 - 산림레포츠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과정 운영('20.하반기)
 - * 종목별 교육과정에 맞는 교재 개발·발간, 교육장소 및 기자재 준비 등
 - 등산교육의 표준화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기본교재 개발·발간
 -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등산교육의 허브 역할 수행
 - * 등산교육 발전 세미나, 전국 등산학교 합동 워크숍 등
 - 지도자 양성 및 자격증 발급기관 기능의 발판 마련을 위해 스포츠클라이밍 지도자 국가자격증 교육전문기관 지정 추진

- ‘우리 산 바로알기 백두대간탐험대’ 교육을 특화하여 전국 학교로 확대
- 타 국가 산악단체 및 국제산악단체와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국립등산학교 해외홍보
- 국립등산학교 안정적 정착과 기반을 다지기 위한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 *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산악단체와 업무협력,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실시
- 교육강사, 시설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한 피드백 및 교육효과에 대한 검증
 - * 전문기관을 통한 설문지 제작 및 조사 분석
- 국립등산학교 운영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 등산학교 운영 전반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 추진
 - * 교육과정 자문위원회 운영, 전문가를 통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 교육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첨단 교육기자재 구비
 - * 태블릿PC, VR, GPS 장비 등
 - 교육기관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테리어공사 추진
 - 도서실 활용 확대를 위한 도서 구입
 - 현장 교육장 지정 및 야외 인공암벽장 등 교육 시설 확충 추진
-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운영
 - 인공암벽장 개장을 위한 시범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방안 마련
 - 스포츠클라이밍 및 암벽등산 교육장소로 운영하여 체계적인 등산교육 실시
 - 속초를 비롯한 강원도 내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 확산 및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체육활동 공간으로 제공

라. 추진일정

- 국립산악박물관 및 등산학교 운영·위탁 계약 : 2020. 1월
- 국립산악박물관 및 국립등산학교 운영상황 점검 : 매분기
- 국립등산학교 인공암벽장 조성 준공 : 2020.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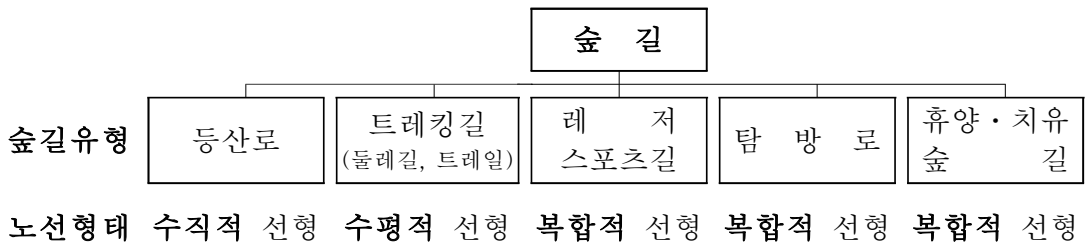
〈 부 록 〉

1. 숲길의 정의

-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하거나 사용하는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을 포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



2. 숲길의 종류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트레킹길



등산로



레저스포츠길

3. 숲길정책 주요 통계자료

□ 연도별 산행인구 현황

구분	'91년	'01년	'06년	'10년	'15년	비고
연 1회 이상	55% (16백만명)	75% (27백만명)	83% (31백만명)	81.3% (30백만명)	77.0% (32백만명)	19세 이상 남한인구 41백만명('15년) 대상 (표본수 : 1,000명)
월 1회 이상	11.7% (10백만명)	31.2% (14백만명)	40% (15백만명)	40.6% (15백만명)	32.5% (13백만명)	
등산인구(연인원)	120백만명	164백만명	462백만명	406백만명	342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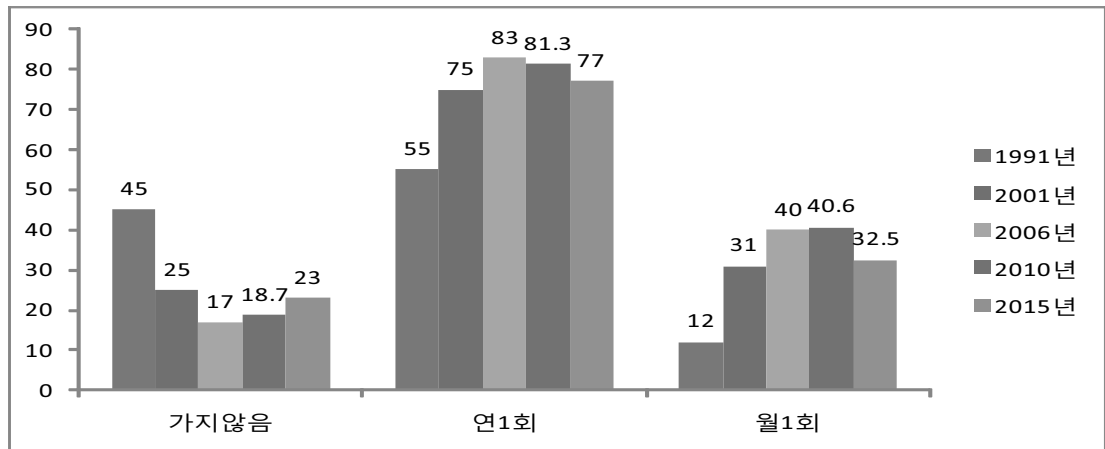
* 자료 :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1991, 2001, 2006, 2010, 2015 한국갤럽)

○ '15년 산행인구 세부현황

(단위: %, 천명)

	비율	횟수	인구수	연인원	비고
연 1회	28.8	1	11,808	11,808	19세 이상 남한인구 41백만명('15년) 대상 (표본수 : 1,000명)
분기 1회	15.7	4	6,437	25,748	
월 1회	22.7	12	9,307	111,684	
주 1회	9.8	48	4,018	192,864	
계	77.0	-	31,570	342,104	

<산행인구 추이>



* 2015년 산행인구의 둔화 원인은 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다양한 여가활동 (해외여행, 레포츠 등)으로 추정